

# 목 차

## 축사 및 인사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연구단체 약자의 눈 대표의원	03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05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07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09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1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13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15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	17
윤종술   한국장애포럼 상임대표	19

## 2차년도 지표 모니터링 개요 및 향후 계획

---

김기룡   지표개발연대 단장	22
-----------------	----

## 2차년도 모니터링 세부 결과 및 중,단기 목표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행지표개발연대 총칙 / 사회권 / 자유권	124
-------------------------------------	-----

UN CRPD 모니터링 및 이행 촉구 협력 계획	172
----------------------------	-----

---

김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조은영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조사관	

UN CRPD 최종견해 권고 이행 계획	174
-----------------------	-----

---

이춘희   보건복지부 권익지원과 과장	
안유진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사무관	
진창원   교육부 특수정책과 과장	

## 축사 및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대표의원  
김민석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리 사회는 아직 각자의 장애를 개인의 짐으로 남겨두고, 그 가족의 고단함을 함께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인권협약의 내용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애로 겪는 불편함을 이겨 내고 계신 당사자와 가족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응원을 보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은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존엄성을 존중하는 국제 규범으로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 조약입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2009년 1월에 발효되었고 헌법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한 제2·3차 병합 심의 시, 당시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생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질의하며 한국 정부의 협약 미준수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특히, 최종견해에는 지난 1차 한국 정부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에 담겨 있던 유사한 권고가 다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여전히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입니다.

오늘 보고회는 2023년 12월에 이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지표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는 두 번째 자리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35조에 의거,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은 가입 이후 2년 이내에 협약 이행상황을 보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4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의 이행 현황 차기 점검은 4, 5, 6차 병합으로 2031년 이후 심의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차후 심의까지 지속적 점검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이행지표 개발연대와 함께 2024년도에 진행한 2차 년도 지표 모니터링 결과를 비교하고 최종견해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함께하는 여러 단체와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22년 12월 발족한 16개 장애인권·법률가단체로 구성된 <유엔장애인 권리협약 이행지표 개발연대>는 한국 정부의 유엔장애인 권리협약 이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촉구하기 위해 2023년 공동으로 지표를 개발하고 기초선 조사를 하는 등 큰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유엔장애인 권리협약 본문 제33조에 따라 협약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참여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 및 시민사회단체와 장애인 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행지표 개발연대 단장을 맡은 중부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김기룡 교수님과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등 정부 부처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가 온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이행계획을 세워주시고, 국회도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약자의 눈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관점을 반영한 실제적인 제도의 뒷받침이 미약하고 법과 제도, 인식 부족으로 여전히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모이신 많은 분, 단체에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약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어려운 곳, 부족한 것을 살피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협약에서 인정된 장애인에 대한 권리가 입법적·정책적으로 모두 적절하게 조치되기를 바랍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더 나은 삶이 가능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UN CRPD 최종견해지표 2차년도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7년,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라는 의무를 신의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국내외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한국의 높아지는 국제적 위상에 볼 때, 대한민국 헌법 제 6조 1항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국제조약이라는 점에서도 이행의 중요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한국 사회가 당면한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짚고 바람직한 협약 이행 방향을 제시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최종견해를 꾸준히 점검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중히 살피고 자주 점검해야 할 최종견해 권고들을 측정가능한 지표 형태로 구체화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최종견해이행지표연대의 열정적인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은 많은 지표들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거나 측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향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4,5,6차 심의가 있을 2032년까지 성실히 이행한다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한국 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장애인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통해 장애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UN CRPD 최종견해지표 2차년도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자리에 참석하신 지표개발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 정부 부처들과 협력하여 장애인권 증진을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연대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 주간시설 이용시설 개선 및 지원 방안 마련,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의정활동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입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UN CRPD 최종견해지표 2차년도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보고회를 위해 애써주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 지표 개발 연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공동주최를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전 세계가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약속으로, 대한민국은 2008년에 이를 비준한 이후 3차에 걸쳐 협약 이행 사항을 보고해왔습니다. 그러나 2차 및 3차 권고안은 1차와 큰 차이가 없어, 정부가 장애인의 권리 증진에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장애인의 취업자 비율은 37.2%로, 전체 인구의 63.3%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2차 및 3차 권고안에는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었지만, 민간기업의 의무 고용률 미달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 특히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오늘의 결과보고회는 그동안 우리의 정책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지 점검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와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국회, 공공기관,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

가 되리라 믿습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입니다.

저 역시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정부가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보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이 입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내외귀빈을 비롯한 전문가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01. 15  
국회의원 김 주 영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서미화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지표 2차년도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 당시 국가인권위원으로서 직접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2, 3차 심의에 참여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동안 유보되어온 권리들을 보장하겠다고 국제사회를 향해, 그리고 국내 시민들을 향해 약속하며 협약에 가입한 것이 2007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협약 가입 후 15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권리의 많은 부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제네바에 가서 한국의 현실을 알리고, 밤낮으로 회의와 로비를 거듭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열정에 힘을 보태고자 저 역시 최선을 다해 유의미한 권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했기에, 당시 위원회로부터 받아들게 된 최종견해와 권고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위원회의 최종견해는 자칫 추상적일 수 있는 국제 인권 규범을 한국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권고 형태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에 중요한 나침반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종견해의 권고를 다시 한 번 측정가능한 지표로 구체화한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최종견해이행지표연대의 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표 모니터링의 축적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한 뼘 더 장애통합적 사회,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찾아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이 길에, 저 역시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5일  
국회의원 서미화



안녕하십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성운 의원입니다.

이성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늘 <UN CRPD 최종견해 지표 2차년도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를 함께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준비해주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연대’를 비롯하여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남인순, 이수진, 김남희, 서미화 의원님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맺은 약속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2022년 9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2, 3차 심의를 진행하고 최종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1차 심의와 비슷한 권고들이 반복되며, 협약 이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한, 차기 심의는 2031년 이후로 예정되어 있어 꾸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 12월, 한국장애포럼을 포함한 14개 단체가 모여 협약 이행을 감시하고 촉구하기 위해 지표개발연대를 결성했습니다.

지표개발연대는 111개의 권고를 지표로 만들어, 2023년에는 기초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에 진행된 2차년도 모니터링은 권고 이행률 변화를 확인하고, 입법과 정책 목표를 세우는 데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지표개발연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되는 모니터링 결과는 국회와의 협력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이행지표를 바탕으로 법과 정책 마련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가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예지입니다.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지표 2차년도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번 결과 보고회를 준비해 주신 한국장애포럼을 비롯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 지표 개발 연대(지표개발연대)에 함께하시는 모든 14개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보고회에서 2차년도 지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해주실 김기룡 지표개발연대 단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 이행지표를 꾸준히 개발해오신 지표개발연대 덕분에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이 국제적인 수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제출한 2, 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조항별로 우리나라 정부가 개선해야 할 내용을 권고하였지만, 정부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위원회는 2031년 이후 4, 5, 6차 국가보고서를 병합 심사할 예정이어서, 다음 심사까지 우리나라 정부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점검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 1항에서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국제조약과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국제인권법의 내용을 적극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더욱이 위원회의 최종 견해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긴급한 과제를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하는 권고를 담고 있어 그 자체로도 조약 이행의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까지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효력을 간과한 채 조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리는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는 이행지표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를 국내 실정에 맞게 더욱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저 또한 장애인 당사자이자 국회의원으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협약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우리 모두의 노력 끝에 선택의정서 비준의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앞장서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우리나라 정부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입법적, 정책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결과 보고회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입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UN CRPD,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최종 견해지표 2차년도 결과 보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유엔 장애인권리 협약 최종견해 이행 지표 개발 연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 조약입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되었습니다.

지난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2차와 3차 보고서 심의를 진행하고 한국 정부의 이행 현황에 대한 우려 사항과 권고 사항을 담은 최종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1차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유사한 권고들이 2, 3차에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실질적 이행은 미진한 것이 현실입니

다.

최종 견해는 당사국이 당면한 긴급한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는 권고를 담고 있어 그 자체로도 조약 이행의 지표가 됩니다. 유엔 장애인권권리위원회의 권고를 국내 실적에 맞게 더욱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이행지표를 만들고 모니터링에 나서주신 시민단체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충실이 이행하여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단단하게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회가 16개 장애인권단체 및 법률가 단체로 구성된 지표 연대 관계자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개발된 지표에 기반한 모니터링 활동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발족식도 함께 진행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론회가 지표 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보고회 내용을 경청하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5일(수)  
국회의원 강경숙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북구 윤종오 의원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지표 2년 차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에 공동  
주최를 맡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주신 관  
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국제사  
회가 약속한 기준입니다. 장애인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고 모든 사람  
이 차별없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2008년 협약을 비준하여 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유엔장애인권위원회 최종견해를 보면, 우리나라 협  
약 이행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탈시설 정책은 예산과 관  
심 부족으로 진전이 더디고, 장애 아동의 교육권 보장과 관련된 통합교  
육 실현율도 낮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보고회가 협약에 따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  
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행지표로 협약 이행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나아가 국내 실정에 맞는 실행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여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진보당도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협약 이행을 위한 입법부터 정책개발 그리고 예산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인권이 단지 문서 속 약속이 아닌 일상의 변화로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2025년 새해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술

한국장애포럼 상임대표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포럼 상임대표 윤종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이행지표 2차년도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는 UNCRPD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우리 사회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인하고,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번 보고회는 특히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지표 모니터링 연대(지표 모니터링 연대)의 발족식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습니다. 지표 모니터링 연대는 UNCRPD 제33조 ‘국내 이행 및 모니터링’에 따라 모니터링 과정에 시민사회단체와 특히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들의 적극적 참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활동은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제사회의 권고사항을 국내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 첫 번째 보고회에 이어 이번 보고회에서는 2차년도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며, 그동안의 변화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특히 장애포괄적 정책 마련과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보고회의 또 다른 의미는 시민사회와 정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열정과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장애포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목소리가 국내외 정책과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보고회와 지표 모니터링 연대의 발족이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며,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참여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오늘의 논의가 모두에게 큰 영감과 실천의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차년도 지표 모니터링 개요 및 향후 계획

김기룡 | 지표개발연대 단장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최종견해에 대한 2차년도 모니터링 실시 결과 개요

2025. 1. 15.

지표개발단: 김기룡(중부대학교), 박주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정하(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백인혁(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민주(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김수원(한국피플퍼스트),  
이재민(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김성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주현(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상원(사단법인 두루), 백선영(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지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인영(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은소리(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최한별·정혜란(한국장애포럼)

### 1. CRPD 최종견해 모니터링을 위한 이행지표 개발 현황

#### 1) 개발 목적

-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최종견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정보 제공
  -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현재의 국내 장애인 권리 보장 수준 확인
  - 최종견해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 평가)할 수 있는 목표 수준 파악
  - 최종견해에서 강조하거나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할 사항 확인
  - 최종견해에 대한 담당 공무원, 전문가, 종사자 등의 이해 증진
  - 최종견해에 대한 장애인 및 가족의 이해 증진

#### 2) 개발 원칙

- 최종견해 이행지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개발하였음
  - 타당성의 원칙: 최종견해 내용에 부합하는 지표인가?
    - 최종견해의 배경, 의도 및 주요 내용 등을 대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지표로 개발

- 최종견해 관련 해당 조항의 내용을 반영한 지표로 개발
- 측정 가능성의 원칙: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지표인가?
  - 가급적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정량지표로 구성하고, 해당 측정요소를 알아볼 수 있는 정량 지표를 개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사례 수집 등 주관적 지표 제시
- 실효성의 원칙: 최종견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최종견해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지표인가?
  - 최종견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데 효과적인 지표로 개발
  - 최종견해의 이행 수준을 평가할 수 있고, 이 평가 결과에 따라 권고 이행에 필요한 후속 정책 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개발
- ※ 인권 조약 관련 지표의 기본 구성 원칙에 입각하여 지표 개발
  - 조약의 관련 조항과 위원회의 일반 논평에 주로 기술된 바와 같이 인권의 규범적 내용에 대해 확인된 지표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
  - 의무 이행자, 주로 국가의 인권 의무에 대한 약속과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수행하는 노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둬
  - 모든 인권을 동등한 입장에 두고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의 상호 의존성과 불가분성을 강조
  - 인간의 권리, 행위 또는 부작위, 책임 및 구제 메커니즘(법적, 행정적)을 포괄하는 지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차별금지, 평등, 참여, 책임, 법의 지배, 정당한 절차, 올바른 거버넌스 및 구제(국내 및 국제 차원에서) 등 포괄적인 인권 규범을 인식하고 반영
  - 보편적인 인권 기준을 위해 맥락상 의미 있는 지표를 제시하는데 노력

### 3) 개발 절차

- 최종견해 이행지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개발하였음



- 첫째, 내용분석 단계에서는 최종견해의 내용과 구체적 의미를 파악하는 등 핵심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음
- 둘째, 측정요소 개발 단계에서는 최종견해 내용 중 지표를 통해 측정할 필요가 있거나 측정할 수 있는 사항을 측정요소로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음
- 셋째, 지표화 단계에서는 핵심내용과 측정요소 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 실효성, 측정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표안을 도출하였음
- 넷째, 팩트시트 작성 단계에서는 개발 지표의 내용과 의미 및 측정 방법을 제시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음
- 다섯째, 개발된 지표안과 팩트시트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음

#### 4) 개발 형식

- 최종건해 이행 지표는 지표별 팩트시트와 최종건해 내용별 개발 지표 리스트로 각각 개발, 정리하였음
- 지표별 팩트시트의 형식은 다음과 같음

항목		내용		
지표명		<b>6-a-1. 장애 범주 확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b>		
지표 근거		CRPD 또는 CRPD 관련 일반논평 근거 조항(단락)		
		일반원칙 및 의무(제1~4조)		
		최종건해 내용 전문		
		(a) 국내 장애 관련 법률과 정책을 협약의 조항에 따라 검토하고, 특히 심리사회적장애인, 지적장애인, 시청각장애인, HIV/AIDS 감염장애인 등의 모든 장애를 아우르는 장애 개념을 채택하여, 그들의 특성과 욕구가 인정되도록 보장할 것		
지표 특성	지표 유형	구조지표	과정지표	결과지표
	측정 방식	양적		질적
		사실 기반		주관적 평가
지표 핵심 내용		<i>(권고별 측정요소(핵심내용)을 요약하여 제시)</i> ○ 모든 장애를 아우르는 장애 개념을 채택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 및 개정 ○ 미등록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지원하는 법률과 정책의 수립		
지표 정의		<i>(제안하는 지표의 개념 설명)</i> ○ 기존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미등록 장애인(시청각 장애인, 심리사회적 장애인, HIV 감염 등)을 인정하고, 개별적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지표 산출방법 (측정방법)		<i>(지표를 측정하는 방법, 지표의 값새움을 산출하는 방법 또는 절차 제시)</i> ○ 사회적 장애 개념을 고려하여 장애 범주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여부		
비고		<i>(아래와 같은 사항 제시 가능)</i> ○ 지표 개발 과정에서 참고하였거나, 참고할만한 자료명 제시 ○ 지표 측정(산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제시 ○ 그 외 지표 개발 과정에서 검토/고민되었던 내용이 있다면 간략히 제시		

- 최종건해 내용에 따른 개발 지표 리스트는 최종건해 전문, 최종건해 핵심내용, 지표안, 지

표 정의, 산출방법, 평가방법, 지표형식 및 소관부처 순으로 각각 제시하였음.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자료로 대체함

### 3.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 결과

#### 1) 개요

- 73개 번호로 구성된 최종견해 중 우려, 제언, 일반적 사항 등을 제시한 37개는 제외하고, 구체적인 권고 내용이 포함된 36개 최종견해를 중심으로 지표를 개발하였음
- 36개 최종견해의 핵심내용 및 측정요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견해의 내용을 잘 드러내고, 장애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측정 가능한 형태로 지표안을 개발하였으며, 그 결과 총 148개의 지표를 개발하였음
- 148개의 최종견해 이행지표 중 측정이 어렵거나, 중복된 내용을 담은 지표 37개를 삭제하고 111개를 최종 선정함
- 111개의 최종견해 이행지표는 50개의 정량지표와 61개의 정성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량지표는 수량화된 정보를 통해 숫자, 비율, 값 등으로 표시할 수 있고 수치화된 평가 준거를 통해 이행, 부분이행 또는 미이행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하고, 정성지표는 해당 최종견해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질적 자료 또는 현황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행, 부분이행 또는 미이행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된 지표를 말함
  - 정량지표는 다시 사실에 기반하여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기존 자료를 활용해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구분되며, 최종견해 이행지표의 정량지표는 사실 기반 양적 지표 46개와 주관적 평가 기반 양적 지표 2개로 구성
  - 정성지표는 다시 사실에 기반하여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기존 자료를 활용해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구분되며, 최종견해 이행지표의 정성지표는 사실 기반 질적 지표 59개와 주관적 평가 기반 질적 지표 2개로 구성
- 또한 111개 최종견해 이행지표는 구조지표, 과정지표 및 결과지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 구조지표(준비가 되어 있는가): 국가가 인권 조약을 비준한 후에는 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가 이를 이행하겠다고 받아들인 기준, 법적 근거, 정책, 제도적 메커니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말함(총 54개 지표)
    - 국가가 해당 내용(협약의 해당 조항에서 제시한 사항)을 수행하려는 수용, 의도, 약속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지표예)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국가가 비준한 국제 인권 조약, 직업 및 기술 교육에 관한 국가 정책의 기간 및 적용 범위

- 과정지표(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인권 약속을 원하는 결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의무 이행자)의 지속적인 노력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구조적 지표와는 달리, 여기에는 의무 이행자가 현장에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정책과 구체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도 포함됨(총 43개 지표)
  - 국가가 해당 내용을 원하는 결과로 전환하기 위하여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책적 조치와 행동 프로그램을 평가예) 예산 할당에 따른 지표, 접수된 인권 불만사항 및 시정된 비율, 특정 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의무 이행자가 확대하는 인센티브 및 인식 조치, 특정 기관(예: 국가인권기구, 법률 시스템)의 기능 변화
- 결과지표(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주어진 상황에서 인권 향유 상태를 반영하는 개인 및 집단의성취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총 14개 지표)
  - 인권 향유 증진을 위한 국가 노력의 결과를 평가예) 사회 보장 제도에 참여하는 노동력의 비율, 오심 사례가 보고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보상을 받은 피해자의 비율 그리고 대상 인구 그룹별 교육 수준(예: 청소년 및 성인 문해율)
- 111개의 최종견해 이행지표는 모두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그 이행 정도를 파악하고, 향후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지표이므로, 각 지표가 어떤 부처 소관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제시하였음. 보건복지부가 소관하는 지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57개), 그 다음으로 법무부(13개), 고용노동부(12개), 행정안전부(9개), 교육부(7개), 국토교통부(6개), 여성가족부(5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2개), 외교부(4개), 문화체육관광부(2개)로 나타났으며, 법원행정처(5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4개), 방송통신위원회(3개), 국가인권위원회(1개), 통계청(1개)이 담당해야 할 지표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2) 개발 결과

○ 개발된 최종견해 이행지표는 다음 표와 같음

<표>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에 따른 이행지표 개발 결과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형태	지표범주	소관부처
6	6-a. 장애 범주 확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 기존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미등록 장애인(시청각 장애인, 심리사회적 장애인, HIV 감염 등)을 인정하고, 개별적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사회적 장애 개념을 고려하여 장애 범주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여부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6-b. 장애정도판정기준문항 중 ICF에 근거한 환경요인 등을 반영한 문항의 비율	· 장애판정제도가 ICF에 근거하여 장애인에 대한 법적 환경적 장벽을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장애정도판정 질문 항목 중 환경적 맥락을 고려한 질문 항목 수 ÷ 장애정도판정 전체 항목(기준)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8	8-1. 선택의정서 비준	· 협약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선택의정서 비준 여부로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외교부
10	10-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중 장애아동,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여성, 난민과 이주장애인을 대표하는 위원의 비율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실무위원 구성 시 장애아동·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여성· 난민과 이주장애인 등 장애 유형· 정체성· 단체 유형 등을 고려한 모든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장애아동,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여성, 난민과 이주장애인을 대표하는 위원 수 ÷ 전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실무위원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12	12-a. 장애인의 다중적·교차적 차별 해소를 위한 국가 전략 수립	·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형태의 장애 차별 중식을 위한 국가 수준의 전략 수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제·개정 또는 관련 정책 수립·시행 여부로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12-c. 장애인 권리 관련 소송 패소 장애인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및 변제 시스템 마련 등 공정한 보상 제도 실시	· 국내 소송비용 관련 법령 및 정책 등에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한 장애인이 상대방 변호사 보수 부담에서 면제될 수 있는 소송비용 또는 변제 지원 관련 방안, 원칙 또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제·개정 또는 관련 정책 수립·시행 여부로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법무부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형태	지표범주	소관부처
	12-d.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절차(지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인권위원회 등 장애 차별 시정 기구의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차별 사건 발생시 적용되고 있는 조사 및 권리구제 지원 절차가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li> <li>※ 별도의 효과적 조사 준거 마련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제·개정 또는 관련 정책 수립·시행 여부로 확인</li> </ul>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국가인권위원회
14	14-b. 국가 수준 장애인 정책 내 성인지 계획 및 예산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등 국가 수준 장애인 정책 내 성평등 관점에 입각한 정책 과제 수립 및 예산 반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정책 수립·시행 여부로 확인</li> </ul>	과정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14-c-1.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장애 차별 관련 법령 내 장애여성·소녀 차별 금지 조항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국내 장애인 관련 법령에서 장애여성·소녀에 대한 다중 및 교차 형태의 차별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제·개정 여부로 확인</li> </ul>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14-c-2. 장애여성·소녀에 대한 다중적·교차적 차별 시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여성·소녀에 대한 다중적·교차적 차별 시정을 위하여 국가 수준의 정책 방향 수립, 관련 정책 내 반영 여부, 별도의 국가 전략 수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정책 수립·시행 여부로 확인</li> </ul>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14-d. 주요 선출직 공무원 및 각 정당의 해당 후보자 선출시 장애여성 할당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회의원,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장, 광역의회·기초의회 의원, 교육감 등 선출직 공무원 및 각 정당의 해당 후보자 선출시 장애여성 할당제를 도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제·개정, 관련 정책 수립·시행 또는 정당별 당헌·당규 개정 여부로 확인</li> </ul>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16	16-a-1. 관련 법령 내 장애아동 참여권 관련 사항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 장애아동 관련 법령 내 장애아동의 참여권(자신의 의사를 존중받고,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제·개정 여부로 확인</li> </ul>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16-b-1. 국가 수준의 아동·청소년 복지 정책 내 장애아동 지원 사항 반영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복지정책, 청소년복지정책 등 국가 수준의 지역사회 복지 정책 내 장애아동과 장애청소년을 위한 지원 내용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측정산식 활용</li> <li>(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과제 수 ÷ 국가 수준의 아동·청소년 복지 정책 과제 수) × 100</li> <li>* 국가 수준의 아</li> </ul>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형태	지표범주	소관부처
			동·청소년 복지 정책 과제 목록 정리 필요			
	17-c. 통합놀이터 설치 등 장애아동의 놀이터 접근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 기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법령에서의 장애아동의 접근권 및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제·개정 여부로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행정안전부
18	18-a-1. 장애인 인식 제고 및 편견 대항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	· 장애인 단체의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장애인의 인식 제고와 편견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18-a-2.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 등의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수 비율	·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교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수자 수 ÷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소속 공무원, 교사 및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참여 대상자 수) × 100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참여 대상자 수 확인 필요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20	20-a.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지 못하는 건축물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한 근거 마련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의 건축물 접근 관련 법령에 건축물 규모, 수용 가능 범위, 건축 시기에 관계없이 장애인의 완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제·개정 여부로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20-b. 국가 접근성(기존의 구축 및 법적 강제 수단 마련 등) 전략 수립	· 접근성 관련 협약의 각 조항(제5조 ~ 30조) 내용을 포함한 국가 접근성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20-c-1. 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광역버스의 저상버스 확보 비율	·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의 휠체어 이용 가능 저상버스 도입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광역버스 중 저상버스 수 ÷ 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광역버스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국토교통부
	20-c-2. 음성 및 읽기 쉬운 교통 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 수준의 계획 수립	· 음성, 수화 및 읽기 쉬운 표시 등 장애인의 교통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가 수준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국토교통부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형태	지표범주	소관부처
		지표				
	<b>20-c-3. 휠체어 이용 등 모든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버스정류장 또는 버스터미널 비율</b>	· 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광역버스 등의 버스 정류장 및 터미널이 휠체어로 탑승이 가능한 환경(이동편의시설 등 확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정류장 및 터미널 수 ÷ 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광역버스 정류장 및 터미널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국토교통부
	<b>20-d-1. 교육시설 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점자 디지털 기기 보급 비율</b>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특수학교 및 고등교육기관 등에서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음성 및 디지털 기기 보급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비율(장애인이 원하는 형태의 디지털기기 지원 비율 포함)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교육시설 이용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디지털 기기 보급 대수 ÷ 교육시설 내 음성 및 디지털 기기 보급 대상 시각장애인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교육부
	<b>20-d-2. 가정 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점자 디지털 기기(프로그램 포함) 보급 비율</b>	· 가정 내 생활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디지털 기기 보급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비율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재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디지털 기기 보급 대수 ÷ 음성 및 디지털 기기 보급 대상 재가 시각장애인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방송통신위원회
22	<b>22-a-1.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등의 자살과 실종 예방에 대한 정책 수립</b>	· 자폐성장애인, 심리사회장애인 등에 대한 자살/실종 예방과 대응 정책 및 예산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b>22-a-2. 부모 등 가족의 장애인 살해 후 자살 예방과 대응 정책 수립</b>	· 부모 등 가족의 장애인 살해 후 자살 예방과 대응 정책 및 예산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b>22-a-3. 전체 국민 대비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자살률</b>	·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자살 비율을 전체 국민의 자살 비율과 비교하여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자살률 ÷ 전체 국민의 자살률	결과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b>22-a-4. 전체 국민 대비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실종 사건 발생 비율</b>	· 전체 실종 사건 중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실종 사건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실종 사건 수 ÷ 전체 실종 사건 수	결과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24	<b>24-a.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 국가 수준의</b>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 재난 위험 상황을 경감시키기 위한 계획에 장애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행정안전부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형태	지표범주	소관부처
	재난위험경감계획 내 장애인을 위한 지원 내용 반영	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26	26-b. 긴급상황에서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제도 마련	· 긴급상황에서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26-d. 위기상황 및 긴급사태 발생시 모든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 지원 체계 구축	· 위기상황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 모든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 형식의 정보를 적절한 기기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28	28-a-1. 후견제 등 대체의사결정제도의 의사결정지원제도로의 전환 체계 구축	· 장애 관련 정책(계획)과 민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후견제 등 대체의사결정제도를 의사결정지원제도로 전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을 참고하여 의사결정지원제도에 관한 정책(계획)이 있는지, 민법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관련 주요 법령에 대체의사결정제도 내용을 삭제하거나 의사결정지원제도를 규정한 조항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여 제시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법무부
	28-a-2. 장애인에 대한 후견인 중 성년후견인이 차지하는 비율	· 장애인에 대한 특정후견, 한정후견 및 성년후견 중 성년후견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성년후견인의 수 ÷ 전체 장애인 후견인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법무부
30	30-a. 장애인의 사법 접근 관련한 실행 계획 수립	· 장애인의 효과적인 사법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 장애 관련 법령 및 정책 등에 장애인의 사법 접근 관련한 실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법무부(검찰청)·행정안전부(경찰청)·법원행정처
	30-c-1. 사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보완 대체 정보 및 의사소통 수단 마련을 위한 구체적 지침 마련	· 기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이 사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보완 대체 정보 및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규칙 또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장애인차별금지법 26조 8항, 동법시행령 17조 1항의 내용을 구체화한 규칙 또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여 제시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법무부(검찰청)·행정안전부(경찰청)·법원행정처
	30-c-2. 모든 법정 시설의 유니버설	· 모든 법정시설을 장애인이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및 환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법원행정처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형태	지표범주	소관부처
	<b>디자인 원칙에 기초한 물리적 접근성 보장 계획 수립</b>	경을 조성하기 위한 장애인 접근성 관련 구체적인 이행계획(정책, 지침 등)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영 여부 확인			
	30-d-1. 법관 및 사법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관련 교육 실시 근거 마련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법관과 사법 종사자(경찰, 검찰, 국선변호사(인), 교정직 공무원)에게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관련 교육 실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법무부 및 법원행정처
	30-d-2. 법관 및 사법 종사자의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관련 교육 이수율	· 법관과 사법 종사자(경찰, 검찰, 국선변호사(인), 교정직 공무원) 중 장애인 사법접근권에 관한 교육을 실제 이수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1회 이상 장애인 사법접근권 교육을 받은 법관과 사법 종사자의 수 ÷ 법관과 사법 종사자의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법무부 및 법원행정처
	30-e. 장애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지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비율	·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 대한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는 개별화된 지원제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장애학생에 대한 개별화된 지원제도를 실행(관련 지침/규정 마련)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수 ÷ 전체 법학전문대학원의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법무부
32	32-a-1. 장애인의 비자의적 자유를 박탈하는 관련 법률 조항 폐지	· 장애인 비자의적 자유 박탈을 가능하게 하는 민법의 성년후견 관련 조항 및 정신건강복지법 등 모든 관련 법률 조항 폐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 폐지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32-a-2. 장애인 심문 및 구금 시 장애를 고려한 절차적 편의 제공 사항이 반영된 법률 마련	· 장애인 심문 및 구금 시 장애를 고려한 절차적 편의 제공 사항이 반영된 비차별적 법률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법무부
	32-a-3. 장애인의 비자의 시설 입소 및 병원 입원 비율	· 비자의적으로 시설 또는 병원에 입소·입원한 장애인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비자의적으로 시설 또는 병원에 입소·입원한 장애인 수 ÷ 전체 시설 또는 병원 입소·입원 장애인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32-b-1. 심리사회적 장애 또는 지적장애인이 격리로 귀결되는 치료에	· 심리사회적 장애 또는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격리로 귀결되는 치료 등을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여부를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법무부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형태	지표범주	소관부처
	중속되지 않도록 하는 모니터링 체계 마련	확인하는 지표				
	32-b-2. 격리치료시설 내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격리치료자 비율	· 격리치료시설 내 장애인의 수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text{격리치료시설 내 장애인 수} \div \text{격리치료시설 수용자 수}) \div (\text{격리치료시설 내 비장애인 수} \div \text{격리치료시설 수용자 수})\}$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법무부
34	34-b-1. 시설 내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진정 절차 마련	· 시설 내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진정 절차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시설 인권침해 중 거주인 진정 비율 및 후속조치 이행 비율제시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34-b-2. 시설 내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 현황	· 시설 내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가해자 조사 및 제재와 그 행위에 대한 처벌 사례(미처벌 사례) 확인	과정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34-b-3. 시설 인권침해 진정 사건 중 거주인이 진정한 사건의 비율	· 시설 내 장애인이 인권침해 사건을 직접 진정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text{시설 인권침해 진정 사건 중 거주인 진정 사건 수} \div \text{시설 인권침해 진정 사건 수}) \times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36	36-a. 장애인 학대피해 생존자의 재활 및 배보상을 포함한 포괄적 학대 예방 전략 수립	· 장애인 학대 등에 대한 예방과 배보상 구제방안을 포괄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36-b-1. 시설 내외 장애아동 폭력 및 학대 근절 행동계획 수립	· 시설 내외 장애아동 폭력 및 학대 근절 계획을 채택하고 효과적인 시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정책 수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36-b-2.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분리 통계 체계 마련	· 장애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분리 통계 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형태	지표범주	소관부처
	<b>36-c-1. 젠더 기반 폭력피해 여성 및 소녀를 위한 접근 가능한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b>	· 젠더 기반 폭력 피해 여성 및 소녀를 고려한 지원센터 및 쉼터를 포함하여 별도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 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여성가족부
	<b>36-c-2. 젠더 기반 폭력 피해 여성 및 소녀를 위한 지원 센터 수</b>	· 젠더 기반 폭력 피해 여성 및 소녀를 고려한 지원센터 또는 쉼터 설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젠더기반 폭력 피해 생존 여성 및 소녀에 대한 지원센터 수 합계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여성가족부
	<b>36-d. 장애당사자 가족, 돌봄제공자, 간병인, 사법종사자의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 이수 비율</b>	· 장애당사자 가족, 돌봄제공자, 간병인, 사법종사자들이 모든 형태의 학대를 인식하고 장애인과의 의사소통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을 어느 정도 이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 이수 장애당사자 가족, 돌봄제공자, 간병인, 사법종사자 수 ÷ 전체 장애당사자 가족, 돌봄제공자, 간병인, 사법종사자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38	<b>38. 장애여성과 여아에 대한 강제불임 및 동의없는 임신중단 관행 근절 조치 및 보상 계획 수립</b>	· 장애여성과 여아에 대한 강제불임과 동의없는 임신중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매커니즘과 보상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 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여성가족부
40	<b>40. 장애인주민의 입국 및 장애 관련 서비스 접근을 막는 차별 법령 또는 정책 폐지</b>	· 장애가 있는 이주민의 입국과 장애서비스 접근을 막는 차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 관련 법령 또는 정책의 폐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 하고 있는 관련 법령 폐지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법무부
42	<b>42-a. 협약 제19조, 일반논평 제5호 및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기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수정·보완</b>	· 기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협약, 일반논평 제5호 및 탈시설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정, 보완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기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 수정 · 보완 여부 및 수정·보완 내용의 협약, 일반논평제5호 및 탈시설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확인	구조지표	D(질적/주관적평가)	보건복지부
	<b>42-b. 거주시설 예산 대비 아동 포함 탈시설 전략 이행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예산의 비율</b>	· 장애아동을 포함하는 탈시설 전략 이행 강화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가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어느 정도 증액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탈시설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아동 포함) 탈시설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예산 ÷ 거주시설 지원 예산)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44	<b>44-a-1. 공중파 텔레비전 수어통역, 화면해설 의무 비율</b>	· 공중파 텔레비전의 수어통역 및 화면해설 의무 비율 증감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당해연도 고시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방송통신위원회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형태	지표범주	소관부처
	증가율		의무 비율 - 전년도 고시 의무 비율) ÷ 전년도 고시 의무 비율} × 100			
	44-a-2. 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준수율	· 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준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웹접근성 준수 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수 ÷ 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행정안전부
	44-a-3. 정부 및 공공기관 출판물(ISBN 부과 대상)의 접근가능한 형식(읽기쉬운 버전, 점자, 보이스오버) 제공 비율	· 정부 및 공공기관 출판물 중 읽기쉬운자료, 점자, 보이스오버 등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출판물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작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출판물 수 ÷ 전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출판물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행정안전부
	44-a-4. 전체 국민 대비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	·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인터넷 이용 장애인 수 ÷ 전체 장애인 수) ÷ (인터넷 이용 국민 수 ÷ 전체 국민 수)) × 100	결과지표	A(양적/사실기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4-a-5. 전체 국민 대비 장애인의 스마트폰 이용률	· 장애인의 스마트폰 이용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스마트폰 이용 장애인 수 ÷ 전체 장애인 수) ÷ (스마트폰 이용 국민 수 ÷ 전체 국민 수)} × 100	결과지표	A(양적/사실기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4-a-6.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키오스크 비율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키오스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비율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키오스크 수 ÷ 전체 키오스크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4-b.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공 지침이 반영된 방송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마련	· 장애인이 방송 콘텐츠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송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방송통신위원회
46	46-a. 실종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GPS 추적장치 설치 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에	· 실종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GPS 추적장치 설치 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에 따른 당사자 동의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형태	지표범주	소관부처
	따른 당사자 등의 절차 준수					
48	48-a. 장애인의 동등한 결혼, 가정 꾸리기, 출산(임신) 및 양육 등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 개정	· 장애인의 동등한 결혼, 가정 꾸리기, 출산(임신) 및 양육 등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하여, 「민법」 제802조, 제804조(약혼), 동법 제808조, 제804조(혼인), 동법 제873조, 제887조, 제894조, 제898조, 제902조, 제906조(입양) 등의 법률 개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하는 관련 법령 개정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행정안전부
	48-b. 장애인 가족 지원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지원 정책 마련	· 장애인 가족 지원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지원 정책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하는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48-o.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비율	·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장애인에 대한 돌봄 제공 시간과 외부 돌봄 지원 인력의 돌봄 제공 시간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장애인 돌봄 제공시간 ÷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장애인 돌봄 제공시간 + 외부 인력을 통한 돌봄 제공시간)} × 100	결과지표	B(양적/주관적평가)	보건복지부
50	50-a-1. 완전한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일반교육 정책 내 통합교육 관련 사항 반영	· 완전한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일반교육 정책 내 통합교육 관련 사항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하는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D(질적/주관적평가)	교육부
	50-a-2. 전일제 통합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비율	· 일반학교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일반학급 배치 장애학생 수 ÷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배치 장애학생 수) × 100	결과지표	A(양적/사실기반)	교육부
	50-a-3.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연수 이수 비율	·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운영 역량 증진을 위한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연수 이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통합교육 연수 이수 일반교육교원 수 ÷ 전체 일반교육교원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교육부
	50-b. 장애학생의 의사소통 방법에 적합한 읽기 쉬운 학습 자료,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	· 장애학생의 의사소통 방법에 적합한 읽기 쉬운 학습 자료,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하는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교육부
	50-c. 어린이집 이용 장애영유아의 동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한	· 보건복지부 산하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에게도 교육부 산하 일반유치원에 다니는 장애아	· 해당 사항을 규정하는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교육부·보건복지부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형태	지표범주	소관부처
	지원 대책 수립	동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지원을 보장하여 재원 유형에 상관없이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담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인			
	50-o. 학교 졸업 장애학생의 지역사회로의 전환 비율	· 고교 졸업 장애학생 중 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 비율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취업 또는 진학 고교 졸업 장애학생 수 ÷ 전체 고교 졸업 장애학생 수) × 100	결과지표	A(양적/사실기반)	교육부
52	52-a-1. 상법 제372조 완전 폐지	· 상법 제732조 완전 폐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 폐지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법무부
	52-a-2. 가임기 장애여성의 성적 및 재생산 건강 관리 프로그램 이용률	· 여성장애인의 성적 및 재생산 건강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률을 통해 관련 프로그램에 접근 정도를 확인하는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여성장애인 건강보건의료사업 이용자 수 ÷ 가임기 장애여성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52-a-3. 정신장애인의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이용률	· 정신장애인이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정신건강 프로그램 이용 정신장애인 수 ÷ 전체 정신장애인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52-b-1. 보건 관련 종사자 대상 장애인 권리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보건관련 종사자(의사, 간호사, 한의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병원종사자,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권리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지 확인하는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52-b-2. 국민 대상 건강 정보 중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방식(점자, 보이스오버, 수어, 읽기쉬운 형식 등)으로 제공되는 건강 정보 비율	·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련 정보가 장애인이 접근하기 쉬운 형식(점자, 보이스오버, 수어, 읽기쉬운 버전)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는 건강 정보 수 ÷ 전체 건강 정보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54.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국적과 체류 상태에 따른 제한 규정 폐지	· 장애인의 국적과 체류 상태와 상관없이 필요에 따른 가활과 재활 접근 보장을 위해 제한 규정을 철폐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56	56-a-1. 노동 관련 법령 내 장애를 이유로 한 제한 직종 수	· 직종 관련 법률 내에 장애유형을 이유로 직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항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 직업 관련 법령 중 장애유형을 근거로 한 제한 조항 반영 법령 수 측정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고용노동부
	56-a-2. 국가 수준의 장애인 노동 관련 정책(계획) 내 채용	· 현행 관련 국가 정책 내 고용, 취업, 승진, 재훈련에 장애포괄적(차별 제제) 조치 마련 여부를	· 국가 수준의 장애인 노동 관련 정책 내 장애인차별금지	과정지표	C(질적/사실기반)	고용노동부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형태	지표범주	소관부처
	광고, 채용 절차, 합리적 편의 제공, 재훈련, 승진 등의 분야에서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내용 반영	확인하기 위한 지표	법에 따른 고용, 취업, 승진, 재훈련 관련 차별 금지 및 장애포괄적 조치 포함 여부 확인			
	56-b-1. 전체 인구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대비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비율	· 장애인에 대한 동일 가치 동일 보수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의 임금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전체 임금근로자의 3개월 평균 임금 ÷ 전체 장애인 임금근로자 3개월 평균 임금) × 100	결과지표	A(양적/사실기반)	고용노동부
	56-b-2. 최저임금 배제 장애인에 대한 보상 체계 도입	· 최저임금에서 배제된 장애인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56-c-1. 탈시설 장애인 일반노동시장 참여 비율	· 탈시설 장애인이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최근 5년 간 탈시설한 장애인 중 일반 노동시장 피고용인 수 ÷ 최근 5년간 탈시설한 장애인 중 피고용인 수) × 100	결과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56-c-2. 일반 노동시장 내 탈시설 장애인 지원 체계 구축	· 일반 노동시장 내 탈시설 장애인 지원 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고용노동부
	56-c-3. 고용 취약 유형 장애인(지적, 청각, 정신장애)의 일반 노동시장 참여 비율	· 지적, 청각, 정신장애 등 고용 취약 유형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참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지적, 청각, 정신 장애인 중 일반 노동시장 참여 비율 ÷ 전체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참여 비율) × 100 * 일반 노동시장 참여 비율: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한 피고용인 수 ÷ 전체 피고용인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고용노동부
	56-c-4. 일반노동시장 내 고용 취약 유형 장애인(지적, 청각, 정신장애) 지원체계 구축	· 일반노동시장 내 지적, 청각, 정신장애 등 고용 취약 유형 장애인의 지원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고용노동부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형태	지표범주	소관부처
	56-d-1 전체 장애인 노동자 중 보호작업장 근로 장애인 비율	· 전체 장애인 노동자 중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보호작업장 내 근로 장애인 수(근로자+훈련생) ÷ 전체 장애인 노동자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56-d-2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중 일반 일자리로 전환한 장애인의 비율	· 보호작업장으로부터 개방되고 통합적이며 접근가능한 일반 일자리로 전환한 장애인의 비율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보호작업장 근무 중 일반 일자리로 전환한 장애인 수 ÷ 보호작업장 근무 장애인 수) × 100	결과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56-d-3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에 장애여성 의무고용 할당 비율 도입	·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의 개방노동시장 내 참여 증대를 위한 특별 보호 조치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58	58-a-1. 국가 수준의 장애 정책 내 장애인의 빈곤경감계획 강화 조치 마련	· 장애인의 사회적 보호 및 빈곤경감계획을 강화했는지 확인하는 지표	· 국가 장애인종합계획상 장애인빈곤경감계획 비교, 장애인 빈곤율 통계 확인하여 제시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58-a-2. 전체 국민 대비 장애인의 빈곤율	· 장애인의 빈곤 수준을 일반 국민과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는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장애인의 빈곤율 ÷ 전체 국민의 빈곤율	결과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58-a-3.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소득보장 지원 금액에 대한 정부와 장애인단체 간 협의체계 구축	· 장애인단체들과 장애인의 소득보장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장애수당 등 관련 민관 협의체(장애인단체 포함) 확인하여 제시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58-b-1. 부양의무자 요건 완전 폐지	·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을 확대하기 위해 특히 부양의무자 요건 완전폐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부양의무자 요건 완전폐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시	과정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58-b-2. 장애인연금 수급 비율	·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장애인 대비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장애인연금수급비율: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 등록 장애인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58-b-3. 관계법령 및 정책 상 기초생활수급, 장애수당 등 수급 대상에 장애이주민, 장애인 포함	· 장애이주민, 장애인민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수당 등과 같은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지원을 받도록 보장하는 즉각적 조치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과정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60	60-a. 선거과정과 정치적, 공적 생활에서 장애인의 완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 선거과정과 정치적, 공적 생활에서 장애인의 완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형태	지표범주	소관부처
	마련					
	60-c. 선거자료 및 투표시설에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 및 강화 조치 마련	· 선거자료 및 투표시설에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 및 강화 조치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 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0-d. 전체 국민 투표율 대비 장애인의 투표율	· 전체 국민 투표율과 비교했을 때 장애인의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상대적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모니터링 직전에 실시된 전국 규모의 동시 선거 결과 중) (장애인의 투표 참여율 ÷ 전체 국민의 투표 참여율) × 100	결과지표	B(양적/주관적평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2	62-1. 어문출판물 발행 대비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 디지털도서 제작 비율	· 어문출판물 중 점자, 녹음, 디지털도서로 제작되는 출판물의 비율을 통해 마라케시조약의 이행을 위한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텍스트데이타자료, 전자점자도서, 전자책 제작 수 ÷ 어문출판물 발행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문화체육관광부
	62-2. 장애인의 문화생활 프로그램 이용률	· 장애인의 문화생활 향유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실제 이용률을 통해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문화생활 참여 장애인 수 ÷ 전체 등록장애인 수) × 100 * 문화생활 범주 개발 필요	결과지표	B(양적/주관적평가)	문화체육관광부
64	64-a. 기존 장애 관련 통계 내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민족, 소득, 이주 지위, 교육 수준, 고용 상황 및 거주지 분리 통계 수집	· 장애 관련 통계 내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민족, 소득, 이주 지위, 교육 수준, 고용 상황 및 거주지 분리 등 분리 통계 수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 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과정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통계청
	64-b. 중앙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중 장애인 권리 증진 관련 연구 예산 비율	· 중앙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중 장애인 권리 증진 관련 연구 예산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중앙정부 각 부처의 장애인 권리 증진 관련 예산 합계 ÷ 중앙정부 각 부처의 연구 개발 예산 합계) × 100 * 연구 개발 예산 범주 개발 필요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66	66-1. ODA 총 예산 중 장애 관련 분야 예산 비율	· KOICA에서 집행하는 ODA 총 예산 중 장애특정, 포괄 프로그램 예산 비율 확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전년도 · (장애 관련 분야 예산 합계 ÷ ODA 총 예산)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외교부
	66-2. KOICA와	· KOICA의 지원 프로그램 중 장애	· 지원 프로그램 중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외교부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형태	지표범주	소관부처
	장애인단체 간 협력 프로그램 수	에인단체와의 협력 프로그램의 개수를 통해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장애인단체와의 협력하는 프로그램 수의 합계		실기반)	
	66-3.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협의체 운영 횟수	· KOICA에서 장애인이 참여하는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을 위해 운영하는 민관협의체의 회의 개최 횟수를 통해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민관협의체의 회의 개최 횟수 합계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외교부
68	68.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연도별 개최 횟수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연도별 개최 횟수를 비교하기 위한 지표	· 연도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집계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69	69. 장애여성 및 탈시설 관련 최종견해에 따른 1년 이내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	· 장애여성 및 탈시설 관련 최종견해에 따른 1년 이내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과정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70	70. 장애 관련 분야 공직자 등의 CRPD 최종견해 인지를 위한 노력	· 정부, 국회 구성원, 관련 부처 공무원, 지방정부 그리고 교육자, 의료 종사자, 법조인, 언론인 등에게 관련 직군 각 구성원에게 정부의 최종견해 전달 및 이에 대한 조치 마련 요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결과지표	B(양적/주관적평가)	보건복지부
71	71. 정부 보고서 작성 시 장애인단체를 포함하여 협의하는 체계 구축	· 정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장애인단체 포함 협의체 운영에 관한 법령 등 규정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72	72.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된 최종견해 관련 콘텐츠 발행 중수	· 최종견해를 다양하고 접근가능한 형식으로 제작 및 배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행한 최종견해 관련 콘텐츠 수 합계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4. 모니터링 실시 결과

##### 1) 1차년도 실시 결과(개요)

- 모니터링 실시 결과, 111개 모니터링 지표 중 이행된 지표 2개, 부분 이행된 지표 13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지표는 47개인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로 분류된 지표는 49개인 것으로 나타났음. 기타로 분류된 지표 중 기초선 조사 결과만 제시한 경우는 26개 지표이고, 측정이 어려워서 그 결과값을 제시하지 못하는 지표는 23개로 나타났음.
- 모니터링 실시 결과 이행률은 1.8%(부분 이행까지 포함할 경우 13.5%)였으며, 기타 지표를 제외하여도 이행률은 3.2%(부분 이행까지 포함할 경우 2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행된 지표는 다음과 같음

<표> CRPD 최종건해 이행지표에 대한 1차년도 모니터링 결과 중 이행으로 조사된 지표 현황

번호	지표	지표 정의	산출 방법	모니터링 결과
8	8-1. 선택의정서 비준	· 협약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선택의정서 비준 여부로 확인	→ 선택의정서 비준 완료(2022년 12월)
52	52-b-1. 보건 관련 종사자 대상 장애인 권리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보건관련 종사자(의사, 간호사, 한의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병원종사자,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권리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지 확인하는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0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운영 중에 있음 - 사업내용: 보건의료종사자 등 관련기관 종사자에게 장애인건강권에 대한 교육 운영 - 사업대상: 의료인, 장애인관련 시설종사자 및 장애인 관련 보조인력, 예비의료인 등 - 세부사업: 장애인 건강권관련 교육운영 · 교육시간: 1~2시간 · 교육운영: 연 4회 이상 · 교육내용: 장애인건강권 관련 법, 정책, 장애인과 의사소통

## 2) 2차년도 실시 결과

- 2차년도(2024년) 모니터링 실시 결과, 111개 모니터링 지표 중 이행된 지표 2개, 부분 이행된 지표 16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지표는 45개인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로 분류된 지표는 48개인 것으로 나타났음. 기타로 분류된 지표 중 기초선 조사 결과만 제시한 경우는 29개 지표이고, 측정이 어려워서 그 결과값을 제시하지 못하는 지표는 19개로 나타났음.
- 모니터링 실시 결과 이행률은 1.8%(부분 이행까지 포함할 경우 16.5%)였으며, 기타 지표를 제외하여도 이행률은 3.2%(부분 이행까지 포함할 경우 2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CRPD 최종견해 이행지표에 대한 2차년도 모니터링 결과 중 이행으로 조사된 지표 현황

번호	지표	지표 정의	산출 방법	모니터링 결과
8	8-1. 선택의정서 비준	· 협약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선택의정서 비준 여부로 확인	→ 선택의정서 비준 완료(2022년 12월)
36	36-c-1. 젠더 기반 폭력피해 여성 및 소녀를 위한 접근 가능한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 젠더 기반 폭력 피해 여성 및 소녀를 고려한 지원센터 및 쉼터를 포함하여 별도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 관련 법령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행으로 평가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6항: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 (성폭력 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종류) 1항 2호 장애인보호시설, 6호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15조③ 보호시설의 장은 친족에 의한 피해자나 지적장애인 등 (...)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할 수 있다. 2.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2024년도 시행계획 - 장애인 여성폭력 피해자 전문 지원기관 확대 - 장애인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종사자 역량 강화

○ 지표별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간략히 요약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CRPD 최종견해 이행지표 모니터링 결과 요약(1차년도 및 2차년도 비교)

번호	지표명	1차년도(2023)				2차년도(2024)				개선 정도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개선	유지	악화	기타
6	6-a. 장애 범주 확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				○			○		
	6-b. 장애정도판정기준문항 중 ICF에 근거한 환경요인 등을 반영한 문항의 비율				0%				0%		○		
8	8-1. 선택의정서 비준	○				○					○		
10	10-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중 장애 아동,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여성, 난민과 이주장애인을 대표하는 위원의 비율				6.9%				6.9%		○		
12	12-a. 장애인의 다중적·교차적 차별 해소를 위한 국가 전략 수립			○					○		○		
	12-c. 장애인 권리 관련 소송 패소 장애인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및 변제 시스템 마련 등 공정한 보상 제도 실시			○					○		○		
	12-d.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절차(지침) 마련			○					○		○		
14	14-b. 국가 수준 장애 정책 내 성인지 계획 및 예산 반영		○				○				○		
	14-c-1.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장애 차별 관련 법령 내 장애여성·소녀 차별 금지 조항 반영		○				○				○		
	14-c-2. 장애여성·소녀에 대한 다중적·교차적 차별 시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			○				○			○		
	14-d. 주요 선출직 공무원 및 각 정당의 해당 후보자 선출시 장애여성 할당제 도입			○				○			○		
16	16-a-1. 관련 법령 내 장애아동 참여권 관련 사항 규정		○				○				○		
	16-b-1. 국가 수준의 아동·청소년 복지 정책 내 장애아동 지원 사항 반영 비율				1.7%				2.4%	○			
	17-c. 통합놀이터 설치 등 장애아동의 놀이터 접근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				○			○		
18	18-a-1. 장애인 인식 제고 및 편견 대항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			○				○			○		
	18-a-2.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 등의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수 비율				-*				-*				○



	획 수립												
	30-d-1. 법관 및 사법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관련 교육 실시 근거 마련												
	30-d-2. 법관 및 사법 종사자의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관련 교육 이수율												
	30-e. 장애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지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비율												
	32-a-1. 장애인의 비자의적 자유를 박탈하는 관련 법률 조항 폐지												
	32-a-2. 장애인 심문 및 구금 시 장애를 고려한 절차적 편의 제공 사항이 반영된 법률 마련												
32	32-a-3. 장애인의 비자의 시설 입소 및 병원 입원 비율												
	32-b-1. 심리사회적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이 격리로 귀결되는 치료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모니터링 체계 마련												
	32-b-2. 격리치료시설 내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격리치료자 비율												
	34-b-1. 시설 내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진정 절차 마련												
34	34-b-2. 시설 내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 현황												
	34-b-3. 시설 인권침해 진정 사건 중 거주인이 진정한 사건의 비율												
	36-a. 장애인 학대피해 생존자의 재활 및 배보상을 포함한 포괄적 학대 예방 전략 수립												
	36-b-1. 시설 내외 장애아동 폭력 및 학대 근절 행동계획 수립												
	36-b-2.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분리 통계 체계 마련												
36	36-c-1. 젠더 기반 폭력피해 여성 및 소녀를 위한 접근 가능한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36-c-2. 젠더 기반 폭력 피해 여성 및 소녀를 위한 지원 센터 수												
	36-d. 장애당사자 가족, 돌봄제공자, 간병인, 사법종사자의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 이수 비율												
38	38. 장애여성과 여아에 대한 강제불임 및 동의없는 임신중단 관행 근절 조치 및 보상 계획 수립												
40	40. 장애인주민의 입국 및 장애 관련 서비스 접근을 막는 차별 법령 또는 정책												

	폐지												
42	42-a. 협약 제19조, 일반논평 제5호 및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기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수정·보완												
	42-b. 거주시설 예산 대비 아동 포함 탈시설 전략 이행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예산의 비율												
44	44-a-1. 공중과 텔레비전 수어통역, 화면해설 의무 비율 증가율												
	44-a-2. 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준수율												
	44-a-3. 정부 및 공공기관 출판물(ISBN 부과 대상)의 접근가능한 형식(읽기쉬운 버전, 점자, 보이스오버) 제공 비율												
	44-a-4. 전체 국민 대비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												
	44-a-5. 전체 국민 대비 장애인의 스마트폰 이용률												
	44-a-6.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키오스크 비율												
	44-b.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공 지침이 반영된 방송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마련												
46	46-a. 실종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GPS 추적장치 설치 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에 따른 당사자 동의 절차 준수												
	48-a. 장애인의 동등한 결혼, 가정 꾸리기, 출산(임신) 및 양육 등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 개정												
48	48-b. 장애인 가족 지원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지원 정책 마련												
	48-o.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비율												
50	50-a-1. 완전한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일반교육 정책 내 통합교육 관련 사항 반영												
	50-a-2. 전일제 통합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비율												
	50-a-3.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연수 이수 비율												
	50-b. 장애학생의 의사소통 방법에 적합한 읽기 쉬운 학습 자료,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												
	50-c. 어린이집 이용 장애영유아의 동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 대책 수립												
	50-o. 학교 졸업 장애학생의 지역사회로의 전환 비율												

52	52-a-1. 상법 제372조 완전 폐지			○				○			○			
	52-a-2. 가임기 장애여성의 성적 및 재생산 건강 관리 프로그램 이용률					.*				.*		○		
	52-a-3. 정신장애인의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이용률					4.4%				4.4%		○		
	<b>52-b-1. 보건 관련 종사자 대상 장애인 권리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b>	○											○	
	52-b-2. 국민 대상 건강 정보 중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방식(점자, 보이스오버, 수어, 읽기쉬운 형식 등)으로 제공되는 건강 정보 비율						0%				4.0%	○		
54	54.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국적과 체류 상태에 따른 제한 규정 폐지					○				○		○		
56	56-a-1. 노동 관련 법령 내 장애를 이유로 한 제한 직종 수					6종				6종		○		
	56-a-2. 국가 수준의 장애인 노동 관련 정책(계획) 내 채용 광고, 채용 절차, 합리적 편의 제공, 재훈련, 승진 등의 분야에서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내용 반영					○					○		○	
	<b>56-b-1. 전체 인구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대비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비율</b>						66.3%				67.4%	○		
	56-b-2. 최저임금 배제 장애인에 대한 보상 체계 도입					○					○		○	
	56-c-1. 탈시설 장애인 일반노동시장 참여 비율						.*				조별가		○	
	56-c-2. 일반 노동시장 내 탈시설 장애인 지원 체계 구축						○				○		○	
	56-c-3. 고용 취약 유형 장애인(지적, 청각, 정신장애)의 일반 노동시장 참여 비율						75%				.*		○	
	56-c-4. 일반노동시장 내 고용 취약 유형 장애인(지적, 청각, 정신장애) 지원체계 구축						○				○		○	
	<b>56-d-1 전체 장애인 노동자 중 보호작업장 근로 장애인 비율</b>										3%		5.1%	○
	56-d-2.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중 일반 일자리로 전환한 장애인의 비율										.*		.*	○
56-d-3.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에 장애여성 의무고용 할당 비율 도입						○				○		○		
58	58-a-1. 국가 수준의 장애 정책 내 장애인의 빈곤경감계획 강화 조치 마련					○				○		○		
	<b>58-a-2. 전체 국민 대비 장애인의 빈곤율</b>									2.59배		2.61배	○	
	58-a-3.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소득보장 지원 금액에 대한 정부와 장애인단체 간 협의체계 구축						○				○		○	
	58-b-1. 부양의무자 요건 완전 폐지						○				○		○	

	<b>58-b-2. 장애인연금 수급 비율</b>				14.1%			13.44%			O
	58-b-3. 관계법령 및 정책 상 기초생활수급, 장애수당 등 수급 대상에 장애이주민, 장애인민 포함			O				O			O
60	60-a. 선거과정과 정치적, 공적 생활에서 장애인의 완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			O				O			O
	60-c. 선거자료 및 투표시설에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 및 강화 조치 마련			O				O			O
	<b>60-d. 전체 국민 투표율 대비 장애인의 투표율</b>				112.7%			106%			O
62	62-1. 어문출판물 발행 대비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 데이지도서 제작 비율				-*			-*			O
	62-2. 장애인의 문화생활 프로그램 이용률				6.1%			-*			O
64	64-a. 기존 장애 관련 통계 내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민족, 소득, 이주 지위, 교육 수준, 고용 상황 및 거주지 분리 통계 수집			O				O			O
	64-b. 중앙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중 장애인 권리 증진 관련 연구 예산 비율				0.0685%			-*			O
66	66-1. ODA 총 예산 중 장애 관련 분야 예산 비율				0.705%			2.462%	O		
	66-2. KOICA와 장애인단체 간 협력 프로그램 수				6건			0건			O
	66-3.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협의체 운영 횟수				2회			1회			O
68	68.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연도별 개최 횟수				1회			1회			O
69	69. 장애여성 및 탈시설 관련 최종견해에 따른 1년 이내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			O				O			O
70	70. 장애 관련 분야 공직자 등의 CRPD 최종견해 인지를 위한 노력			O				O			O
71	71. 정부 보고서 작성 시 장애인단체를 포함하여 협의하는 체계 구축			O				O			O
72	72.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된 최종견해 관련 콘텐츠 발행 종수			O				O			O

- 위의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난 1차년도에 비해 개선된 지표는 총 8개 지표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같음

<표> CRPD 최종건해 모니터링 지표 중 전년도 대비 개선된 지표

지표명	1차년도(2023)				2차년도(2024)				개선 정도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개선	유지	악화	기타
16-b-1. 국가 수준의 아동·청소년 복지 정책 내 장애아동 지원 사항 반영 비율				1.7%				2.4%	○			
17-c. 통합놀이터 설치 등 장애아동의 놀이터 접근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			○			○			
42-b. 거주시설 예산 대비 아동 포함 탈시설 전략 이행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예산의 비율				336.3%				373%	○			
50-a-3.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연수 이수 비율				27.3%				28.9%	○			
50-o. 학교 졸업 장애학생의 지역사회로의 전환 비율				66.6%				69.5%	○			
52-b-2. 국민 대상 건강 정보 중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방식(점자, 보이스오버, 수어, 읽기쉬운 형식 등)으로 제공되는 건강 정보 비율				0%				4.0%	○			
56-b-1. 전체 인구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대비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비율				66.3%				67.4%	○			
66-1. ODA 총 예산 중 장애 관련 분야 예산 비율				0.705%				2.462%	○			

- 위의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난 1차년도에 비해 악화된 지표는 11개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CRPD 최종건해 모니터링 지표 중 전년도 대비 악화된 지표

지표명	1차년도(2023)				2차년도(2024)				개선 정도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개선	유지	악화	기타
22-a-3. 전체 국민 대비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자살률				1.62배				1.94배			○	
22-a-4. 전체 국민 대비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실종 사건 발생 비율				21.4%				30.6%			○	
28-a-2. 장애인에 대한 후견인 중 성년후견인이 차지하는 비율				80.6%				82.3%			○	
50-a-2. 전일제 통합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비율				20.3%				20.1%			○	
52-b-1. 보건 관련 종사자 대상 장애인 권리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					○					○	
56-d-1 전체 장애인 노동자 중 보호작업장 근로 장애인 비율				3%				5.1%			○	
58-a-2. 전체 국민 대비 장애인의 빈곤율				2.59배				2.61배			○	
58-b-2. 장애인연금 수급 비율				14.1%				13.44%			○	
60-d. 전체 국민 투표율 대비 장애인의 투표율				112.7%				106%			○	
66-2. KOICA와 장애인단체 간 협력 프로그램 수				6건				0건			○	
66-3.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협의체 운영 횟수				2회				1회			○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결과 모니터링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6	6-a. 장애 범주 확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미등록 장애인(시청각 장애인, 심리사회적 장애인, HIV 감염 등)을 인정하고, 개별적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 장애 개념을 고려하여 장애 범주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여부</li> </ul>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관련 내용</li> </ul>			▽	<p>(1차) → 최근 1년 내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내 장애 범주 확대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1년간 개정,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에 장애 범주 확대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음</li> <li>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수요자 맞춤형 통합 지원 및 주거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주요과제 내용으로 '장애 인정이 어려운 희귀·난치질환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유형 인정기준 개선연구(23~24)를 거쳐 장애인복지법 개정 추진(25~)'라고 발표하였으나 희귀·난치질환을 중심으로 하는 개선 범위와 현시점 기준 연구 진행 단계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장애인복지법 개정여부에 대한 이행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청각장애인, HIV/AIDS 감염장애인 등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범주로 정의될 수 있도록 해당 법령 개정 추진 필요</li> <li>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검토에 따라 '모든 장애'를 아우르는 장애 개념이 반영된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 필요</li> </ul>	
	6-b. 장애정도판정 기준문항 중 ICF에 근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판정제도가 ICF에 근거하여 장애인에 대한 법적 환경적 장벽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측정 산식 활용</li> <li>·(장애정도판정 질문 항목</li> </ul>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42호 장애정도판</li> </ul>			▽	<p>→ 0%, 장애정도판정기준상의 기준 중 환경적 맥락을 고려한 질문(기준) 항목 없음</p> <p>→ 기초선 조사 결과, 장애정도판정기준문항 중 ICF에 근거한 환경요인 등을 반영한 문항 비율은 0%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정도 판정 기준에 ICF에 근거한 사회 환경적 장벽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li> </ul>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 이행	미 이행	기타		
	환경요인 등을 반영한 문항의 비율	과약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목 중 환경적 맥락을 고려한 질문 항목 수 ÷ 장애정도판정 전체 항목(기준) 수 × 100				정기준				▽	※ 정량지표 중 과정지표는 향후 평가 준거 마련 후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당해연도 모니터링에서는 기초선 조사 결과만 제시. 이하 정량지표는 모두 동일하게 이행 여부 평가 실시 → 0%, 장애정도판정기준상의 기준 중 환경적 맥락을 고려한 질문(기준) 항목 없음 ○ 2023년도 측정 자료였던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23-42호) 지난 1년간 개선 사항 없음 ○ 기초선 조사(2023년) 당시 장애정도 판정 기준 문항 중 ICF에 근거한 환경요인 등 반영 문항비율 0%	○ 장애정도 판정 기준에 ICF에 근거한 사회 환경적 장애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8	8-1. 선택의정서 비준	· 협약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선택의정서 비준 여부로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외교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 선택의정서 비준 완료(2022년 12월)	
								▽				→ 선택의정서 비준 완료(2022년 12월)	
10	10-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중 장애아동,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여성, 난민과 이주장애인을 대표하는 위원의 비율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실무위원 구성 시 장애아동·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여성· 난민과 이주장애인 등 장애 유형· 정체성· 단체 유형 등을 고려한 모든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 산식 활용 · (장애아동,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여성, 난민과 이주장애인을 대표하는 위원 수 ÷ 전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실무위원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탑재된 최신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관련 내용			▽	○ 2023년 9월 현재, 정부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명단 중 장애여성 1명, 지적발달장애인 부모 1명 등 당사자성을 고려한 장애아동,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여성, 이주장애인 등을 대표하는 위원은 2명으로 보이고, 전체 위원 수는 총 29명임 → 기초선 조사 결과, 2023년 현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중 장애아동,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여성, 난민과 이주장애인을 대표하는 위원의 비율은 6.9%((2/29)*100)임 → 6.9% ○ 2024.03.28. 기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명단. 총 29인 장애여성 1인, 지적발달장애인부모 1인으로 당사자성을 대표하는 위원은 2명. ○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정신장애인, 장애아동, 발달장애인 등에 관련된 전문가들까지 포함시킬 수도 있겠으나, 명시적 권고의 취지를 살려 상기와 같이 2인을 기준으로 측정.	○ 장애아동,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여성, 난민과 이주장애인을 대표하는 위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 개정 필요 ○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실질화될 수 있도록, 대통령 산하의 상설기구로써 설치·운영 필요	
12	12-a. 장애인의 다중적·교차	·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형태의 장애 차별 종식을 위한	· 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제·개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다중적·교차적 차별 해소를 내용으			▽	○ 다중적·교차적 차별 해소를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 발의안의 경우 17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 관련 법령에서	○ 장애인의 다중적·교차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법령(차별금지법)의 제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 이행	미이행	기타		
	적 차별 해소를 위한 국가 전략 수립	국가 수준의 전략 수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정 또는 관련 정책 수립·시행 여부로 확인				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현황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위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상 장애인의 다중적·교차적 차별 해소를 위한(기존의 장애여성, 장애아동의 장애인 이주민, 장애인 LGBT 등) 국가 전략 계획은 전무함	정과 장애인 관련 법령의 개정(다중적·교차적 차별 해소를 위한 내용 포함) 및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반영 필요
										○ 다중적·교차적 차별 해소를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 발의안의 경우 17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여가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 관련 법령에서 위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1차년도에 비해 개선된 사항 없음.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상 장애인의 다중적·교차적 차별 해소를 위한(기존의 장애여성, 장애아동 외 장애인 이주민, 장애인 LGBT 등) 국가 전략 계획은 전무함	○ 장애인의 다중적·교차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법령(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장애인 관련 법령의 개정(다중적·교차적 차별 해소를 위한 내용 포함) 필요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상 장애인의 다중적·교차적 차별 해소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		
12-c. 장애인 권리 관련 소송 패소 장애인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및 변제 시스템 마련 등 공정한 보상 제도 실시	· 국내 소송비용 관련 법령 및 정책 등에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한 장애인이 상대방 변호사 보수 부담에서 면제될 수 있는 소송비용 또는 변제 지원 관련 방안, 원칙 또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제·개정 또는 관련 정책 수립·시행 여부로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법무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최신 민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하위법령 등 관련 내용(소송 패소 장애인의 소송비용 중심으로)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민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에 소송 패소 장애인의 소송비용에 관련한 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종합 이행전략 마련(‘23~)’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최종견해에 대한 전반적인 이행전략 마련 계획일 뿐 소송 패소 장애인의 소송비용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내용 등은 전혀 없음	○ 민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에 소송 패소 장애인의 소송비용지원에 관한 내용 반영 필요	
									○ 최근 1년간 개정, 시행된 민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에 소송 패소 장애인의 소송비용에 관련한 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종합 이행전략 마련(‘23~)’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최종견해에 대한 전반적인 이행전략 마련 계획일 뿐 소송 패소 장애인의 소송비용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내용 등은 전혀 없음	○ 민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에 소송 패소 장애인의 소송비용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개정이 필요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을 위해 ‘소송 패소 장애인의 소송비용지원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정책종합계획상 국가주도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상세 계획 마련 필요
	<b>12-d.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절차(지침) 마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인권위원회 등 장애 차별 시정 기구의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차별 사건 발생시 적용되고 있는 조사 및 권리구제 지원 절차가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li> <li>※ 별도의 효과적 조사 준거 마련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제·개정 또는 관련 정책 수립·시행 여부로 확인</li> </ul>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국가인권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사항 관련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 법령</li> <li>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이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법령 및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은 없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침 등 마련 필요</li> </ul>	
	<b>14-b. 국가 수준 장애 정책 내 성인지 계획 및 예산 반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등 국가 수준 장애인 정책 내 성평등 관점에 입각한 정책 과제 수립 및 예산 반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정책 수립·시행 여부로 확인</li> </ul>	과정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복지부 웹사이트에 등록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li> <li>정부 제출 2024 예산안(의안정보시스템) 중 '세입세출예산안사업별 설명서' 및 '성인지 예산서' 중 보건복지부 예산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분이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대 정책분야 30대 중점 과제 74개 중 장애여성 관련 정책 목표는 각각 0개/1개(8-3)/4개(2-2-2, 8-3-1.2.3)</li> <li>○ 2024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 예산 4조 9,892억 1천만 원 중 성인지 예산은 2조 7,269억 9,200만원으로 54.65% 수준</li> <li>→ 국가 수준 장애 정책 내 성인지 계획이 74개 하위 과제 중 4개에 불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지 관점을 전체 사업으로 확대하여 모든 장애 관련 정책에 장애여성 주류화 필요</li> <li>○ 필요시 성별 격차 큰 고용, 고등/평생교육, 사회참여 등 장애인실태조사 근거하여 성인지 도입 정책 우선 순위 마련</li> <li>○ 성인지 예산 비율이 소폭 상승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장애정책 내 여성 주류화에는 미달하는 수준임→모든 계획에서 장애여성 주류화 필요</li> <li>○ 필요시 성별 격차 큰 고용, 고등/평생교육, 사회참여 등 장애인실태조사 근거하여 성인지 도입 정책 우선 순위 마련</li> </ul>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이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1년간 개정,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법령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은 없었음</li> <li>○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해당 사항 관련한 내용, 계획이 전혀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침 등을 마련할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분이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수준 장애 정책 내 성인지 계획이 74개 하위 과제 중 4개에 불과</li> <li>○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개선 사항 없음</li> <li>- 9대 정책분야 30대 중점 과제 74개 중 장애여성 관련 정책 목표는 각각 0개/1개(8-3)/4개(2-2-2, 8-3-1.2.3)</li> <li>○ 2025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 예산 5조 4003억3900만 원 중 성인지 예산은 3조 3109억 6900만 원으로 61.31% 수준(2024년도 54.65%보다 약 7% 가량 상승)</li> </ul>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14-c	14-c-1.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장애 차별 관련 법령 내 장애인·소녀 차별 금지 조항 반영	·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국내 장애 관련 법령에서 장애인·소녀에 대한 다중 및 교차 형태의 차별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제·개정 여부로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 웹사이트에 등록된 장애인차별금지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성에 대한 차별금지 관련 내용이 일부 반영되어 있으나, 장애소녀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이 포함된 조항은 부재하다는 사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li> <li>→ 장애인성과 장애소녀에 대한 다중 또는 교차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조항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li> <li>○ 특정 유형의 차별만을 목록 형태로 열거하는 차별금지법이 아닌, 성별, 연령, 장애유형 등 교차적 차별을 다룰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li> </ul>
	14-c-2. 장애인·소녀에 대한 다중적·교차적 차별 시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	· 장애인·소녀에 대한 다중적·교차적 차별 시정을 위하여 국가 수준의 정책 방향 수립, 관련 정책 내 반영 여부, 별도의 국가 전략 수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정책 수립·시행 여부로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3차 양성평등기본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정책 계획에 모두 장애인성에 관한 내용만 담겨있고, 장애소녀에 대한 내용 없음.</li> <li>○ 그마저도 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는 '여성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과제 하나만 담겨있고 이마저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내용과 동일함(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확대,의료기관 종사자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화)</li> <li>→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 장애인성과 소녀에 대한 다중적/교차적 차별 시정 관련 내용 부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성과 소녀가 마주하는 다중적/교차적 차별에 대한 연구 및 데이터를 통해 법률 및 정책 마련 필요</li> </ul>	
	14-d. 주요 선출직	· 국회의원, 광역·기초자치단체의	· 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행정안전부	· 공직선거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라 국회의원/지방의원 선거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장애인성 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성과 소녀가 마주하는 다중적/교차적 차별에 대한 연구 및 데이터를 통해 법률 및 정책 마련</li> </ul>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 이행	미 이행	기타		
16	공무원 및 각 정당에 해당 후보자 선출시 장애여성 할당제 도입	장, 광역의회·기초의회 의원, 교육감 등 선출직 공무원 및 각 정당의 해당 후보자 선출시 장애여성 할당제를 도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법령 제·개정, 관련 정책 수립·시행 또는 정당별 당헌·당규 개정 여부로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은 물론 장애인 할당제 조차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li> <li>○ 또한, 교육감 등 기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할당제는 별도 규정 없음</li> <li>→ <b>공직선거법에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선출시 장애여성 할당 제도 도입 관련 규정 부재</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li> <li>○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장애여성의 정치 영역 의사결정 대표를 법률로 보장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지난 1년간 개선 사항 없음</b></li> </ul>	
16	16-a-1. 관련 법령 내 장애아동 참여권 관련 사항 규정	· 아동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 장애아동 관련 법령 내 장애아동의 참여권(자신의 의사를 존중받고,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제·개정 여부로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자료(추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에 “장애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 제4조제5항에 “장애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등 장애아동 참여 관련 법적 근거가 일부 마련되어 있으나,</li> <li>→ <b>장애 관련 법령에 장애아동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가 제시되어 있지 못하고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 주류 법령 내에는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아동 참여 관련 다양한 권리가 관련 법령 내 반영 필요</li> <li>○ 아동복지법은 ‘장애’ 정의 자체에 대한 재개념화 필요함</li> <li>○ 장애아동복지지원법조차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참여 개념 외에, 장애아동의 주체적 권리보다 보호자, 지원자, 돌봄비(돌봄노동자를 얹잡아 일컫는 말) 중심으로 구성돼 있음. 어떤 법률에서도 장애아동 참여에 대한 권리를 명시한 조항은 없음.</li> <li>○ 장애아동도 시민권의 주체로서 사회 참여에 대한 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장애 관련 법령에 장애아동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가 제시되어 있지 못하고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 주류 법령 내에는 관련 근거가 부족함</b></li> <li>○ 아동복지법 - 장애 개념을 기본적으로 ‘문제’로 정의</li> <li>○ 장애아동복지지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칙 1조 목적에 사회 참여에 대한 권리 정도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명시함</li> <li>- 제4조 장애아동의 권리 조항에서 ④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명시함.</li> </ul> </li> <li>○ 청소년복지법 -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조항에 청소년의 참여권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돼 있음.</li> </ul>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 이행	미 이행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극적인 권리를 보장할 필요</li> <li>○ 청소년 복지법에서도 청소년 참여에 대해서는 명문화했으나, 장애 청소년의 권리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장애 청소년이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내용과 절차 수단 등을 함께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장애청소년의 장애 유형에 따른 정보접근권, 자기결정권, 참여를 전제로 하는 환경 조성 등을 별도로 명문화하는 것 등)</li> </ul>
	<p><b>16-b-1. 국가 수준의 아동 · 청소년 복지 정책 내 장애아동 지원 사항 반영 비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정책, 청소년복지정책 등 국가 수준의 지역 사회 복지 정책 내 장애아동과 장애 청소년을 위한 지원 내용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li> </ul>	<p>※ 다음 측정 산식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아동 · 청소년 지원 정책 과제 수 ÷ 국가 수준의 아동 · 청소년 복지 정책 과제 수) × 100</li> <li>* 국가 수준의 아동 · 청소년 복지 정책 과제 목록 정리 필요</li> </ul>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23~2027) 및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020~2024)</li> </ul>				<p>○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국가 정책 내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 관련 내용 미반영</p> <p>○ 제7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108개 세과제 중 1개 과제(장애청소년 부모 지원 및 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방안 마련)만이 장애청소년 관련 정책임</p> <p>○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의 72개 세과제 중 2개 과제만 장애아동 관련 과제임(장애아 가족양육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확대 추진, 건강 취약아동 치료 · 관리 및 부모 돌봄 지원 강화)</p> <p>→ 국가 수준의 아동 및 청소년 정책 180개 과제 중 3개 과제만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과 직접 관련된 정책임</p> <p>→ 기초선 조사 결과, 국가 수준의 아동 · 청소년 복지 정책 내 장애아동 지원 사항 반영 비율은 1.7% 임. (3/180)*100=1.7%</p> <p>→ 6건(254건 중), 2.4%</p> <p>○ 아동정책추진세과제수 146, 장애아동정책추진세과제수 4</p> <p>○ 청소년정책추진세과제수 108, 장애청소년정책추진세과제수 2</p> <p>○ 국가 수준 아동 청소년 정책 내 장애 아동 정책 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국가 정책 내 장애아동 및 장애 청소년 권리 보장 관련 내용 포함 필요</li> <li>○ 아동정책의 경우 장애아동의 의료 접근성 강화,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선, 가족 양육 서비스 확대,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서비스 본격 추진 등의 계획을</li> </ul>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 이행	미 이행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갖고 있으며 청소년 정책의 경우 가족지원 강화와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진단과 맞춤 지원, 사례 관리 정도의 정책임. 국가 수준의 아동 청소년 기본 정책의 1-2% 수준임.</li> <li>장애아동·청소년들에게 직접 지원이 되는 정책은 재활치료와 방과후 활동 지원 정도가 전부이며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직접 지원 정책은 전무함.</li> <li>장애아동·청소년 고유의 지원정책, 장애아동·청소년들의 실태와 생애주기별 욕구에 근거한 정책 과제에 대한 집중 연구가 필요함.</li> <li>국가 차원에서는 위기 청소년 지원 체계를 미약하게나마 구축 중이나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음. 장애·아동 청소년을 위한 전문 상담이나 지원 역량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li> </ul>	
	<p><b>17-c. 통합놀이터 설치 등 장애아동의 놀이터 접근을 위한 관련 법령</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법령에서의 장애아동의 접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제·개정 여부로 확인</li> </ul>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li> <li>「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구이용형 그네의 어린이 놀이터 설치 근거로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나, → 놀이시설 관련 법령 등에 장애아동의 놀이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아동이 통합된 놀이환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 및 관련 정책 시행 필요</li> </ul>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 이행	미이행	기타		
	개정	근권 및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 제품의 안전 기준」		√			→ 일부 관련 법령에 장애아동의 놀이시설 접근을 위한 안전 관련 기준을 마련하였음 ○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개정하여 (2023. 10. 31.) 휠체어·유모차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탑승하는 기구이용형 그네의 안전요건을 마련함.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2024. 1. 5.) 휠체어 및 유모차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탑승이 가능한 그네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함	○ 장애인등편의법 대상시설에 어린이놀이시설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 등이 필요
18	18-a-1. 장애인 인식 제고 및 편견 대항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	· 장애인 단체의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장애인의 인식 제고와 편견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관련 자료 (추가 조사)			√	→ 장애인의 인식 제고 및 편견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시행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부재	○ 장애인단체와 협력하여 장애인의 인식 제고와 편견 해소를 위한 계획 수립 필요	
	18-a-2.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 등의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수 비율	·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교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 산식 활용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수자 수 ÷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소속 공무원, 교사 및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실시 현황 자료(기존 자료)			√	→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 ∴ 교육 참여자 유형별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수 현황 관련 통계 자료 부재 ○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대상인 공무원과 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참여 대상이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장애인식개선 교육 참여자에 대한 통계 자료 구축 방안 마련 필요	
										√	→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 ∴ 교육 참여자 유형별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수 현황 관련 통계 자료 부재 ○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대상인 공무원과 교사, 사회	○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대상자 확인 및 확대 필요 ○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대상자의 이수율 확인 필요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이행	미이행	기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참여 대상자 수) × 100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참여 대상자 수 확인 필요									복지사 등의 참여 대상이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이수율을 확인할 수 없었음 또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평가지표와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진행 정도로 그림	
20	20-a.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지 못하는 건축물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한 근거 마련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의 건축물 접근 관련 법령에 건축물 규모, 수용 가능 범위, 건축 시기에 관계없이 장애인의 완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제·개정 여부로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건축물 규모, 수용가능 범위, 건축 시기에 관계없이 접근성 보장 관련 사항 미반영  ○ 최근 1년간 개정, 시행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건축물 규모, 수용가능 범위, 건축 시기에 관계없이 접근성 보장 관련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건축물 규모, 수용가능 범위, 건축 시기에 관계없이 접근성 보장 관련 사항 미반영	○ 건축물 규모, 수용가능 범위, 건축 시기에 관계없이 접근성 보장할 수 있도록 해당 법령 개정 추진 필요  ○ 최근 대법원이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를 면적에 따라 차등함에 따라 접근권 침해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만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규모, 범위, 시기에 상관없이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도록 법안의 전면 개정이 필요함 ,
	20-b. 국가 접근성(기준의 구축 및 법적 강제 수단 마련 등) 전략 수립	· 접근성 관련 협약의 각 조항(제5조 ~ 30조) 내용을 포함한 국가접근성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및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 최근 발표된 제4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내에는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제시되어 있고 모니터링 관련 내용은 부재 ○ 제6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역시 관광에 국한되어 추상적인 접근성 목표만 제시(무장애관광도시 설치) → 제4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및 제6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국가 접근성 전략 관련 내용 부재	○ 제9조 접근성 조항에 명시된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국가 접근성 전략을 채택하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 시스템을 확립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접근성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관련 계획에 반영 또는 별도 계획 수립 필요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이행	미이행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및 제6차장애인 정책종합계획에 국가 접근성 전략 관련 내용 부재</li> <li>○ 접근권은 교통 뿐 아니라 시설, 정보 등 그 범위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밖에 없음.</li> <li>○ 한편 이조차 상시적 또는 연차별로 모니터링하지 않고 한 번도 목표에 따라 이해진 적이 없으나 법적으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 없음.</li> <li>○ 제6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역시 관광에 국한되어 추상적인 접근성 목표만 제시(무장애관광도시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조 접근성 조항에 명시된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국가 접근성 전략을 채택하고, 이를 위해 5년 단위로 국가 차원의 접근권 보장 계획 수립 필요.</li> <li>○ 한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을 통해 계획에 대한 미이행 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li> </ul>	
	<p><b>20-c-1. 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광역버스의 저상버스 확보 비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의 휠체어 이용 가능 저상버스 도입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li> </ul>	<p>※ 다음 측정 산식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광역버스 중 저상버스 수 ÷ 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광역버스 수) × 100</li> </ul>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현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서 시외버스, 고속버스 중 휠체어 접근 가능한 버스 전무한 상황. 광역버스 역시 2층형 좌석버스는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나 283개 광역 노선 중 10%에 불과한 22개 노선에서만 2층형 저상버스 운행 중임을 확인</li> <li>○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노선 버스 수는 34,860대이며 이중 저상버스는 11,838대로 저상버스 도입률은 34%임. 그러나 고속, 시외, 광역버스로 구분된 통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음</li> <li>→ 기초선 조사 결과, 노선버스의 저상버스 확보 비율은 34%, 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광역버스의 저상버스 확보 비율은 관련 정책과 제도 미비로 0%로 추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내 버스 유형별 저상버스 확보 비율 통계 추가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자료 부재로 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광역버스의 저상버스 확보 비율은 측정되지 못함(관련 제도 미비로 0%로 추정)</li> <li>○ 시외버스, 고속버스 중 휠체어 접근 가능한 버스 0대. 광역버스 역시 2층형 좌석버스는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나 경기 146대, 인천 2대, 대전 2대에 불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외·고속버스의 도입을 의무화하고 2027년까지 유예되어 있는 광역버스의 저상버스 의무도입을 조기에 실시. 한편 광역버스의 저상버스 의무도입 이후에도 충전소 등이 문제가 되어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li> </ul>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록 별도 계획 수립
	<b>20-c-2. 음성 및 읽기 쉬운 교통 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 수준의 계획 수립</b>	· 음성, 수화 및 읽기 쉬운 표시 등 장애인의 교통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가 수준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반영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관련 자료 (추가 조사)			√		→ 관련 내용이 포함된 국가 수준의 교통 정보 접근성 지원 계획 부재	○ 음성, 수화 및 읽기 쉬운 표시 등 장애인의 교통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가 수준의 계획 수립 필요
										√		→ 관련 내용이 포함된 국가 수준의 교통 정보 접근성 지원 계획 부재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내 이동편의시설에 음성 또는 영상 안내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보급이나 모니터링 등에 대한 계획 없음 ○ 한편 읽기 쉬운 정보와 관련해서는 전혀 수립하지 않음.	○ 음성 안내에 대해 전체 교통수단에 대한 이행 여부 점검 및 목표 수립이 필요하며 읽기 쉬운 정보 제공과 관련된 연구사업을 통해 이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해야함.
	<b>20-c-3. 휠체어 이용 등 모든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버스정류장 또는 버스터미널 비율</b>	· 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광역버스의 버스 정류장 및 터미널이 휠체어로 탑승이 가능한 환경(이동편의시설 등 확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 산식 활용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정류장 및 터미널 수 ÷ 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광역버스 정류장 및 터미널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관련 자료 (추가 조사)			√		○ 전국 321개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 정류장 중 휠체어 탑승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터미널은 5개 터미널(서울, 강릉, 부산, 당진, 전주)에 불과 → 기초선 조사 결과, 휠체어 이용 등 모든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버스정류장 또는 버스터미널 비율은 (5/321)*100 = 1.6%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내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의 휠체어 접근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		→ 개선 사항 미발견. 휠체어 이용 등 모든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버스정류장 또는 버스터미널 비율은 (5/321)*100 = 1.6% ○ 2019년부터 시작된 장거리 노선에 대한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사업이 본 사업으로 안착된 2022년 이후 예산이 모두 불용 ○ 이는 전국 321개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 정류장 중 휠체어 탑승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터미널은 시범 사업으로 실시된 5개 터미널(서울, 강릉, 부산, 당진, 전주) 개선 이후 변화가 없음을 의미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내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의 휠체어 접근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을 통한 고속, 시외버스의 휠체어 접근 의무화
	<b>20-d-1. 교육시설 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b>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육기관 등에서 시	※ 다음 측정 산식 활용 · (교육시설 이용 시각장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교육부	· 교육부(추가 조사)			√		→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 ∴ 교육시설 이용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디지털 기기 보급 대수 현황 관련 통계 자료 부재	○ 관련 통계 자료 구축 방안 마련 필요
										√		→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	○ 지표 교체 고려 필요-단순

연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 이행	미 이행	기타		
	점자 디지털 기기 보급 비율	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음성 및 디지털 기기 보급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비율(장애인이 원하는 형태의 디지털기기 지원 비율 포함)	애인을 위한 음성 및 디지털 기기 보급 대수 ÷ 교육시설 내 음성 및 디지털 기기 보급 대상 시각장애인 수) ×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시설 이용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디지털 기기 보급 대수 <b>현황 관련 통계 자료 부재</b></li> </ul>	보급수로 교육 참여 실효성 점검 가능한지 의문
	20-d-2. 가정 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점자 디지털 기기(프로그램 포함) 보급 비율	· 가정 내 생활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디지털 기기 보급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측정 산식 활용</li> <li>· (제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디지털 기기 보급 대수 ÷ 음성 및 디지털 기기 보급 대상 제가 시각장애인 수) × 100</li> </ul>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자료 (추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li> <li>· 제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디지털 기기 관련 <b>현황 관련 통계 자료 부재</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통계 자료 구축 방안 마련 필요</li> </ul>		
22	22-a-1.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등의 자살과 실종 예방에 대한 정책 수립	· 자폐성장애, 심리사회장애 등에 대한 자살/실종 예방과 대응 정책 및 예산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반영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2023년 자살예방 사업안내 등에 관련 내용 일부 반영되어 있고, 지자체 차원의 실종예방조례 및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등 관련 정책이 제안되어 있으나,</li> <li>→ 정부 차원의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등의 자살과 실종 예방 관련 정책 미비</li> <li>○ 2023년 자살예방 사업안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2023년 자살예방 사업안내 등에 관련 내용 일부 반영되어 있고, 지자체 차원의 실종예방조례 및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등 관련 정책이 제안되어 있으나,</li> <li>→ 정부 차원의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등의 자살과 실종 예방 관련 정책 미비</li> <li>→ 정부 차원의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등의 자살과 실종 예방 관련 정책은 아직 부족한 실정임</li> <li>○ 2024년 자살예방 사업안내</li> <li>- 생명지킴이 교육 : 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관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달장애인에 대한 직접 자살예방 프로그램 확대 및 종사자 중심 교육 구성 개선 필요</li> <li>○ 1차년도에 비해 증진된 정책 계획 전무함.</li> <li>○ 전자기기 보급이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li> </ul>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22-a-2. 부모 등 가족의 장애인 살해 후 자살 예방과 대응 정책 수립	· 부모 등 가족의 장애인 살해 후 자살 예방과 대응 정책 및 예산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반영 여부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li> <li>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li> <li>2023년 자살예방 사업 안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사자 (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관련 기관 실무자), 장애인시설, 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이용자 및 종사자</li> <li>정신장애인 및 가족 대상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li> <li>통합사례관리체계 의뢰 대상으로 정신장애인 설정</li> <li>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발달장애인 부모 가족 대상 심리 정서 안정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배회감지기 지원 강화-보건복지부·경찰청·SK하이닉스 배회감지기 무상보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4.7.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인권적 관점에서의 판단이 필요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 2023년 자살예방 사업안내 등</li> <li>→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에 자살 예방과 대응 관련 정책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부모 등 가족의 장애인 살해 후 자살 예방과 대응과 관련된 정책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안정적 계획 실천 필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에 자살 예방과 대응 관련 정책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온라인 교육 실시 계획 이외에 부모 등 가족의 장애인 살해 후 자살 예방과 대응과 관련된 정책 부족</li> <li>○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li> <li>○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gt; 분야 4.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gt; 2. 정신건강위기군 맞춤형 지원 &gt; 4. 장애인</li> <li>- 4-1. 기관 간 연계 통한 장애인 정신건강 위험군 발굴 및 지원 강화</li> <li>- 4-2. 발달장애인 부모·가족 대상 심리·정서 안정 지원</li> <li>- 4-3.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종사자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li> <li>- 4-4.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대상 생명지킴이 교육 강화 복지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에 대한 실효적인 계획 및 전문가 지원 등 구체적 계획 필요</li> </ul>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및 정신장애인의 실종 사건 발생 비율	사건 비율을 확인 하기 위한 지표	및 정신장애 인의 실종 사건 수 ÷ 전체 실종 사건 수				처리 현황 (2022)					→ 기초선 조사 결과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실 종 사건 발생 비율은 16.9%이며, 해제하지 않은 실 종 사건 중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실종 사건 비율은 21.4%임	· 불문)를 구분하고 있으나, · 뇌병변장애인 등 추가적인 대상확대 필요 · 국제적인 발달장애인의 범 주가 달라 비교지표의 개선 필요
										▽		→ 30.6% ·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실종사건비율(해제하지 않 은 실종사건 비율) - 2022년 6건 → 2023년 42건(7배 증가) · 아동·치매환자 포함한 전체 실종사건비율(해제하지 않은 실종사건 비율) - 2022년 28건 → 2023년 137건(5배 증가) · 전체 국민 대비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실종사 건비율 - 2022년 21.4% → 2023년 30.6% (9% 증가)	· 1차년도에 비해 전체적인 실종사건 비율이 증가하였 으나 발달장애인·정신장애 인 비율 증가가 높음. 발달 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실 종에 대비할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함.
24	24-a.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등 국가 수준의 재난위험감 계획 내 장애인을 위한 지원 내용 반영	· 국가안전관리기 본계획 등 재난 위험 상황을 경감시키 기 위한 계획에 장 애 특수성을 고려 하고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 사실기반 )	행정안 전부	· 제4차 국가 안전관리기 본계획 · 제6차 장애 인정책종합 계획		▽			→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안전취약계층(장애 인 포함)에 대한 법률 및 교육 등 정비 및 확대 계 획이 포함되어 있으나,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재난위 험감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 기존 국가안전관리기본계 획 또는 장애인정책종합계 획에 장애 특성에 맞는 구 체적인 재난위험감계획 포함, 반영 필요 · 기존 국가안전관리기본계 획 또는 장애인정책종합계 획에 장애 특성에 맞는 더 욱 구체적인 실현가능한 재난위험감계획 포함, 반영 필요
26	26-b. 긴급상황에서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제도 마련	· 긴급상황에서 탈 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 여 부를 확인하기 위 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 사실기반 )	보건복 지부	· 탈시설 장애 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 드맵 · 탈시설 장애 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 범사업 운영 지침			▽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기본 적인 지역사회 탈시설 지원 제도는 있으나 긴급상 황에서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에 관한 내용은 미비함	· 긴급 및 위기 상황에서 탈 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제도 및 방안 마련 필요 · 긴급 및 위기 상황에서 탈 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제도 및 방안 마련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조례가 폐지되는 등 오히려 역행하고 있음.	
	26-d. 위기상황 및 긴급사태 발생시 모든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 지원 체계 구축	· 위기상황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 모든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 형식의 정보를 적절한 기기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보건복지부 자료 등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혹은 음성 안내 기기 도입 내용은 있으나 그 외 장애인 접근 가능 정보 지원 체계 마련되지 않음	○ 위기상황 또는 긴급상황에서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정보 습득에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기기 개발 및 보급 필요
28	28-a-1. 후견제 등 대체의사결정 제도로의 전환 체계 구축	· 장애 관련 정책(계획)과 민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후견제 등 대체의사결정 제도를 의사결정 지원제도로 전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을 참고하여 의사결정 지원 제도에 관한 정책(계획)이 있는지, 민법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장애인 관련 주요 법령에 대체의사결정 제도 내용을 삭제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제도를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법무부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민법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 장애 관련 정책 및 관련 법령 등에 의사결정 지원제도에 관한 근거가 미비하고, 이를 대신하여 대체의사결정 제도가 주요한 의사결정 지원 제도 중 하나로 제시되어 있음	○ 절차보조사업 등에 관한 제도를 공고히 하여 대체의사결정 제도를 의사결정 지원제도로 전환 추진 필요
										√	→ 1차년도에 비해 개선 사항 없음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보건복지부 자료 등에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활용 가능 도구(점자, 유도등, 청각자료 등), 장애인에 대한 교육 계획은 있으나 그 외 장애인 접근 가능 정보 지원 체계 마련되지 않음.	○ 위기상황 또는 긴급상황에서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정보 습득에 활용할 수 있는 사전 교육, 기기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 장애 관련 정책 및 관련 법령 등에 의사결정 지원제도에 관한 근거가 미비하고, 이를 대신하여 대체의사결정 제도가 주요한 의사결정 지원 제도 중 하나로 제시되어 있음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법안심사 제2소위를 통과하며 향후 절차보조사업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1차년도에 비해 개선 사항 없음	○ 절차보조사업 등에 관한 제도를 공고히 하여 대체의사결정 제도를 의사결정 지원제도로 전환.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30	28-a-2. 장애인에 대한 후견인 중 성년후견인이 차지하는 비율	· 장애인에 대한 특정후견, 한정후견 및 성년후견 중 성년후견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 산식 활용 · (성년후견인 수 ÷ 전체 장애인 후견인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법무부	· 사법연감 자료 중 성년후견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				▽	○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후견인 자료만으로 조사 진행 ○ 2022년 전체 후견 사건 14,691건 중 성년후견 11,841명, 한정후견 1,231명, 특정후견 1,584명, 임의후견 35명으로 성년후견 비율이 80.6%임 → 기초선 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한 후견인 중 성년후견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80.6%로 제안  → 2023년 전체 후견 (접수) 사건 10,716건 중 성년후견 8,823건, 한정후견 858건, 특정후견 993건, 임의후견 42건으로 성년후견 비율이 82.3%임.	○ 장애인에 대한 후견 사건별 후견인 배치 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 구축 방안 마련 필요  ○ 장애인 성년후견인 수 측정 필요
	30-a. 장애인의 사법 접근 관련한 실행 계획 수립	· 장애인의 효과적인 사법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 장애 관련 법령 및 정책 등에 장애인의 사법 접근 관련한 실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법무부(검찰청) · 행정안전부(경찰청) · 법원행정처	· 최신 장애인 복지법 및 하위법령 관련 내용(장애인차별금지법령을 중심으로)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 장애인 관련 법령에 장애인의 사법 접근 관련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사법 접근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장애인의 효과적인 사법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사법 접근 관련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당 법령 개정 추진 필요  ○ 장애인의 효과적인 사법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사법 접근 관련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당 법령 개정 추진 필요	
	30-c-1. 사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보완 대체 정보 및 의사소통 수단 마련을	· 기존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이 사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보완 대체	· 장애인차별금지법 26조 8항, 동법시행령 17조 1항의 내용을 구체화한 규칙 또는 지침이 마련되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법무부(검찰청) · 행정안전부(경찰청) · 법원행정처	· 장애인차별금지법 26조 8항, 동법시행령 17조 1항			▽	○ 장애인 관련 법령, 행정규칙에 장애인이 사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보완 대체 정보 및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규칙 또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장애인차별금지법 26조 8항, 동법시행령 17조 1항의 내용 등 관련 근거에 사법적 절차 전반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지원 관련 지침 수립 및 이행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장애인이 사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보완 대체 정보 및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규칙 또는 지침 마련 필요  ○ 장애인차별금지법 26조 8항, 동법시행령 17조 1항의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결과 모니터링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 이행	미이행	기타		
	<b>위한 구체적 지침 마련</b>	정보 및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규칙 또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여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용을 구체화한 규칙 또는 지침 마련 필요</li> <li>장애인이 사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보완 대체 정보 및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규칙 또는 지침 마련 필요</li> <li>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8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내용을 구체화한 규칙 또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li> <li>→ 1차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개선/진보된 사항 없음</li> </ul>	
	<b>30-c-2. 모든 법정 시설의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에 기초한 물리적 접근성 보장 계획 수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법정시설을 장애인이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장애인 접근성 관련 구체적인 이행계획 (정책, 지침 등)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li> </ul>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법원행정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신 장애인 복지법 및 하위법령 관련 내용(장애인차별금지법령을 중심으로)</li> <li>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관련 법령 및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법정 시설 물리적 접근성 관련 시행 계획 수립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li> <li>○ 최근 1년간 개정, 시행된 장애인 관련 법령, 법정 시설에 관한 법령에 법정 시설 물리적 접근성에 관련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li> <li>○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법정 시설 물리적 접근성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li> <li>→ 1차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개선/진보된 사항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에 기초한 모든 법정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 보장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당 법령 개정 추진 필요</li> <li>○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에 기초한 모든 법정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 보장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당 법령 개정 추진 필요</li> </ul>	
	<b>30-d-1. 법관 및 사법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관련 교육 실시 근거 마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법관과 사법 종사자(경찰, 검찰, 국선변호사(인), 교정직 공무원)에게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관련 교육 실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li> </ul>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법무부 및 법원행정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관련 내용</li> <li>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관련 법령 및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법관 및 사법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li> <li>○ 최근 1년간 개정, 시행된 장애인 관련 법령에 법관 및 사법 종사자에 대한 CRPD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li> <li>○ 발달장애인법 제13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관 및 사법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 추진 필요</li> <li>○ 법관 및 사법 종사자에 대한 CRPD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 추진 필요</li> </ul>	



표제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결과 모니터링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 이행	미 이행	기타		
			대학원의 수 ÷ 전체 법학전문대학원의 수) × 100				사 또는 통계 자료				▽	→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 ∴ 장애학생에 대한 개별화된 지원 제도 실행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현황 관련 통계 자료 부재 ○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개별화된 지원제도의 실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관련 통계 자료 등이 없어 판단이 어려움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도 단순히 정당한 편의제공이 아닌 개별화된 지원제도의 실행 여부는 확인이 어려움 ○ 관련 통계 자료가 부족하여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이행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움	○ 장애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기준 마련 필요 ○ 법학전문대학원이 장애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개별화된 지원제도 실행)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제도 개선 필요 ○ 관련 통계 필요
32	32-a-1. 장애인의 비자의적 자유를 박탈하는 관련 법률 조항 폐지	· 장애인 비자의적 자유 박탈을 가능하게 하는 민법의 성년후견 관련 조항 및 정신건강복지법 등 모든 관련 법률 조항 폐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 폐지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법령 및 거주시설 관련 사업지침 등				▽	→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중 장애인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시설이용을 신청하면 시설이용적격심사 후 이용할 수 있고, 이용계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는 등 시설 입소 과정에서 장애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조항 존재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본인의 선택에 따른 '자의입원' 이외에 가족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지는 '동의입원', '보호자에 의한 입원', '행정기관의 장애의한 입원'이 시행 중. 특히, 보호의무자 2명 이상 또는 경찰관이 입원을 신청할 경우, 서로 다른 병원의 의사 2명 이상의 동의를 있다면 정신장애인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강제 입원과 입원 기간 연장 가능	○ 하위 법령을 포함한 법률 내 비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조항 삭제 필요 ○ 신청주의에 기반한 당사자의 자의적 탈시설 의사표현, 전문가 심사위원회 등을 형식적 입·퇴소절차 이외에 실질적 의사결정지원 근거법령 마련 필요 ○ 장애인, 아동, 노인, 노숙인 등 대상자별 법률 외에 상위 법률(사회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탈시설권리 및 비자의적 자유를 박탈 금지 조항 명시. 동시에 대상자별 법률 조항에 시설을 복지시설 유형으로 기술한 조항 개정 필요
											▽	→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에 장애인의 비자의적 자유를 박탈하는 조항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 ○ 정신질환 관련 비자의 입원율은 2021년 34.8%에서	○ 하위 법령을 포함한 법률 내 비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조항 삭제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 이행	미 이행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5.3%로 증가함(국가 정신건강 현황 보고서,2023)</li> <li>- 제60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시설이용을 신청하면 시설이용적격심사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음</li> <li>-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시설 수용인원의 제한) 각 시설의 수용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본인의 선택에 따른 ‘자의 입원’ 이외에 가족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지는 ‘동의 입원’, ‘보호자에 의한 입원’, ‘행정기관의 장에 의한 입원’이 시행 중임. 특히, 보호의무자 2명 이상 또는 경찰관이 입원을 신청할 경우, 서로 다른 병원의 의사 2명 이상의 동의를 있다면 정신장애인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강제 입원이 가능하고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또한 퇴원 등 처우개선의 심사조항에서 당사자에게 의사결정지원 등을 법제화하지 않았고, 민법상 성년후견제를 유지하고 있음</li> <li>- 제42조(동의입원등),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50조(응급 입원), 제57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제75조(격리 등의 제한의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주의에 기반한 당사자의 자의적 탈시설 의사표현, 전문가 심사위원회 등을 형식적 입·퇴소절차 이외에 실질적 의사결정지원 근거법령 마련</li> <li>○ 장애인,아동,노인,노숙인 등 대상자별 법률 외에 상위 법률(사회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탈시설권리 및 비자의적 자유를 박탈 금지 조항 명시. 동시에 대상자별 법률 조항에 시설을 복지시설 유형으로 기술한 조항 개정</li> <li>○ 탈시설 및 시설폐지 관련 법률 조항 폐지 금지 조항 마련</li> </ul>
	<p><b>32-a-2. 장애인 심문 및 구금 시 장애를 고려한 절차적 편의 제공 사항이 반영된 법률 마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심문 및 구금 시 장애를 고려한 절차적 편의 제공 사항이 반영된 비차별적 법률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여부 확인</li> </ul>	<p>구조지표</p>	<p>C(질적/사실기반)</p>	<p>법무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집행법, 인권침해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li> </ul>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집행법 제54조(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 제57조(처우)에 장애의 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배려 또는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나 편의시설은 최소한의 의무사항 외에는 권고사항이며, ‘전담교정시설’도 운영하나 예외가능 조항임</li> <li>○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에 여성,외국인,청소년외에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 규칙 없음</li> <li>○ 형사소송법 제181조(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 제27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사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다양한 장애유형을 고려한 장애관련 전문가 연계 및 실질적 지원 규칙 마련 필요</li> <li>○ 해당 사항은 조사·검증 또는 심문 전에 당사자에게</li> </ul>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 이행	미 이행	기타		
												대한 특칙)은 모두 임의조항임 → 형집행법, 형사소송법, 인권침해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등에 장애인 심문 및 구금 시 장애를 고려한 절차적 편의제공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고지할 뿐, 체포 과정부터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된 상황까지 절차적 편의제공 사항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필요 ○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형사소송법 등 관련 조항이 임의조항이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근거하고 있어 예외조항 삭제 및 의무조항으로 개정 필요
										○ 형집행법 제54조(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 제57조(처우)에 장애의 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배려 또는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나 편의시설은 최소한의 의무사항외에는 권고사항이며, '전담교정시설'도 운영하나 예외가능 조항임 ○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에 여성, 외국인, 청소년외에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 규칙 없음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진술조력인의 참여)는 임의조항이며, 장애인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의무가 아님 ○ 형사소송법 제181조(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 제27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은 모두 임의조항임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시행령 제17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형집행법, 형사소송법, 인권침해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등에 장애인 심문 및 구금 시 장애를 고려한 절차적 편의제공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 해당 사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다양한 장애유형을 고려한 장애인 관련 전문가 연계 및 실질적 지원 규칙 마련 필요 ○ 해당 사항은 조사·검증 또는 심문 전에 당사자에게 고지할 뿐, 체포 과정부터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된 상황까지 절차적 편의제공 사항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형사소송법 등 관련 조항이 임의조항이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근거하고 있어 예외조항 삭제 및 의무조항으로 개정		
	32-a-3. 장애인의 비자의 시설	· 비자의적으로 시설 또는 병원에 입소·입원한 장애	※ 다음 측정 산식 활용 · (비자의적으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관련 자료 (추가 조사)				○ 치료감호소 피치료수감자 중 조현병이 575명(56.6%), 정신지체 84명(8.3%) 순임 ○ 비자의적 입원인 중 정신지체, 정신발달장애가	○ 형량과 별개의 추가 구금상태(심신장애인의 경우, 최장 15년)에 대한 중단 조치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입소 및 병원 입원 비율	인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로 시설 또는 병원에 입소·입원한 장애인 수 ÷ 전체 시설 또는 병원 입소·입원 장애인 수 × 100									1,056건으로 전체 비자의입원의 3.5%를 차지함. 정신지체인의 경우 입원기간 중앙값이 입원기간이 가장 긴 82일임(전체 중앙값 56일) → 기초선 조사 결과(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활용),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 중 비자발적으로 입소한 비율이 67.9%, 정신요양시설 거주인 중 비자발적으로 입소한 비율은 62.2%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및 통원치료 및 지원체계 연계 시스템 필요</li> <li>○ 대형 치료감호소 축소 및 보호감호환경 개선 정책 마련 필요</li> <li>○ 법원 판결시 치료감호 기간에 대한 명시 및 경미한 범죄나 사회적 지원체계 부재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사회 내 적절한 지원을 연계하고 관리하는 체계 도입(미국_정신건강법정, 영국 지역사회 명령 등 참조) 필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공식 조사항목에 비자의 시설입소 여부를 파악할 수 없음. 비자의적 입소 사례인 장애영유아 거주시설의 무연고 비율은 41.87%로 가장 높음</li> <li>○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 중 비자발적으로 입소한 비율이 67.9%, 정신요양시설 거주인 중 비자발적으로 입소한 비율은 62.2%임</li> <li>○ 2018-2020년 동안 6개월 이상 입원한 사람은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 응답자 24,210명 중 5.62%임. 이중 영유아의 입원 사례수는 363명(7.71%), 지적장애인은 11,239명(6.09%) 수준임. 하지만 이중 비자의 입원 비율은 별도통계 없음</li> <li>→ 1차년도 이후 관련 조사가 확인되지 않아 1차년도 자료 활용.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 중 비자발적 입소 비율 67.9%, 정신요양시설 거주인 중 비자발적 입소 비율 62.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정기적 공식 조사에 비자의 입소 및 병원 입소 비율 등 조사 및 사후조치 지원 시스템 필요</li> </ul>
32-b-1. 심리사회적 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이	· 심리사회적 장애 또는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격리로 귀결되는 치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마련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법무부	· 법무부 관련 자료(추가조사)			▽	→ 심리사회적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이 격리로 귀결되는 치료에 중속되지 않도록 하는 모니터링 관련 체계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li> <li>○ 입원적합성심사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으</li> </ul>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 이행	미이행	기타		
	격리로 귀결되는 치료에 중속되지 않도록 하는 모니터링 체계 마련	료 등을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	여부 확인									로 퇴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음. (2018.06.~2019.08. 심사 44,279건 중 1.5% 퇴원 결정) → 심리사회적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이 격리로 귀결되는 치료에 중속되지 않도록 하는 모니터링 관련 체계 부재	양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함
	32-b-2. 격리치료시설 내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격리치료자 비율	격리치료시설 내 장애인의 수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 산식 활용 · {(격리치료시설 내 장애인 수 ÷ 격리치료시설 수용자 수) ÷ (격리치료시설 내 비장애인 수 ÷ 격리치료시설 수용자 수)}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법무부	· 법무부 관련 자료 (추가 조사)				→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 ∵ 격리치료시설 내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격리치료자 비율 관련 현황 관련 통계 자료 부재 ○ 2023년 3/4분기 기준 격리병실 2,829실, 병상수 6,099개로 전체 병실 196,982실 중 1.4%, 전체 병상 712,713개 중 0.8% 차지	○ 격리치료시설 내 장애인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자료 구축 방안 마련 필요	
											→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 ∵ 격리치료시설 내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격리치료자 비율 관련 현황 관련 통계 자료 부재 ○ 치료감호소 피치료수감자 중 정신장애(조현병) 575명(56.6%), 정신지체 84명(8.3%) 순임 ○ 아동보호치료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노숙인시설, 결핵·한센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장애인 현황 및 모니터링 결과 부재 ○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8249명중 지적장애인은 593명, 조현병을 동반하는 경우는 7,140명에 달함 ○ 노숙인 생활시설의 입소 노숙인 중 52.2%가 등록장애인이며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지적장애(21.2%), 정신장애(21.8%)수으로 나타남 ○ 정신병원 내 비자의적 입원인 중 정신지체, 정신발달장애가 1,056건으로 전체 비자의입원의 3.5%를 차지함. 정신지체인의 경우 입원기간 중앙값이 입원기간이 가장 긴 82일임(전체 중앙값 56일) ○ 아동보호치료시설(소년법 제32조 제6호 처분 또는 치료 필요아동 보호 및 치료)의 거주아동 435명 중 장애아동의 현황없음	○ 형량과 별개의 추가 구금상태(심신장애인의 경우, 최장 15년)에 대한 중단 조치 및 통원치료 및 지원체계 연계 시스템 필요 ( <a href="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60916010002372">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60916010002372</a> <a href="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61317330003956">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61317330003956</a> ) ○ 대형 치료감호소 축소 및 보호감호환경 개선 정책 마련 ○ 법원 판결시 치료감호 기간에 대한 명시 및 경미한 범죄 나 사회적 지원체계 부재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사회 내 적절한 지원을 연계하고 관리하는 체계 도입(미국_정신건강법정, 영국 지역사회 명령 등 참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 이행	미이행	기타		
													조)
34	34-b-1. 시설 내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진정 절차 마련	· 시설 내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진정 절차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시설 인권침해 중 거주인 진정 비율 및 후속 조치 이행 비율제시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관련 자료 (추가 조사)			▽		→ 시설 내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진정 절차가 관련 법령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피치료감호자 처우관리준칙 내 제13조(전문가의 감정등), 제26조(면회 등) 외 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모니터링 체계 및 장애를 고려한 프로그램 및 메뉴얼이 부재하며 제25조의3(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서도 신체를 묶는 등 직접적인 제한을 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에 정함 ○ 치료감호소 의사 충원율은 57.5%로 전문의 인당 환자 87명(전공의 포함)을 담당함	○ 시설 내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진정 절차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인권침해 신고 및 대응 체계 구축 필요
										▽	→ 시설 내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진정 절차가 관련 법령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피치료감호자 처우관리준칙 내 제13조(전문가의 감정등), 제26조(면회 등) 외 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모니터링 체계 및 장애를 고려한 프로그램 및 메뉴얼이 부재하며 제25조의3(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서도 신체를 묶는 등 직접적인 제한을 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에 정함 ○ 치료감호소 의사 충원율은 57.5%로 전문의 인당 환자 87명(전공의 포함)을 담당함	○ 일반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소 수용 장애인에 대한 건강·인권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 치료감호소 내 장애인 관련 전문가 및 의사소통 조력 등 지원 프로그램 구성 ○ 피치료감호자에게 가중료 정보 안내 및 '진료심의위원회' 및 법무부 산하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의 가중료 심사 지침 마련 ( <a href="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61717280001027">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61717280001027</a> ) ○ 장애인 피치료감호자 처우관리준칙에 독방 및 약물 처분 등 강압적 제재에 대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 이행	미 이행	기타		
34-b-2. 시설 내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 현황	· 시설 내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가해자 조사 및 제재와 그 행위에 대한 처벌 사례(미처벌 사례) 확인	과정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관련 자료 (추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 규제 및 비강압조치 마련</li> <li>○ 법원 및 경찰 등에 치료명령,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li> </ul>	
								▽			<p>→ 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장애인학대 사건에 해당되며, 학대 유형에 따른 가해자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가해자를 강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p> <p>→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된 사항이 발견되지 않음</p> <p>&lt;기존 정신병원 내 인권침해 사안&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지방법원 2018.5.17. 2018노1875 장애인복지법 위반, 정신보건법위반, 상해, 강제추행: 직접 가해자 징역6개월, 8개월의 집행유예, 의료법인 벌금 3,000만원</li> <li>○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7.26. 2018고단2028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상해): 징역1년, 병원장 벌금 1,000만원</li> <li>○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753 2015.2.13.업무상과실치사,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병원장 벌금 1,000만원</li> <li>○ 인천지방법원 2013고정3060 2013.11.1 의료법위반: 병원장 벌금 1,000만원</li> </ul> <p>&lt;기존 시설 내 인권침해 사안&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5년간 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전국의 장애인거주시설이 받은 행정처분은 총 289건(중복 포함, ▲개선명령 239건 ▲시설장 교체 26건 ▲시설폐쇄 24건)으로 확인</li> <li>○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학대, 폭행, 방임, 갈취 등) 관련 행정처분 115건 중 '개선명령'에만 그친 경우는 88건(76.5%)으로 그중에 2건만 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내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 및 법령 마련 필요</li> <li>○ 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장애인학대 사건에 해당되며, 학대 유형에 따른 가해자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가해자를 강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 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특히, 정신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및 학대 행위 발생 시 병원장 등 관리자에 대한 처벌규정 미비, 처벌미약 등이 계속 문제 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제도 개선 필요.</li> <li>○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한 행정처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li> </ul>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 이행	미 이행	기타		
												<p>설폐쇄 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시설폐쇄는 24건에 불과</li> </ul> <p>&lt;관련 정부 조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노인이나 아동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학대행위의 경우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부터 시설폐쇄까지 가능하지만,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학대행위가 발생하더라도 1차 위반에 대한 개선 명령만 가능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li> <li>○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11.13.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학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장애인 시설 내 학대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li> </ul>	
	34-b-3. 시설 인권침해 진정 사건 중 거주인이 진정 한 사건의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내 장애인이 인권침해 사건을 직접 진정 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li> </ul>	<p>※ 다음 측정 산식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인권 침해 진정 사건 중 거주인 진정 사건 수 ÷ 시설 인권 침해 진정 사건 수) × 100</li> </ul>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관련 자료 (추가 조사)				<p>→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인권침해 진정 사건 중 거주인이 진정 한 사건 관련 현황 관련 통계 자료 부재</li> </ul> <p>→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인권침해 진정 사건 중 거주인이 진정 한 사건 관련 현황 관련 통계 자료 부재</li> <li>○ 학대의심사례 중 본인이 신고한 경우는 16.5%(435건)으로 가장 많고 증가추세이며, 특히 지적장애인 신고건수가 전년도 대비 29.3% 증가함. 하지만 장애인거주시설 학대사례는 비신고의무자의 신고율(57.9%, 205건)이 신고의무자(42.1%, 149건)보다 높고 본인의 신고는 1.1%(4건)에 불과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인권침해 진정 사건 중 거주인이 진정 한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자료 구축 방안 마련 필요</li> <li>○ 발달장애인 및 정신적장애인을 고려한 장애인거주시설 및 관련단체와 독립적인 국가 거주시설 진정 지원 시스템 및 인력 필요</li> </ul>	
36	36-a. 장애인 학대피해 생존자의 재발 및 배보상을 포함한 포괄적 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학대 등에 대한 예방과 배보상 구제방안을 포괄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li> </ul>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2021)</li> <li>· 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li> </ul>				<p>→ 보건복지부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2021)의 학대예방 전략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발생 시설을 즉시 폐쇄할 수 있도록 'one strike-out'제도 도입, 즉각적 개입을 위한 '시정명령 실시',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시설 '매년 인권실태 조사'를 제시하고 있으나, <b>학대피해생존자의 재발 및 배보상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장애인학대피해생존자에 대한 구제조치 시, 시설 입소·원원조치 삭제 및 즉각적 개입 조치 마련 필요</li> <li>○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시설에 대한 정기적 인권실태</li> </ul>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 이행	미이행	기타		
	예방 전략 수립						계획(2023) · 장애인 복지 시설 사업안 내(2023) ·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2022)					→ <b>지난 해와 비교해 변화된 내용이 없음</b> ○ 보건복지부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2021)의 학대예방 전략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발생 시설을 즉시 폐쇄할 수 있도록 ‘one strike-out’제도 도입, 즉각적 개입을 위한 ‘시정명령 실시’,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시설 ‘매년 인권실태 조사’를 제시하였으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장애인복지시설 지침에 미반영 ○ 장애인 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중복화 되는데 반해 장애인 학대전담기관은 유사 전담기관(노인 38개, 아동85개, 장애인20개)에 비해 부족하고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율(‘22년 신고의무자 신고 30.9%, 본인 신고 9.8%)도 하락 추세. 재학대 사례 중 발달장애인 재학대 사례는 88%로 전년 대비 19.1%증가 ○ 장애인 학대피해생존자의 배·보상에 관한 지원은 2개 지자체 조례로 이행 중이나 정부의 배·보상 종합대책이 부재하고, 2025년 5월 진실화해를위한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한 진상규명 시스템 종료에	조사 및 학대 발생 시, one strike-out 제도 도입 (미신고 시설 법정시설 전환 조치 및 거주인 전원조치 삭제, 사안의 정도에 따른 조치 삭제) ○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시, 시설관련 단체 등의 개입 방지 및 시설수용피해생존자의 참여 강화 ○ 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범죄피해 등 포괄적 인권침해예방 정책 마련 ○ 정부의 학대피해생존자에 대한 배·보상 계획 및 관련 기구 설치 ○ 정부의 장애인학대피해생존자에 대한 구제조치 시, 시설 입소·전원조치 삭제 및 즉각적 개입 조치 마련 ○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시설에 대한 정기적 인권실태 조사 및 학대 발생 시, one strike-out 제도 도입 (미신고 시설 법정시설 전환 조치 및 거주인 전원조치 삭제, 사안의 정도에 따른 조치삭제) ○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시, 시설관련 단체 등의 개입 방지 및 시설수용피해생존자의 참여 강화 ○ 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 이행	미 이행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과, 대구시립희망원 등에서 부랑인 및 장애인에 대한 집단수용 시설 피해가 확인됨. 이후 국가에 피해 회복 조치 및 재발 방지책 등을 권고하였으나 정부의 이행 방안이 부재함</li> <li>고문방지위원회는 한국정부의 제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고문의 범죄화 및 시효배제, 정신 보건 시설 강제입원 및 입소 방지, 시설 수용 및 과거사 피해자의 구제 보장을 권고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죄피해 등 포괄적 인권 침해예방 정책 마련</li> <li>정부의 학대피해생존자에 대한 배·보상 관련 법률 제정 및 관련 기구 설치</li> </ul>
36-b-1. 시설 내의 장애아동 폭력 및 학대 근절 행동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 내의 장애아동 폭력 및 학대근절 계획을 채택하고 효과적인 시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정책 수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li> </ul>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복지부 관련 자료 (추가 조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내의 장애아동 폭력 및 학대 근절 행동계획 수립 관련 계획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학대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간 정보연계 및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li> <li>지적·자폐성 장애 아동 학대예방 및 조기개입 근거 마련</li> <li>가정 및 교육기관 내 장애 아동 학대 예방 및 모니터링을 위한 적극적 학대근절 행동계획 수립</li> <li>장애아동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의견표현 및 권리실현 지원 및 절차 보장</li> <li>장애아동의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및 지역사회 대안적 가정보호 우선 보장조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내의 장애아동 폭력 및 학대 근절 행동계획 수립 관련 계획 없음</li> <li>전년도 대비 장애아동 학대신고(322건)는 28.3%, 학대사례(166건)는 50% 증가</li> <li>장애인 학대에 대한 경찰통보제도 도입(2021) 후 장애아동학대사례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인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학대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간 정보연계 및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li> <li>지적·자폐성 장애 아동 학대예방 및 조기개입 근거 마련</li> </ul>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 이행	미 이행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피해장애아동 전용쉼터 3개 지자체 및 6개소 설치</li> <li>○ 아동학대 유형은 중복학대 다음으로 정서학대(38%), 신체학대(17.6%), 방임(7.3%)이며, 학대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43건, 25.9%)가 74.4% 증가</li> <li>○ 아동양육시설과 관련한 정부의 '보호대상 아동의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로드맵'에 따르면, 아동양육 시설 1인1실 기능보강을 우선적으로 지원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 및 교육기관 내 장애 아동 학대 예방 및 모니터링을 위한 적극적 확대근절 행동계획 수립</li> <li>○ 장애아동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의견표현 및 권리실현 지원 및 절차 보장</li> <li>○ 장애아동의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및 지역사회 대안적 가정보호 우선 보장 조치</li> <li>○ 아동양육시설 등 다양한 시설 내 장애인에 대한 포괄적인 자립지원정책 마련</li> </ul>
	<b>36-b-2.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분리 통계 체계 마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분리 통계 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li> </ul>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 관련 자료 (추가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학대 현황 내 장애아동 학대 현황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 내 장애아동 현황 : 외출불가 사유 혼자 나가기 어려워서(59.7%), 시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해서(17.1%), 돈이 없어서(21.7%) /원하는 종교생활을 할 수 없다(15세 미만 11.6%, 15-17세 5.7%)/ 추행경험(15세 미만 3.6%, 15-17세 3.4%)/ 권리교육 없음(15세 미만 17.1%, 15-17세 8.5%)</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분리 통계가 일부 제공되어 있으나, 변인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 자료 수집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 현황과 연계한 등록·미등록 장애아동에 대한 통합 통계 체계 마련</li> <li>○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세부 분리통계 및 인권실태조사에 대한 법령 마련</li> <li>○ 장애아동의 탈시설화와 지역사회의 지원 서비스로의 전환에 대한 정보축적 및 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 현황과 연계한 등록·미등록 장애아동에 대한 통합 통계 체계 마련</li> <li>○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내 장애아동 지원 및 처벌 강화</li> <li>○ 전체 아동학대 중 장애아동</li> </ul>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이행	미이행	기타		
												학대에 대한 세부 분리통계 및 인권실태조사에 대한 법령 마련 ○ 정부 아동정책 내 학대예방 및 지원시스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협력 시스템 의무화 ○ 장애아동의 탈시설화와 지역사회의 지원 서비스로의 전환에 대한 정보축적 및 분석	
36-c-1. 젠더 기반 폭력피해 여성 및 소녀를 위한 접근 가능한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 젠더 기반 폭력 피해 여성 및 소녀를 고려한 지원센터 및 쉼터를 포함하여 별도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관련 자료 (추가 조사)	✓				→ 젠더 기반 폭력피해 여성 및 소녀를 위한 접근 가능한 관련 서비스 지원 체계 미구축	○ 젠더 기반 폭력 피해 여성 및 소녀를 고려한 지원센터 및 쉼터를 포함하여 별도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필요	
							✓				→ 관련 법령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행으로 평가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6항: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 (성폭력 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종류) 1항 2호 장애인보호시설, 6호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15조③ 보호시설의 장은 친족에 의한 피해자나 지적장애인 등 (...)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할 수 있다. 2.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2024년도 시행계획 - 장애인 여성폭력 피해자 전문 지원기관 확대 - 장애인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종사자 역량 강화	○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에 대한 실효적인 계획 및 전문가 지원 등 구체적 계획 필요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이행	미이행	기타		
	36-c-2. 젠더 기반 폭력 피해 여성 및 소녀를 위한 지원 센터 수	· 젠더 기반 폭력 피해 여성 및 소녀를 고려한 지원센터 또는 쉼터 설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젠더기반 폭력 피해 생존 여성 및 소녀에 대한 지원 센터 수 합계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관련 자료 (추가 조사)				▽	→ 기타 - 39개소 * 2023년(총 39개소) -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23개소), 보호시설(7개소), 자립지원시설(3개소), 장애인 가정폭력 상담소(4개소), 가정폭력 보호시설(2개소)	○ 젠더 기반 폭력 피해 여성 및 소녀를 위한 지원 센터 관련 통계 자료 구축 방안 마련 필요
											▽	→ 총 39개소 * 2024년(총 39개소) -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22개소), 보호시설(8개소), 자립지원시설(3개소), 장애인 가정폭력 상담소(4개소), 가정폭력 보호시설(2개소)	○ 상담소는 줄어든 반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증가하였음. 보호 시설이 아닌 자립지원 시설 및 상담소 증가 필요
	36.d. 장애당사자 가족, 돌봄제공자, 간병인, 사법종사자의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 이수 비율	· 장애당사자 가족, 돌봄제공자, 간병인, 사법종사자들이 모든 형태의 학대를 인식하고 장애인과 의사소통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을 어느 정도 이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 산식 활용 ·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 이수 장애당사자 가족, 돌봄제공자, 간병인, 사법종사자 수 ÷ 전체 장애당사자 가족, 돌봄제공자, 간병인, 사법종사자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누리집 등				▽	→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 ∵ 장애당사자 가족, 돌봄제공자, 간병인, 사법종사자의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 이수 관련 현황 관련 통계 자료 부재 ○ 장애인학대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하는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원, 지원인력, 지원기관장과 종사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119구급대원, 정신의료, 요양, 재활시설의 장과 종사자,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유아교육 교직원 및 강사,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와 직원,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 관련 시설의 장과 종사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아동보장원 및 가정위탁, 등의 지원센터장과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단체의 장과 종사자, 청소년 보호 및 재활단체의 장과 종사자, 장기요양원, 장기요양신청 조사 등의 종사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종사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이들의 교육 이수 현황에 관한 구체적 통계 자료는 찾을 수 없으며, 의무교육 대상자에서 당사자의 가족과 사법종사자는 제외되어 있음.	○ 장애인학대피해예방교육의 이수 현황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누리집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해야 함
											▽	→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 ∵ 장애당사자 가족, 돌봄제공자, 간병인, 사법종사자의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 이수 관련 현황 관련 통계시스템을 구축하	○ 장애인학대피해예방교육의 이수 현황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시스템을 구축하

표제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통계 자료 부재</li> <li>○ 장애인복지법 제59조 4에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하여야하는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22개 관련 법률에 근거한 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교육 대상자에서 당사자의 가족과 간병인, 사법종사자는 제외되어 있음</li> <li>○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4의 1항에 교육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법 제59조 4의 2항 22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li> <li>○ 교육의 구체적 내용과 이수방법 등에 대해서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 공지사항에 자세하게 게시되어 있음(<a href="https://naapd.or.kr/board/noticeView?b_idx=912">https://naapd.or.kr/board/noticeView?b_idx=912</a>)</li> <li>○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교육은 모두 이수할 것으로 추정되나, 이수 현황에 관한 구체적 통계자료는 찾을 수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해야 함.</li> <li>○ 의무교육 대상자인 신고의무자에 간병인과 사법종사자를 포함시키고, 당사자의 가족에 대한 학대피해 예방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li> </ul>
38	38. 장애여성과 여아에 대한 강제불임 및 동의없는 임신중단 관행 근절 조치 및 보상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여성과 여아에 대한 강제불임과 동의없는 임신중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매커니즘과 보상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li> </ul>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부 관련 자료 (추가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여성과 여아에 대한 강제불임 및 동의없는 임신중단 관행 근절 조치 및 보상 계획 수립 관련 내용을 반영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음</li> <li>→ 장애여성과 여아에 대한 강제불임 및 동의없는 임신중단 관행 근절 조치 및 보상 계획 수립 관련 내용을 반영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여성과 여아에 대한 강제불임과 동의없는 임신중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매커니즘과 보상 계획 수립 등과 관련된 법령 및 정책 마련 필요</li> <li>○ 실태조사 자체가 부재하기에, 전 세대를 아우르는 실태조사 선행 필요</li> </ul>	
40	40. 장애이주민의 입국 및 장애 관련 서비스 접근을 막는 차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가 있는 이주민의 입국과 장애 서비스 접근을 막는 차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 관련 법령 또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 폐지 여부 확인</li> </ul>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신 출입국관리법, 장애인복지법의 관련 내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등 관련 법령에서 장애인에 차별적 입국금지 가능 내용이 폐지되지 않았고 모든 장애 외국인에 대한 장애인 등록,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이주민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개정 및 폐지 필요</li> <li>○ 장애이주민이 장애 관련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도록 장애인복지법 관련 내용</li> </ul>	

표제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 이행	미 이행	기타		
	또는 정책 폐지	정책의 폐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 최근 1년간 개정,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및 장애인 복지법 및 관련 법령, 정책 등에 장애인주민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이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개정 ○ 장애인주민에 대한 정책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필요
42	42-a. 협약 제19조, 일반논평 제5호 및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기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수정·보완	· 기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협약, 일반논평 제5호 및 탈시설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정, 보완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기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수정·보완 여부 및 수정·보완 내용의 협약, 일반논평 제5호 및 탈시설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확인	구조지표	D(질적/주관적평가)	보건복지부	· 최신 장애인 복지법 및 하위법령 관련 내용 ·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 현 정부는 2023년 상반기 발표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기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과 이에 근거한 “탈시설 시범사업”의 명칭에서 ‘탈시설’ 용어를 공식적으로 삭제하는 등 탈시설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보다 강화된 로드맵을 마련하기보다 기존 로드맵 내용조차도 후퇴시키는 등 기존 로드맵을 강화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음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는 시설 수용의 정당성 부여를 위해 ‘주거 결정권’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였으며, 일반논평 5호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제19조를 왜곡하고 있음. ○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2024년도 예산계획안에 따르면, 거주시설 운영 보조를 위한 예산은, 663,280백만원인 반면에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예산은 5.982백만원으로 무려 110배에 달함. ○ 지난 1년간 탈시설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탈시설’ 용어에 강력히 반대 함으로써 입법 논의에 제동을 걸어왔음.	○ 탈시설 권리와 탈시설 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시될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시설 수용 정책의 종식 및 국가의 책임 인정 등 UN탈시설가이드라인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독립적 법률안의 제정 필요. ○ 시설 소규모화 정책인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전면 수정하여, 충분한 예산의 선제적 반영을 통해 ‘탈시설 시범사업’의 집행을 향상할 도도 필요	
										√	○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에 장애인의 비자의적 입소에 관한 조항 유지.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서의 탈시설 용어 삭제 ○ 탈시설 시범사업의 용어 삭제 및 명칭 변경과 ‘탈시설’ 의미의 축소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2021) →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2022)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2023) - 시범사업 내 재가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방문형 주	○ 탈시설 로드맵 및 시범사업 등 정부 정책에서의 ‘탈시설’ 용어 복구 ○ 탈시설 권리와 지원에 관한 제반, 시설 폐쇄, 시설 수용자에 대한 배보상 등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 ○ 영구입소를 강화하는 시설 소규모화와 재투자가 아닌, 전환 주거 등 지역사회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 이행	미이행	기타		
												거돌봄서비스 등 시설 입소 방지를 위한 정책들이 반영되었으나, 확장의 개념이 아닌, '탈시설' 의미에 희석과 정책적 축소에 가까움. ○ 시설 기반 정책 강화 - 24시간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도입(2025년), 장애인거주시설의 한 유형에 해당하는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2023년 11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등 소규모화와 재투자 등 거주장애인의 입소영구화를 야기하는 시설 기반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	회 정착 지원으로의 예산 투자.
	<b>42-b. 거주시설 예산 대비 아동 포함 탈시설 전략 이행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예산의 비율</b>	· 장애아동을 포함하는 탈시설 전략 이행 강화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가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어느 정도 증액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탈시설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 다음 측정 산식 활용 · {(아동 포함) 탈시설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예산 ÷ 거주시설 지원 예산}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관련 자료 (추가 조사)				→ 기타 - 336.3% ∵ 거주시설 예산 대비 아동 포함 탈시설 전략 이행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예산 관련 현황 관련 통계 자료 부재	○ 관련 통계 자료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기타 - 373% ○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2023년도,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내 거주시설 운영 지원 예산 항목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예산을 선정하여 산출함. ※ 단, 배타적 장애서비스는 아니지만 지역사회 거주시 관련 부조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각종 급여를 포함시킬 수 있고, 거주시설 입소자와 지역사회 거주자에 대해 차등 지급 중인 장애인연금을 포함시킬 수 있음.	○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의 경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자연증가분에 불과. 수요자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서비스양 확대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 ○ 2024년도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가 신설, 재가 발달장애인의 시설입소 방지 차원에서 유의미하게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시설거주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예산은 당초 계획된 연도별 목표치 대비 삭감 수준. 탈시설 지원을 위한 제반이 미비한 가운데, 예산 불용 등이 사유로 지목되고 있으나 이는 시설의 소규모화와 재투자 등 입소장애인의 영구입소를 부추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44-a-2. 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준수율	· 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준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 산식 활용 · (웹 접근성 준수 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수 ÷ 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행정안전부	· 2023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				√	→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 ∴ 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준수 관련 통계 자료 부재	○ 관련 통계 자료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 ∴ 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준수 관련 통계 자료 부재 ○ 주요 정부기관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정부 행정 서비스 실태조사를 성별과 연령별로만 진행 장애인지 조사내용이 없음	○ 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웹접근성 준수에 대한 조사 필요	
										√	→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 ∴ 정부 및 공공기관 출판물(ISBN 부과 대상)의 접근가능한 형식(읽기쉬운 버전, 점자, 보이스오버) 제공 관련 통계 자료 부재	○ 관련 통계 자료 확보 방안 마련 필요	
44-a-3. 정부 및 공공기관 출판물(ISBN 부과 대상)의 접근가능한 형식(읽기쉬운 버전, 점자, 보이스오버) 제공 비율	· 정부 및 공공기관 출판물 중 읽기쉬운자료, 점자, 보이스오버 등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출판물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 산식 활용 ·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작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출판물 수 ÷ 전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출판물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관련 자료 (추가 조사)				√	→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 ∴ 정부 및 공공기관 출판물(ISBN 부과 대상)의 접근가능한 형식(읽기쉬운 버전, 점자, 보이스오버) 제공 관련 통계 자료 부재	○ 발달장애인법 제10(의사소통지원)제1항의 규정, 동법 시행령 제4조(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에 따라 시행규칙에 관련내용 규정마련 개정필요 ○ 관련지표의 법률상 의무이행에 대한 통계조사 필요 ○ 관련지표의 법률상 의무이행에 대한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 ∴ 정부 및 공공기관 출판물(ISBN 부과 대상)의 접근가능한 형식(읽기쉬운 버전, 점자, 보이스오버) 제공 관련 통계 자료 부재 ○ 장애인차별금지법, 공직선거법, 발달장애인법에 관련내용 규정이 있으나, 정부 및 공공기관 이행여부에 대한 통계 자료 없음.		
44-a-4. 전체 국민 대비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	·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 산식 활용 · {(인터넷 이용 장애인 수 ÷ 전체 장애인 수) ÷ (인터넷 이용 국민 수 ÷ 전체	결과지표	A(양적/사실기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				√	→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 ∴ 전체 국민 대비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관련 통계 자료 부재 ※ 일반국민(100) 대비 장애인의 요소별 디지털정보화 수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정보접근 95.6, 정보역량 74.9, 정보 활용 81.5	○ 관련 통계 자료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 91.5%(86% 94%) ○ [조사모집단] 비장애인 2023년 8월1일 현재 전국의 가구 내 상주하는 인구 만 7세 이상 가구원 7000명	○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 차이에 대한 접근성 문제 확인 조사 필요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46	44-b.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공 지침이 반영된 방송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마련	· 장애인이 방송 콘텐츠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송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관련 자료			√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키오스크 비율 관련 통계 자료 부재 ○ 한국소비자원 추정 2021년 키오스크 운영대수(추정) 210,033대 ○ 장애인 접근성 보장 키오스크 관련법으로 기준 마련 :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제3항, 제49조제1항, 장애인차별금지법(제15조 제3항),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3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운영 시행예정, 이에 대한 장애인 키오스크 접근성 실태조사 필요 ○ 장애인차별금지법 키오스크 전면적용을 위한 법개정 필요 ○ 정보화기본법 등 관련내용 중 장애인 접근성 확보를 위무화하기 위한 법령 및 고시개정 필요
	44-a. 실종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GPS 추적장치 설치 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에 따른 당사자 동의 절차 준수	· 실종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GPS 추적장치 설치 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에 따른 당사자 동의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관련 자료 (추가 조사)			√	→ 정부의 <b>현행 실종 예방 관련 대책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GPS 추적장치 설치 시 당사자 동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절차가 반영되지 않고 있음</b> ○ 해당 정책 근거 자료 미비 (아동권리보장원과 논의나 협의가 없는 상태이며 기업의 후원금으로 지원 사업 진행 중) ○ 실종아동에대한법률 제7조의3에서 지문 등록 및 관리에 대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위치추적이나 장치에 대한 내용이 없음. 따라서 동의 절차 여부도 확인이 불가	○ 실종 예방 대책에 GPS 추적장치 설치 시 당사자 동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 반영 필요 ○ 현재는 기업의 후원금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실종 예방을 위한 GPS 단말기를 배포하고 있으나 배포하는 개별 단체 등에서 개인의 위치정보와 동의 여부 확인할 수 있지만 법령이나 정책적인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 이행	미이행	기타		
													동의 절차 필요
48	48-a. 장애인의 동등한 결혼, 가정 꾸리기, 출산(임신) 및 양육 등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 개정	· 장애인의 동등한 결혼, 가정 꾸리기, 출산(임신) 및 양육 등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하여, 「민법」 제802조, 제804조(약혼), 동법 제808조, 제804조(혼인), 동법 제873조, 제887조, 제894조, 제898조, 제902조, 제906조(입양) 등의 법률 개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개정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행정안전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		→ 장애인의 동등한 결혼, 가정 꾸리기, 출산(임신) 및 양육 등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령이 개정되지 않았음	· 장애인의 동등한 결혼, 가정 꾸리기, 출산(임신) 및 양육 등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하여, 「민법」 제802조, 제804조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필요
	48-b. 장애인 가족 지원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지원 정책 마련	· 장애인 가족 지원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지원 정책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관련 자료		√			→ 개선 사항 없음. 장애인의 동등한 결혼, 가정 꾸리기, 출산(임신) 및 양육 등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령이 개정되지 않았음 ○ 관련법 내용 확인 ○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약혼, 혼인, 입양 등 가족구성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 유지	· 피성년후견을 이유로 가정을 구성하기 위한 절차 전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법규정에 대하여 빠른 개정 필요
	48-o. 장애인 가족의 돌봄	·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장애인에 대	※ 다음 측정 산식 활용	결과지표	B(양적/주관적평)	보건복지부	· 별도 추가 조사				√	→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 ∴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관련 통계 자료 부재	· 장애인 가족지원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법령 제·개정 및 정책 추진 필요  · 장애인 가족이 장애가족에 대한 돌봄 등 지원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장애인당사자의 독립적 생활과 가족의 부담으로 인한 시설입소 등의 어려움 발생 · 장애아동 또는 장애성인인 경우에도 가족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과 정책이 필요한 ○ 관련법의 내용 역시 선언적인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가족 정책을 위한 개정 필요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결과 모니터링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 이행	미 이행	기타		
	부담 비율	한 돌봄 제공 시간과 외부 돌봄 지원 인력의 돌봄 제공 시간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	·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장애인 돌봄 제공시간 ÷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장애인 돌봄 제공시간 + 외부 인력을 통한 돌봄 제공시간) × 100		가)						→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 ∴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관련 통계 자료 부재	·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한 공적 돌봄 지원 체계 구축 필요	
50	50-a-1. 완전한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일반교육 정책 내 통합교육 관련 사항 반영	· 완전한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일반교육 정책 내 통합교육 관련 사항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D(질적/주관적평가)	교육부	·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 : 통합교육 협력모델인 '정다운학교' 운영('18. 40교 → '22. 104교) 등을 통해</li> <li>○ 특수학급 미설치교의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과정 조정, 정기상담 등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지원 확대('18. 479명 → '22. 1,627명)</li> <li>○ 협력적 교육환경 조성 및 통합교육 실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이행사항 모니터링 체계 마련('23.~'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육법」 외에 「초·중등교육법」 과 「유아교육법」 내 통합교육 관련 내용 강화</li> </ul> </li> <li>○ 일반교육교원 직무연수·자격연수 과정에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 확대·편성 및 일반학교 관리자와 담임(교과)교사 연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이해교육(장애인학대 예방·신교교육 포함)을 특수교육 관련 필수 교과(1과목)로 편성하여 매년 관계기관에 관련 내용 안내 및 권고('23~)</li> </ul> </li> <li>○ 통합교육 관련 정책 방향을 특수교육 5개년 계획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li> </ul> → 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의 주요 방향으로 통합교육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반교육 내에서의 통합교육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정책적 근거 부족	○ 일반교육 체제 내에서의 통합교육 실시를 위한 근거 마련 필요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결과 모니터링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 이행	미 이행	기타		
									▽			<p>→ 특수교육 정책의 주요 방향을 통합교육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일반교육 내에서의 통합교육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정책적 근거 부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육대상학생을 고려하기 위한 사전검토목록을 적용하거나 학교별 장애인식지수를 활용하여 통합교육을 위한 장애 인식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유의미한 사업 계획 등이 있었으나 실시한 결과가 없음.</li> </ul> </li> <li>○ 체계 구축과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교육 협력모델인 정다운 학교 확대('22년 104교 ⇒'24년 173교)</li> <li>-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확대('22년 1627명 ⇒'24년 2,242명) 등 확인.</li> </ul> </li> <li>○ 전국 시도 특수교육청 196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내외부 위원 2,748명 구성, 4,941교 현장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육 5개년 계획에서 통합교육이 주요 방향으로 설정됐으나 '패러다임의 변화' 같은 선언성, 캠페인성 사업만으로는 통합교육을 견인하기에 부족함. 학교별 장애인식지수 진단,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통합학급 교원 증대 등 실질적, 강제적 이행책이 필요함.</li> <li>○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겪는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지원단 활동을 강화하고 주요 현황을 진단 분석하고 예방을 위한 교육, 매뉴얼 등 정책적 차원에서 구축이 필요함.</li> </ul>
	50-a-2. 전일제 통합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학교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li> </ul>	<p>※ 다음 측정 산식 활용</p> <p>· (일반학급 배치 장애학생 수 ÷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배치 장애학생 수) × 100</p>	결과지표	A(양적/사실기반)	교육부	· 2023 특수교육 통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학급 배치 장애학생 18,474 명</li> <li>○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배치 장애학생 90,935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학교 28,942명, 특수학급 61,993명</li> <li>- 특수교육지원센터 294명 제외</li> </ul> </li> </ul> <p>→ 기초선 조사 결과, 전일제 통합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비율은 20.3%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일제 통합학급 비율 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완전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 배치 장애학생 19,254 명</li> <li>○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배치 장애학생 95,630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학교 30,027명, 특수학급 65,966명</li> <li>- 특수교육지원센터 363명 제외</li> </ul> </li> </ul> <p>→ 전일제 통합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비율은 20.1%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일제 통합학급의 비율은 1차년도에 비해 0.2퍼센트 감소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마다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전일제 통합학급의 비율은 오히려 감소함. 완전한 통합교육의 가치를 제대로 발현할 수 있도록 정</li> </ul> </li> </ul>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 이행	미 이행	기타		
	50-a-3.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연수 이수 비율	·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운영 역량 증진을 위한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연수 이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 산식 활용 · (통합교육 연수 이수 일반교육교원 수 ÷ 전체 일반교육교원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교육부	· 2023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2022년 교육기본통계				▽	○ 통합교육 연수 이수 일반교육교원 51,374명 - 통합학급 담당교사 기준 통계 - 3시간~ 15시간 미만 17,394명 - 15시간 ~ 29시간 8,766명 - 30시간 ~ 59시간 8,614명 - 60시간 이상 19,600명 ○ 통합학교 관리자 장애공감 연수 11,928명 ○ 전체 일반교육교원 231,671명 → 기초선 조사 결과,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연수 이수 비율은 27.3%임 →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연수 이수 비율은 28.9%임	○ 통합학급 담당교사 뿐만 아니라 전체 교원에 대한 통계 필요 ○ 정책 목표로 통합교육 연수 이수 비율 설정 필요
											▽	○ 통합교육 연수 이수 일반교육교원 56,306명 - 통합학급 담당교사 기준 통계 - 3시간~ 15시간 미만 20,667명 - 15시간 ~ 29시간 12,234명 - 30시간 ~ 59시간 11,091명 - 60시간 이상 12,314명 ○ 통합학교 관리자 특수교육 연수 12,190명 ○ 전체 일반교육교원(2024년) 236,980명 (‘24년도에 비해 1.57% 소폭 상승함)	○ 통합학급 담당교사 뿐만 아니라 전체 교원에 대한 통계 필요 ○ 정책 목표로 통합교육 연수 의무화나 일정 이상의 비율 설정 필요
	50-b. 장애학생의 의사소통 방법에 적합한 읽기 쉬운 학습 자료,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	· 장애학생의 의사소통 방법에 적합한 읽기 쉬운 학습 자료,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교육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 · 서울특별시 알다센터, 보다센터		▽	○ 제21조(통합교육) 제②항, 제31조 편의제공 등 제①항 ○ 5개년 계획 : 특수교육기관-지역 보조기기센터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학교 방문형 ‘찾아가는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등) 중심 관련 제도 운영 → 읽기 쉬운 학습자료 등의 정책은 복지중심 정책이며, 학교 중심의 지원 정책이 미비하고, 학습보조기기 등의 지원 법률은 마련되어 있으나 의사소통 측면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 ‘찾아가는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등의 계획들을 ‘24년도 특수교육계획에서도 가지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운영 결과가 없음.	○ 의사소통 보조기기 지원, 읽기 쉬운 학습자료 지원 등에 대한 정책목표 설정 필요 ○ 사례나 자료 수집만으로는 부족함. 모든 유형의 장애 학생을 위한 의사소통지원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 이행	미이행	기타		
												○ 읽기 쉬운 자료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지원사업 등)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개별 교육청에서 낸 학습지원·활동자료를 특수교육원에서 아카이빙 하는 정도임. ○ 학습보조기기 등의 지원 법률은 마련되어 있으나 의사소통 측면 지원은 부족함	을 교육적 과정을 통해 강제할 필요가 있음, 교육 과정에서 의사소통지원을 필수로 하는 법률 개정 등도 필요함.
	50-c. 어린이집 이용 장애영유아의 동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 대책 수립	· 보건복지부 산하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에게도 교육부 산하 일반유치원에 다니는 장애아동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 지원을 보장하여 재원 유형에 상관없이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담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교육부 · 보건복지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9조 제2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법상 보장되는 의무교육에 대한 지원을 교육부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서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장애아동이 유치원에 재원하는 장애아동과 동등한 수준으로 교육적 지원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 및 관련 정책 마련 필요	
	50-o. 학교 졸업 장애학생의 지역사회로의 전환 비율	· 고교 졸업 장애학생 중 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 비율	※ 다음 측정 산식 활용 · (취업 또는 진학 고교 졸업 장애학생 수 + 전체 고교 졸업 장애학생 수) × 100	결과지표	A(양적/사실기반)	교육부	· 2023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 취업한 고교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586명 ○ 진학한 고교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3,761명 ○ 전체 고교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6,528명 - 특수학급, 특수학교, 일반학급 → 기초선 조사 결과, 학교 졸업 장애학생의 지역사회로의 전환 비율은 66.6%임 → 학교 졸업 장애학생의 지역사회로의 전환 비율은 69.5%임 ○ 취업한 고교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623명 ○ 진학한 고교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3,719명 ○ 전체 고교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6,247명 - 특수학급, 특수학교, 일반학급 (*전년도에 비해 2.9%증가함)	○ 수렴된 계획과 개정 법령에 따른 유보통합 실행	
	52-1. 상법 제372조 완전	· 상법 제732조 완전 폐지 여부를 확인	·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법무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 상법 제732조 폐지하지 않음 ○ 상법 제732조 폐지하지 않음.	○ 상법 제732조 완전 폐지 ○ 상법 제732조의 완전 폐지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 이행	미이행	기타		
	폐지	인하기 위한 지표	는 관련 법률 폐지 여부 확인		)		터 자료 활용					○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험제도상(계약시) 차별의 경우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이 2017년 36.4%, 2020년 13.9%, 2023년 31.7%이며, 발달장애(지적·자폐성), 정신장애가 상위 유형에 위치해 있어 해당 조항이 여전히 차별의 근거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	
	52-a-2. 가입기 장애여성의 성적 및 재생산 건강 관리 프로그램 이용률	· 여성장애인의 성적 및 재생산 건강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관련 프로그램에 접근 정도를 확인하는 지표	※ 다음 측정 산식 활용 · (여성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이용자 수 ÷ 가입기 장애여성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관련 자료 (추가 조사)				▽	→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 ∵ 가입기 장애여성의 성적 및 재생산 건강 관리 프로그램 이용 관련 통계 자료 부재	○ 관련 통계자료 확보 방안 마련 필요
	52-a-3. 정신장애인의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이용률	· 정신장애인이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 산식 활용 · (정신건강 프로그램 이용 정신장애인 수 ÷ 전체 정신장애인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2021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				▽	○ 2021 정신건강실태조사보고서 제2절 정신장애 진단자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평생 해당 정신장애 진단받은 대상자에서 2020년도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한 비율 확인 4.4% → 기초선 조사 결과 정신장애인의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이용률은 4.4%임 → 2021년 기초선 조사 결과 이후 추가로 확보된 조사 결과가 없음 ○ 2021 정신건강실태조사보고서 제2절 정신장애 진단자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평생 해당 정신장애 진단받은 대상자에서 2020년도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한 비율 확인	○ 정신장애인의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이용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정신건강실태조사 확대 ○ 정신건강복지센터 확대 및 안정화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결과 모니터링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 이행	미이행	기타		
52-b-1. 보건 관련 종사자 대상 장애인 권리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관련 종사자 (의사, 간호사, 한의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병원종사자,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권리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지 확인하는 지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li> </ul>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3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안 내</li> </ul>	이행	부분 이행	미이행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0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권 교육 운영 중에 있음</li> <li>- 사업내용: 보건의료종사자 등 관련기관 종사자에게 장애인건강권에 대한 교육 운영</li> <li>- 사업대상: 의료인, 장애인관련 시설종사자 및 장애인 관련 보조인력, 예비의료인 등</li> <li>- 세부사업: 장애인 건강권관련 교육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시간: 1~2시간</li> <li>· 교육운영: 연 4회 이상</li> <li>· 교육내용: 장애인건강권 관련 법, 정책, 장애인과 의사소통</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결과 지표 확인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0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권 교육 운영 중.</li> <li>○ 그러나, 이 법률에 따르지 않는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에 대한 교육은 「의료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료기관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정신의료기관)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학대신고 및 장애인 성범죄 예방교육을 진행할 뿐 그 내용과 시간이 부족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의료인 대상 장애인 권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li> </ul>
52-b-2. 국민 대상 건강 정보 중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방식(점자, 보이스오버, 수어, 읽기쉬운 형식 등)으로 제공되는 건강 정보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련 정보가 장애인이 접근하기 쉬운 형식(점자, 보이스오버, 수어, 읽기쉬운 버전)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측정 산식 활용</li> <li>·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는 건강 정보 수 ÷ 전체 건강 정보 수) × 100</li> </ul>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3년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발간자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 관련 자료</li> <li>- 2023년도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발간자료 중 점자, 보이스오버, 수어, 읽기쉬운형식으로 함께 제공된 건강 정보 확인하였으나 30개 중 0개. 심지어 장애와 관련한 건강정보도 해당사항 없음</li> <li>→ 기초선 조사 결과 0%, 이를 조사하기 위한 통계 자료 확보 필요</li> <li>→ 5/24 = 4.0%</li> <li>○ 보건복지부 2024년 발간자료 124개 중 장애인과 직접 관련된 자료는 20개로, 이 중 5개만이 보이스아가 함께 제공됨. 점자, 읽기쉬운 자료는 부재.</li> <li>○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국립재활원과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최신 장애인 건강정보 자료를 반영한 2024년 장애인 건강정보 자료집을 발간하여 거의 400개에 다다른 자료를 담았지만, 해당 자료집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 제공 모든 국민 대상 건강관련 정보가 장애인이 접근하기 쉬운 형식(점자, 보이스오버, 수어, 읽기쉬운 버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 필요</li> <li>○ 보건복지부 발간자료의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형식 제공 의무화</li> <li>○ 2024 장애인 건강정보 자료 집 多(다)있소에 대한 접근 가능한 형식 명시</li> </ul>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각 자료별 제공 유무를 표기하지 않음.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직접 발간한 11개의 자료 중 점자파일이 포함된 자료는 1개.	
54	54.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국적과 체류 상태에 따른 제한 규정 폐지	· 장애인의 국적과 체류 상태와 상관 없이 필요에 따른 가활과 재활 접근 보장을 위해 제한 규정을 철폐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 법령정보센터 자료(추가 조사)			○	○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등록을 필한 자에 한해 가활 및 재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시행규칙에 명시된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어,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장애인등록 신청을 할 수 있음. → 외국인등록을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하여야 하는데, 국적이 없는 난민 등은 외국인등록이 불가하므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접근이 제한됨	○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등록제가 폐지되거나, 난민 등 무국적자도 장애인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신청서식을 개정하거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등록을 필한 자에 한해 가활 및 재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동법 제32조의2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1항에서는 재외동포 중 국내거소신고자,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 출입국관리법 상 영주권자, 재한외국인처우법상 결혼이민자, 난민법상 난민인정자로 제한하고 있음. ○ 동조 2항에서는 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들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출입국관리법 11조 입국의 금지 등에 '사리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등록제가 폐지되거나, 불인정 난민 등 무국적자도 장애인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재외동포 및 외국인 대상의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 제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최소한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의 5를 삭제하고, 정신장애에 외국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6	56-a-1. 노동 관련 법령 내 장애를 이유로 한 제한 직종 수	· 직종 관련 법률 내에 장애유형을 이유로 직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항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 직업 관련 법령 중 장애유형을 근거로 한 제한 조항 반영 법령 수 측정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고용노동부	· 법제처 국가 법령정보센터 자료 활용(기존 자료)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4항에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을 적용 제외 직종으로 규정하고 있음 → 기초선 조사 결과, 노동 관련 법령 내 장애를 이유로 한 제한 직종 수는 6종임	○ 적용 제외 직종 축소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방안 마련 필요	
										○	→ 노동 관련 법령 내 장애를 이유로 한 제한 직종 수는 6종임	○ 의무고용 적용 제외 직종 축소를 위한 관련 법령 개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결과 모니터링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 이행	미이행	기타		
56-a-2. 국가 수준의 장애인 노동 관련 정책(계획) 내 채용 광고, 채용 절차, 합리적 편의 제공, 재훈련, 승진 등의 분야에서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내용 반영	· 현행 관련 국가 정책 내 고용, 취업, 승진, 재훈련에 장애포괄적(차별 제) 조치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국가 수준의 장애인 노동 관련 정책 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고용, 취업, 승진, 재훈련 관련 차별 금지 및 장애포괄적 조치 포함 여부 확인	과정지표	과정지표	C(질적/사실기반)	고용노동부	·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4항의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 의무고용 제외 조항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 방안 마련 필요</li> <li>○ 적용 제외 직종 내 장애인 직무 개발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차장애인고용촉진기본계획 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철폐 관련 내용 부재</li> <li>→ 제6차장애인고용촉진기본계획 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철폐 관련 내용 부재</li> <li>○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나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에는 직업재활훈련 강화, 장애인생 산품 우선구매촉진, 표준사업장 확대 및 지원 강화, 장애인의무고용 준수 기업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고용, 취업, 승진, 재훈련 관련 차별 금지 및 장애포괄적 조치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려움.</li> <li>○ 합리적 편의제공 관련하여 보조공학 지원체계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목표수치는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차원의 장애인 노동 관련 정책 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관련 내용 반영 필요</li> <li>○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나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에 누락된 고용, 취업, 승진, 재훈련 관련 차별 금지 및 장애포괄적 조치에 대한 내용을 연차별 계획에 구체적으로 담아낼 필요가 있음.</li> <li>○ 이에 따라 제7차 종합계획 및 고용촉진계획에 관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li> </ul>
56-b-1. 전체 인구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대비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비율	· 장애인에 대한 동일 가치 동일 보수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의 임금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측정 산식 활용</li> <li>· (전체 임금 근로자의 3개월 평균 임금 ÷ 전체 장애인 임금 근로자 3개월 평균 임금) × 100</li> </ul>	결과지표	결과지표	A(양적/사실기반)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및 통계청 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상반기 기준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은 199.5만원으로 확인됨. 이는 전체 인구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300.7만원의 66.3% 수준으로, 전체인구 임금근로자 대비 장애인구의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격차 확인됨.</li> <li>→ 기초조사 결과, 전체 인구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대비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비율은 66.3%임</li> <li>○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을 종사자 지위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 미만인 비율은 29.9%로 해당 비율은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 10.0%, 임시근로자 59.8%, 일용근로자 29.5%로 나타남.</li> <li>○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을 사업체 규모별로 비교하면, 5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구의 임금격차의 원인은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함. 종사자의 지위(근로계약의 형태)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모, 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 등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서 종합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야 함.</li> <li>○ 장애정도도와 유형에 맞는 노동시장 진입 정책도 더욱이 강화되어야 함. 그리고 이에 성별에 따른 격차도 존재하여, 이러한 요인을 고려한 정책과 연구가 제</li> </ul>	

표제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결과 모니터링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 이행	미 이행	기타		
												<p>100만원 미만인 비율은 5.9%인데 반해 5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35.7%로 높게 나타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아가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67.3%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근로의 영역에 있어서 안정성이 낮은 실태를 개선할 필요 있음.</li> </ul>	<p>시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급여가 낮은 것도 문제이나, 일반노동시장에 진입하더라도 안정적인 형태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실태도 고려되어야 함. 그래야만 장애인의 임금근로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li> <li>○ 최저임금적용제외 문제에 대해 아무런 입법적/정책적 대안을 두지 않은 것도 장애인의 평균임금을 낮추는데 기인하고 있음.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임.</li> </ul>
										<p>→ 체 인구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대비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비율은 67.4%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하반기 기준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은 202.8만원으로 확인됨. 이는 전체 인구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300.7만원의 67.4% 수준으로, 전체인구 임금근로자 대비 장애인의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격차 확인됨.</li> <li>○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을 종사자지위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임금이 110만원 미만인 비율은 34.1%임.</li> <li>○ 나아가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종사자 지위는 상용근로자는 51.8%, 임시근로자는 34.1%, 일용근로자는 14%로 전반적으로 근로의 영역에 있어서 안정성이 낮은 실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구의 임금격차의 원인은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함. 종사자의 지위(근로계약의 형태)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모, 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 등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서 종합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야 함.</li> <li>○ 장애정도나 유형에 맞는 노동시장 진입 정책도 더욱이 강화되어야 함. 그리고 이에 성별에 따른 격차도 존재하여, 이러한 요인을 고려한 정책과 연구가 제시되어야 함,</li> <li>○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급여가 낮은 것도 문제이나, 일</li> </ul>		



표제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 이행	미이행	기타		
												<p>하는 추세임. 나아가 UN 사회권위원회의 일반 논평 제23호(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General comment No. 23 (2016) on the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article 7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para. 47 (c).)은 “인지된 근로 능력 감소를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제도는 이를 위반하고 있는 사항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에서도 보호작업장의 단계적 전환 등에 대한 요구가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지속 제기되고 있으나, 최저임금 적용 제외에 대한 아무런 대안으로 실행되지 않고 있음.</li> <li>○ 나아가 최저임금법 제7조 전면 폐지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전면 폐지 필요함. 하지만 현재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제외에 대한 별도 보상체계나 지원체계가 전무한 상태임. 이는 장애인노동자에게는 차별로 사업주에게는 고용회피</li> </ul>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 이행	미이행	기타		
													로 이어질 수 있음. 그러므로 보호고용, 재활, 훈련 등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면서도, 동시에 최저임금 전면 적용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을 하락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의 강구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공공일자리 정책 등의 적극확대가 필요함.
	<b>56-c-1. 탈시설 장애인 일반노동시장 참여 비율</b>	· 탈시설 장애인이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추정 산식 활용 · (최근 5년간 탈시설한 장애인 중 일반 노동시장 피고용인 수 ÷ 최근 5년간 탈시설한 장애인 중 피고용인 수) × 100	결과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관련 자료(추가 조사)				→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 ∵ 탈시설 장애인 일반노동시장 참여 관련 통계 자료 부재 ○ 일반 노동시장 내 탈시설 장애인이 진입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이 전무함. 대체로 장애인구의 일반 노동시장 진입 여건도 열악하나, 탈시설 장애인 법적 지원체계 조차 없는 상태. ○ 탈시설 로드맵이 있음에도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는 마땅한 탈시설 장애인의 일자리 정책과 그 방향성을 찾을 수 없음.	○ 탈시설장애인 당사자의 노동시장 참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 자료 확보 방안 마련 필요	
	<b>56-c-2. 일반 노동시장 내 탈시설 장애인 지원 체계 구축</b>	· 일반 노동시장 내 탈시설 장애인 지원 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관련 자료				→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 ∵ 탈시설 장애인 일반노동시장 참여 관련 통계 자료 부재 ○ 일반 노동시장 내 탈시설 장애인이 진입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이 전무함. 대체로 장애인구의 일반 노동시장 진입 여건도 열악하나, 탈시설 장애인 법적 지원체계 조차 없는 상태. ○ 탈시설 로드맵이 있음에도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는 마땅한 탈시설 장애인의 일자리 정책과 그 방향성을 찾을 수 없음.	○ 탈시설 장애인이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통계 구축 필요.	
	<b>56-c-2. 일반 노동시장 내 탈시설 장애인 지원 체계 구축</b>	· 일반 노동시장 내 탈시설 장애인 지원 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관련 자료				→ 일반 노동시장 내 탈시설 장애인 진입 장려 정책 부재.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진입 여건도 열악하나,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원 체계는 전혀 없는 상황임	○ 탈시설 장애인의 일자리 진입과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 정부주도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도 탈시설 장애인	

지표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에 대한 별도의 정책이 제시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노동시장 내 탈시설 장애인이 진입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이 전무함. 대체로 장애인구의 일반 노동시장 진입 여건도 열악하나, 탈시설 장애인 법적 지원체계 조차 없는 상태.</li> <li>○ 탈시설 로드맵이 있음에도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는 마땅한 탈시설 장애인의 일자리 정책과 그 방향성을 찾을 수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시설 장애인의 일자리 진입과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가 수립되어야 함.</li> <li>○ 정부주도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도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정책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 자폐성, 청각, 뇌병변, 정신장애 등 고용 취약 유형의 맞춤형 지원체계 수립이 필요함. 장애의 정도나 유형으로 인해 일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경우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 체계 확대 필요</li> </ul>	
56-c-3. 고용 취약 유형 장애인(지적, 청각, 정신장애)의 일반 노동시장 참여 비율	지적, 청각, 정신장애 등 고용 취약 유형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참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p>※ 다음 측정 산식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 청각, 정신장애인 중 일반 노동시장 참여 비율 ÷ 전체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참여 비율) × 100</li> <li>* 일반 노동시장 참여 비율: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한 피고용인 수 ÷ 전체 피고용인 수) × 100</li> </ul>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 참여 비율은 97%에 달하지만, 고용 취약 유형 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 참여 비율은 73% 정도로 전체 장애인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됨</li> <li>→ 기초선 조사 결과, 전체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참여 비율 대비 고용 취약 유형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참여 비율은 75% 정도임</li> <li>→ 미조사. 2022년 기준 전체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참여 비율 대비 고용 취약 유형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참여 비율은 75% 정도임</li> <li>○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적(발달) 장애인은 47%, 청각 장애인은 73.3%, 정신적 장애인은 50.1%가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해있음.</li> <li>○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에 지적장애인은 36.7%, 정신적 장애인은 32.8% 참여하고 있음. 고용 취약 유형 장애인 중에서도 지적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은 청각 장애인에 비해 일반 노동시장 참여비율이 낮고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은 직업재활시설 일자리에 몰려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 청각, 정신장애 등 고용 취약 유형의 맞춤형 지원체계 수립이 필요함. 특히 지적, 정신장애의 경우 대부분이 최저임금적용제외 대상으로 노동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 일자리에 몰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지적, 정신장애 등 장애의 정도나 유형으로 인해 일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경우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 체계를 더욱 확대할 필요 있음.</li> </ul>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결과 모니터링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b>56-c-4. 일반노동시장 내 고용 취약 유형 장애인(지적, 청각, 정신장애) 지원체계 구축</b>	· 일반노동시장 내 지적, 청각, 정신장애 등 고용 취약 유형 장애인의 지원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고용노동부	·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기본계획 등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기본계획 등에 관련 내용을 일부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 되어 있지 않음	○ 지적, 자폐성, 청각, 뇌병변, 정신장애 등 고용 취약 유형의 맞춤형 지원체계 수립이 필요함. 장애의 정도나 유형으로 인해 일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경우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 체계를 더욱 확대할 필요 있음.
	<b>56-d-1 전체 장애인 노동자 중 보호작업장 근로 장애인 비율</b>	· 전체 장애인 노동자 중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 산식 활용 · (보호작업장 내 근로 장애인 수(근로자+훈련생) ÷ 전체 장애인 노동자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관련 자료 (기존 자료)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 기초선 조사 결과, 2021년 장애인고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고용된 장애인의 보호작업장 등 종사 비율은 3%임	○ 보호작업장 근로 장애인을 일반 고용시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고용 대책 마련이 필요 ○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온전한 분리 통제가 필요함. 여기서 나아가 보호작업장을 포함한 세부적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의 범주를 구분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의 실태를 점검할 필요 있음. ○ 통합적이며 접근가능한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해 보호작업장 근로 장애인들을
	→ 2022년 장애인고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고용된 장애인의 보호작업장 등 종사 비율은 5.1%임 ○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자립작업장 등)에 참여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5.1%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대부분이 최저임금적용제외를 인가받고 있으므로 보호작업장 노동자 중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근로자의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 이행	미이행	기타		
													일반 고용시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고용 대책 마련이 필요.
	<b>56-d-2.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중 일반 일자리로 전환한 장애인의 비율</b>	· 보호작업장으로부터 개방되고 통합적이며 접근가능한 일반 일자리로 전환한 장애인의 비율	※ 다음 측정 산식 활용 · (보호작업장 근무 중 일반 일자리로 전환한 장애인 수 ÷ 보호작업장 근무 장애인 수) × 100	결과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 별도 조사				→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 ∵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중 일반 일자리로 전환한 장애인의 비율 관련 통계 자료 부재 ○ 장애인직업재활정책에 따라 보호작업장에서 일자리에 참여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많고, 6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전환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비중이 적음. 대부분 직업재활시설을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추세임	○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중 일반 일자리로 전환한 장애인의 비율 관련 통계 자료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온전한 분리 통계 필요. 보호작업장에서 일반노동시장으로 전환하는 비율에서 나아가 다시 보호작업장으로 재전환 되는 비율 점검 필요	
	<b>56-d-3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에 장애여성 의무고용 할당 비율</b>	· 장애인, 특히 장애 여성의 개방노동시장 내 참여 증대를 위한 특별 보호 조치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관련 자료 (추가 조사)				→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 ∵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중 일반 일자리로 전환한 장애인의 비율 관련 통계 자료 부재 ○ 장애인직업재활정책에 따라 보호작업장에서 일자리에 참여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많고, 6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전환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비중이 적음. 대부분 직업재활시설을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추세임.	○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온전한 분리 통계가 필요함. 여기서 나아가 보호작업장을 포함한 세부적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범주를 구분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의 실태를 점검할 필요 있음. ○ 보호작업장에서 일반노동시장으로 전환하는 비율에서 나아가 다시 보호작업장으로 재전환 되는 비율도 점검되어야 함.	
											→ <b>현행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내용 반영하지 않고 있음</b> ○ 경제활동상태 추정 지표를 통해 성별 격차를 확인할 수 있음.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 47.1%, 여성 24.2% 실업률은 남성 3.6% 여성 3% 고용률은 남성 45.4% 여성 23.5%로 장애정도와 더불어	○ 장애인고용장려금 정책을 통해 장애정도와 성별에 따라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을 달리하고 있음. 사업주가 채용하는 근로자가 중증 일수록 여성 일수록 더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 이행	미 이행	기타		
	도입	표										<p>어 성별에도 경제활동상태 지표에 격차가 나타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 조사에 따르면 남성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을 60.5%인데 반해 여성은 83% 높음</li> </ul>	<p>높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국 장애인고용장려금 정책 또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일뿐 여성장애인의 고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아님. 오히려 여성장애인을 채용하는 정책으로 일자리의 진입 자체를 공공부문 주도로 확대해야 함</li> </ul>
										<p>→ <b>현행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내용 반영하지 않고 있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50명 이상 민간기업은 3.1% 이상, 공공기관은 3.4% 이상을 고용해야함.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대기업 장애인 고용율은 2.35%,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율을 2.91%로 현저히 저조함.</li> <li>○ 경제활동상태 추정 지표를 통해 성별 격차를 확인할 수 있음.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 44.6%, 여성 22.9% 실업률은 남성 4% 여성 3.7% 고용률은 남성 42.9% 여성 22%로 장애정도와 더불어 성별에도 경제활동상태 지표에 격차가 나타남.</li> <li>○ 2023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 조사에 따르면 남성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을 61.4%인데 반해 여성은 81.8%로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고용장려금 정책을 통해 장애정도와 성별에 따라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달리하고 있음. 사업주가 채용하는 근로자가 중증 일수록 여성 일수록 더 높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됨.</li> <li>○ 결국 장애인고용장려금 정책 또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일 뿐 여성장애인의 고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아님. 오히려 여성장애인을 채용하는 정책으로 일자리의 진입 자체를 공공부문 주도로 확대해야 함</li> <li>○ 공공부문 일자리 외에도 일반 사업장에서 장애여성의 고용율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에 장애여성 의무고용 할당 비율을 추가하는 법 개정이</li> </ul>		

지표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 이행	미 이행	기 타		
													필요함
58	58-a-1. 국가 수준의 장애 정책 내 장애인의 빈곤경감계획 강화 조치 마련	· 장애인의 사회적 보호 및 빈곤경감 계획을 강화했는지 확인하는 지표	· 국가 장애인 종합계획상 장애인빈곤 경감계획 비교, 장애인 빈곤율 통계 확인하여 제시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제5·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2023 장애인통계연보_장애인개발원				▽	→ 국가 수준의 장애 정책 내 장애인의 빈곤경감계획 강화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제5·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모두 장애인빈곤경감 계획 강화를 내세우고 있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 계획에 의하면 복지부 소관 장애인정책 예산 '17년 2조 7억원' > 22년 4조 854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 주로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돌봄 등 돌봄제도 확대 및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인상 등 소득보장 강화의 결과로 본다고 기재하였으나 한국 장애인개발원의 '2023 장애통계연보'에서는 ① 한국의 장애인 복지지출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꼴찌에서 5번째 수준이고, ② GDP 대비 장애인 복지 현금급여 비율 역시 0.39%에 그쳐 뒤에서 4 번째, OECD 평균 1.56%의 4분의 1수준인 점, ③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2021년 기준)은 42.2%로 국가의 개입이 없는 근로소득 등만 따지면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절반 가까이 빈곤상태이며, 이러한 시장소득 빈곤율은 2017년 38.9%에서 2021년 42.2%로 4년 새 오히려 3.3% 올랐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 수치를 통해 국가 수준의 장애 정책 내 장애인의 빈곤경감계획 강화 조치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임	○ 장애인빈곤경감, 소득보장과 관련된 장애인연금법 등을 개정하여 해당 사항을 실현할 필요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상 목표(23년 장애인 빈곤율 39% > 27년 장애인 빈곤율 37%) 실현을 통한 빈곤 정책 실효성 입증 필요
	58-a-2. 전체 국민 대비	· 장애인의 빈곤 수준을 일반 국민과	※ 다음 측정 산식 활용	결과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				▽	→ 국가 수준의 장애 정책 내 장애인의 빈곤경감계획 강화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빈곤상황에 대한 인식과 욕구는 있다고 적시되어 있으나, 빈곤경감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음	○ 장애인빈곤경감, 소득보장과 관련된 장애인연금법 등을 개정하여 해당 사항을 실현할 필요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상 목표(23년 장애인 빈곤율 39% > 27년 장애인 빈곤율 37%)를 실현해서 빈곤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할 필요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				▽	○ 장애인 빈곤율(39.7%) ÷ 전체인구 빈곤율(15.3%) X 100 = 259%	○ 빈곤율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공적이전소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 이행	미 이행	기타		
	장애인의 빈곤율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는 지표	· 장애인의 빈곤율 ÷ 전체 국민의 빈곤율		)		인 빈곤 및 소득불평등 지표					→ 기초선 조사 결과, 2022년도 장애인 빈곤율은 전체 인구 빈곤율 대비 2.59배임	득의 비중이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바 장애인 복지로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활동지원급여 등을 대폭 확대할 필요 ○ 장애정도가 아닌 '근로능력 평가'등을 적용하여 공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소득보장체계에 편입되는 방안 도입 필요 ○ 더불어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 고용 현황 개선 필요
										▽	→ 2023년도 장애인 빈곤율은 39.4%, 전체인구 빈곤율은 15.1%이므로 대비 2.61배임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이며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기준임	○ 빈곤율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바 장애인 복지로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활동지원급여 등을 대폭 확대할 필요 ○ 장애정도가 아닌 '근로능력 평가'등을 적용하여 공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소득보장체계에 편입되는 방안 도입 필요 ○ 더불어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 고용 현황 개선 필요	
	58-a-3.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소득보장 지원 금액에 대한 정부와 장애인단체	· 장애인단체들과 장애인의 소득 보장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장애수당 등 관련 민관 협의체(장애인단체 포함) 확인하여 제시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회의 자료			▽	→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 ∵ 관련 협의 체계 구축 여부를 파악할만한 자료 확인이 어려움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의하면, 5차계획 평가 및 6차계획 정책 추진방향 및 목표, 과제 발굴, 조율 등 논의를 위해 실무추진단 구성·운영('22.5~11)을 기재하고 있으나 실무추진단을 통해 장애인 단체와	○ 관련 협의체계 구축 확인 필요 ○ 관련 협의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공개, 열람 필요	

지표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 이행	미이행	기타		
간	협의체계 구축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는지, 어떤 장애인 단체가 얼마나 결합하였는지 등 실질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움  →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 ∴ 관련 협의 체계 구축 여부를 파악할만한 자료 확인이 어려움  ○ 2025년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4만 2,510원(전년대비 7,700원 인상)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결정 기준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힘 ○ 물가변동률이라는 단순 산술적 계산이 반영되긴 하였으나, 이마저도 장애인 단체와 협의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 장애인연금 등 소득보장 지원을 위한 별도의 협의 체계는 2024년 현재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관련 협의체계 구축 확인 필요 ○ 기존 협의체(ex.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등)에서 논의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장애인단체와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 공개 필요
											○ 활용 자료에 의하면 2024년부터 중증장애인에 한해 의료급여 부분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이 제외된다고 발표함(+3.5만명). → 생계급여, 의료급여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요건은 완전 폐지되지 않았으며 완전 폐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 생계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요건 완전폐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계획 수립 및 시행 필요	
											○ 활용 자료에 의하면 2024년부터 중증장애인에 한해 의료급여 부분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이 제외된다고 발표함(+3.5만명) 즉, 여전히 생계급여, 의료급여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요건은 완전폐지 되지 않았으며 완전 폐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도 명확하지 않은 현황임	○ 생계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요건 완전폐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계획 수립 및 시행 필요	
	58-b-1. 부양의무자 요건 완전 폐지	·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을 확대하기 위해 특히 부양의무자 요건 완전폐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부양의무자 요건 완전폐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시	과정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2024년 보건복지부 정부 예산안 보도 자료						
	58-b-2. 장애인연금 수급 비율	·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장애인 대비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 산식 활용 · 장애인연금 수급 비율: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 등록 장애인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 2019년 기준 장애인 연금 수급자 수(368,716명) ÷ 등록 장애인 수(2,618,000) X 100 = 14.1% → 기초선 조사 결과, 장애인연금 수급 비율은 14.1%임(2019년도 자료 기준)  → 장애인연금 수급 비율은 13.44%임(2023년도 자료 기준) ○ 2019년 기준 장애인 연금 수급자 수(368,716명) ÷	○ 지급대상 확대, 연금 수급 위한 장애기준 및 자산조사 방식 개선, 급여수준 인상 등  ○ 지급대상 확대, 연금 수급 위한 장애기준 및 자산조사 방식 개선, 급여수준 인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 이행	미이행	기타		
	60-d. 전체 국민 투표율 대비 장애인의 투표율	· 전체 국민 투표율과 비교했을 때 장애인의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상대적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 산식 활용 · (모니터링 직전에 실시된 전국 규모의 동시선거 결과 중) (장애인의 투표 참여율 ÷ 전체 국민의 투표 참여율) × 100	결과지표	B(양적/주관적평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사회통합실태조사 · 장애인고용패널조사					<p>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장애인 접근 불가한 투표소가 많고, 시각장애인 중 점자 문맹률이 90%이지만 선거자료는 점자로만 배부되는 등,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접근성 보장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li> </ul>	<p>악하고, 이를 배치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를 점검함으로써 미비한 후보자, 투표소 등에 대한 법적 불이익 등이 주어져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별도 투표율 집계되지 않음. 전체 국민 2022년 투표에 참여했다 응답한 비율은 86.9%임.</li> <li>장애인고용패널조사 지난 1년간 문화·사회활동 경험 비율상 장애인 투표참여 추정수는 2022년 기준 1,543,464명(80.3%)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li> <li>전체 국민의 투표 참여율(2022년 대통령 선거 기준) 77.1%이고, 장애인의 투표 참여율(사회통합실태조사) 86.9%이므로 <math>(86.9/77.1) * 100 = 112.7\%</math>로 기초선 조사 결과값을 제시할 수 있음</li> </ul> <p>→ 기초선 조사 결과, 전체 국민 투표율 대비 장애인의 투표율은 112.7%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의 투표 참여율을 전체 투표율 조사에서 별도로 조사가 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하지 않은 투표율임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통계 자료 구축 방안이 마련될 필요</li> </ul>
62	62-1. 어문출판물 발행 대비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 데이지도서	· 어문출판물 중 점자, 녹음, 데이지도서로 제작되는 출판물의 비율을 통해 마라케시조약의 이행을 위한	※ 다음 측정 산식 활용 · (텍스트데이타자료, 전자점자도서, 전자책 제작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자료(추가조사)					<p>→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 ∵ 어문출판물 발행 대비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 데이지도서 제작 비율 관련 통계 자료 부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장자료 현황(대체자료제작현황)에 따르면 2022년 전자점자도서는 215책, 디지털음성도서(DAISY)는 4,644책 제작되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도 기준 마련 필요, 어문출판물에 대한 정의 필요</li> <li>출판물 관련 통계 발행 기준에 관련 통계 산출 근거 마련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0대 대통령 선거(2022) 전체 국민의 투표 참여율은 77.2%이며 장애인의 투표 참여율은 82.1%로 전체 국민의 투표율 대비 장애인의 투표율은 106%로 추정됨.</li> <li>다만, 자폐성 장애(53.7%), 지적장애(55.1%), 정신장애(62.1%) 등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투표율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환산할 경우 각각 69.6%, 71.4%, 80.4%로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투표율은 73.8%로 추정됨.</li> </ul> <p>→ 전체 국민 투표율 대비 장애인의 투표율은 106%로 추정(20대 대통령 선거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국 규모의 선거 투표율 분석을 수행할 때 장애인의 투표 참여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계지표 개선 필요</li> <li>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 보장 방안을 수립하며 중장기적으로 정치·공적 생활에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 제도 마련, 모니터링 필요</li> </ul>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 이행	미 이행	기타		
	제작 비율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수 ÷ 어문출판물 발행수) × 100							▽	→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 ∴ 어문출판물 발행 대비 접자도서 및 녹음도서, 테이지도서 제작 비율 관련 통계 자료 부재 ○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장자료 현황(대체자료제작현황)에 따르면 2023년 전자접자도서는 243책(2022년 215개), 디지털음성도서(DAISY)는 4,475책(2022년 4,644책)이 제작되었음. 2022년에 비하여 전자접자도서는 제작수가 증가하였으나 디지털음성도서(DAISY)는 오히려 제작수는 감소하였음 ○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장자료 현황(대체자료제작현황)으로 어느 정도 파악은 가능하나, 제작 자료가 해당연도에 발행된 어문출판물인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지표 산출이 어려움 ○ 관련 통계 자료가 부족하여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이행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움	○ 관련 통계 필요	
	62-2. 장애인의 문화생활 프로그램 이용률	· 장애인의 문화생활 향유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실제 이용률을 통해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지표	※ 다음 측정 산식 활용 · (문화생활 참여 장애인 수 ÷ 전체 등록장애인 수) × 100 * 문화생활 범주 개발 필요	결과지표	B(양적/주관적평가)	문화체육관광부	· 장애인실태조사 자료 활용			▽	→ 기초선 조사 결과,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비율 6.1%(서울시 거주 장애인 기준, 2022년 현재)임  → 자료 측정 불가 ○ 관련 통계 자료가 부족하여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이행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움	○ 문화예술 향유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관련 통계 필요	
64	64-a. 기존 장애 관련 통계 내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인종, 민족, 소득, 이주 지위, 교육 수준, 고용 상황	· 장애 관련 통계 내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민족, 소득, 이주 지위, 교육 수준, 고용 상황 및 거주지 분리 등 분리 통계 수집 여부를 확인하기 위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과정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통계청	· 보건복지부, 통계청 자료 등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3~2027)		▽	▽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상(120면)에도 “(장애분리통계) 장애인 정책 수립 및 효과 검증 강화를 위해 장애분리통계 구축을 위한 통계청 협의 및 관련 법안 개정 추진”이라는 언급만 되어있으며, 현재 위 지표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규정한 법령 또는 정책은 마련되지 않음  → 개선 사항이 없음 ○ 2023년 장애통계연보에서는 연령, 성별, 소득(또는 수급자격), 교육수준, 고용 상황 및 거주지역 분리	○ 장애분리통계 구축을 위한 근거 법률과 정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  ○ 성적지향, 성정체성, 인종, 민족, 이주 지위 등 한국 사회에서 교차적 차별이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 이행	미 이행	기타		
	고용 상황 및 거주지 분리 통계 수집	한 지표										통계만 제공하고 있음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항목들은 여전히 분리 통계에서 누락되어있음을 확인
	64b. 중앙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중 장애인 권리 증진 관련 연구 예산 비율	· 중앙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중 장애인 권리 증진 관련 연구 예산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 산식 활용 · (중앙정부 각 부처의 장애인 권리 증진 관련 예산 합계 ÷ 중앙정부 각 부처의 연구개발 예산 합계) × 100 * 연구 개발 예산 범주 개발 필요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관련 자료(추가조사)				▽	○ 연구개발비 예산 개요 - [2023년 대한민국 정부 연구개발 총예산] = 31조 778억원 - [2023년 각 부처 장애인 권리 증진 관련 예산 합계] = 1. 산업통상자원부 (1) 사회적약자자립지원로봇기술개발 = 20억 2. 보건복지부 (1) 노인장애인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 = 109억 (2)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서비스 실증연구개발사업 = 44억 3. 국토교통부 (1) 자동차전용도로주행이가능한상좌석버스표준모델개발 = 40억 ∴ 1+2+3 = 213억 → 기초선 조사 결과, 중앙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중 장애인 권리 증진 관련 연구 예산 비율은 0.0685%임 [각 부처 장애인 권리 증진 관련 예산 합계(=213억)/2023년 대한민국 정부 연구개발(R&D) 총예산(=31조 778억원) × 100 = 0.0685%	○ 연구 개발 예산 범주 개발 필요
										▽	→ 2024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자료 미계재로 측정 불가	○ 연구 개발 예산 범주 개발 필요 ○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연구 개발 예산 확대 필요	
66	66-1. ODA 총 예산 중 장애 관련 분야 예산 비율	· KOICA에서 집행하는 ODA 총 예산 중 장애특정, 포괄 프로그램 예산 비율 확대 정도	※ 다음 측정 산식 활용 전년도 · (장애 관련 분야 예산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외교부	· 제52회 RI Korea 재할대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	→ 기초선 조사 결과, 2022년도 기준 ODA 총 예산 중 장애 관련 분야 예산 비율은 0.705%임 - 2022년(0.705%) 전체 ODA 총액 3,627,164백만원. 장애인권리 목적 사업비 총액 25,574백만원 → 2023년도 기준 ODA 총 예산 중 장애 관련 분야	○ 장애포괄적 국제협력 예산 확대 방안 마련 ○ 실제 장애인 수혜 비율 확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 이행	미 이행	기타		
		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합계 ÷ ODA 총 예산) × 100				권을 논하다] 자료집. [국제개발특별위원회] KOICA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현황과 방향					<p><b>예산 비율은 2.462%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DA 사업 부수적 목적인 경우까지 포함</li> <li>○ 2022년 (0.7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ODA 총액 3,627,164백만원</li> <li>- 장애인리 목적 사업비 총액 25,574백만원</li> </ul> </li> <li>○ 2023년 (2.4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ODA 총액 4,089,259백만원</li> <li>- 장애인리 목적 사업비 총액 100,706백만원</li> </ul> </li> </ul>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에는 장애인리 1차적 목적인 사업비 0원</li> </ul>
	<b>66-2. KOICA와 장애인단체 간 협력 프로그램 수</b>	· KOICA의 지원 프로그램 중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 프로그램의 개수를 통해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지원 프로그램 중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하는 프로그램 수의 합계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외교부	· 제52회 RI Korea 재향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논하다] [국제개발특별위원회]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의 현황과 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ODA), 베트남 광찌성 장애인종합재활센터 설립사업, 프로젝트, 총 135.6억, 2023년 12.5억, 사업기간 2022-2026. (서울장애인복지관, 메디피스)</li> <li>○ 글로벌연수(ODA), 방글라데시 신경발달장애아 진단 및 치료역량 강화, 연수사업 총 4.07억, 2023년 1.6억, 사업기간 2021-2023. (인제대학교)</li> <li>○ 글로벌연수(ODA), 볼리비아 장애여성 성 및 재생산권리 보장프로그램, 연수사업, 총4.72억, 2023년 1.96억, 사업기간 2022-2024. (국제여성가족교육재단)</li> <li>○ 글로벌연수(ODA), 베트남 장애인 고용정책 역량 강화, 연수사업, 총 2.4억, 2023년 1.6억, 사업기간 2022-2023. (한국장애인고용공단)</li> <li>○ 아프리카사업, 가나 장애아동 재활치료역량강화 사업, 프로젝트, 총 55억, 2023년 11억, 신규, 사업기간 2023-202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li> <li>○ 서울시, 개발도상국 국제장애인자립지원 공모사업, 민관협력, 2억, 사업기간 2023.</li> </ul> <p>→ 기초선 조사 결과, KOICA와 장애인단체 간 협력 프로그램 수는 6건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에 기반한 프로그램 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li> </ul>	
	<b>66-3. 장애포괄적</b>	· KOICA에서 장애인이 참여하는 장	· 민관협의체의 회의 개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외교부	· KOICA 개발협력연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단체'의 정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 제7호의 기준을 따름</li> </ul> <p>→ 2022년도에 이어 2023년도에도 KOICA 사업 파트너 중 장애인을 '위한' 단체는 있으나 '장애인 단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단체 일일이 모니터링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KOICA 연도별 사업 통계에 분류 추가 필요</li> </ul>	
	<b>66-3. 장애포괄적</b>	· KOICA에서 장애인이 참여하는 장	· 민관협의체의 회의 개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외교부	· KOICA 개발협력연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협력연대 분과 DiDAK은 운영되지 않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협의체 회의 정례화 및 제</li> </ul>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 이행	미 이행	기타		
	국제개발협력 협의체 운영 횟수	에포괄적 국제개발협력력을 위해 운영하는 민관협의체의 회의 개최 횟수를 통해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최 횟수 합계		)		(DAK) 웹사이트 분과 위원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관련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li> <li>○ KOICA 개발협력연대 운영위원회에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참여 중_2023년 운영위원회의 2회 개최 → 기초선 조사 결과,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협의체 운영 횟수는 2회임</li> <li>○ 개발협력연대 분과 DiDAK은 운영되지 않고 있음. 분과(SDG 3, 4, 5, 13, 16) 중 장애인단체 참여 없음 → KOICA 개발협력연대 운영위원회에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참여 중. 2024년 운영위원회의 1회 개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 대상 민관협의체 특정 필요 및 해당 민관협의체의 실시 횟수 확인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li> <li>○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협의체 회의 정례화 및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li> </ul>
68	68.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연도별 개최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연도별 개최 횟수를 비교하기 위한 지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도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개최 횟수 집계</li> </ul>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 관련 자료 (기존 자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 8. 2. 1회 개최 (제23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li> <li>○ 2022. 미개최</li> <li>○ 2023. 3. 9. 1회 개최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기초선 조사 결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연도별 개최 횟수는 1회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과위원회 횟수 확대가 권고 사항인데, 22년도 0회에서 23년도 1회 개최하여 횟수는 확대되었으나 의미 있다</li> <li>○ 횟수 확대와 함께 장애인정책 조정이 효과적으로 되는지 확인하는 지표 추가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 3. 28. 1회 개최 (제25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권고: 분과위원회 횟수 확대. 그러나 23년도 1회에서 24년에도 1회 개최함으로써 정체되어 있음.</li> </ul>	
69	69. 장애여성 및 탈시설 관련 최종견해에 따른 1년 이내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여성 및 탈시설 관련 최종견해에 따른 1년 이내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li> </ul>	과정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 관련 자료 (추가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사항을 반영한 현재 계류 중인 법안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통과 및 개정) 제·개정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에 장애여성 및 탈시설 관련 '긴급한' 사항(예: 긴급 탈시설)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li> <li>→ 최근 1년간 개정,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 정책 등에 장애여성 및 탈시설에 관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li> <li>○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서는 '탈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정책 등에 장애여성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류화 정책 마련 필요</li> <li>○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기 위</li> </ul>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설' 용어를 의도적으로 삭제함	한 법률 개정 필요
70	70. 장애 관련 분야 공직자 등의 CRPD 최종견해 인지를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국회 구성원, 관련 부처 공무원, 지방정부 그리고 교육자, 의료 종사자, 법조인, 언론인 등에게 관련 직군 각 구성원에게 정부의 최종견해 전달 및 이에 대한 조치 마련 요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li> </ul>	결과지표	B(양적/주관적평가)	보건복지부	· 별도 조사 실시			√		<p>→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 및 정책에 관련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p> <p>→ 관련 법령 및 정책 등이 개선되지 않았으나, 관련 논의는 진행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과정에서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동 상황이 다른 지방의회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는 등 내용의 성명서 발표(6.21.)</li> <li>복지부는 7월 25일, 17개 시·도를 모여 유엔장애인 권리위원회의 장애인 자립지원 관련 성명서 공유 및 논의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와 국회 구성원, 관련 부처 공무원, 지방정부 그리고 교육자, 의료 종사자, 사법관, 언론인 등 관련 직군의 그룹 구성원에게 본 최종견해를 전달하는 내용의 관련 정책 및 법령 개정 추진 필요</li> <li>해당 간담회는 법률이나 정책, 계획에 따라 정례화된 행사가 아니라 국정감사 과정에서 의원 지적 사항(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7.16.)에 따른 간담회였으므로, 지자체 및 공직자에 대한 최종견해 인지를 위한 노력을 정례화할 필요 있음</li> </ul>
71	71. 정부 보고서 작성 시 장애인단체를 포함하여 협의하는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장애인단체 포함 협의체 운영에 관한 법령 등 규정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li> </ul>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관련 자료 (추가 조사)			√		<p>→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 및 정책에 관련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p> <p>→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 및 정책에 관련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기초선 조사 이후 연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기보고서 준비에 시민사회단체 특히 장애인단체를 참여시키도록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li> <li>정기보고서 준비에 시민사회단체 특히 장애인단체를 참여시키도록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li> </ul>
72	72.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된 최종견해 관련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종견해를 다양하고 접근가능한 형식으로 제작 및 배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행한 최종견해 관련 콘텐츠 수 합계</li> </ul>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관련 자료 (추가 조사)			√		<p>→ 최종견해 발표 이후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된 최종견해 관련 콘텐츠를 발행하지 않았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정부 차원에서 읽기 쉬운 자료, 수어, 큰 글자, 점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된 최종견해 관련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li> </ul>

UN CRPD 이행지표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구분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지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 이행	미 이행	기타		
	발행 중수										→ 최종견해 발표 이후 중앙정부(보건복지부)에서는 최종견해 번역본은 배포하였으나, 이를 접근가능하고 알기 쉽게 홍보하는 콘텐츠는 전무하였음	○ 중앙정부 차원에서 읽기 쉬운 자료, 수어, 큰 글자, 점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된 최종견해 관련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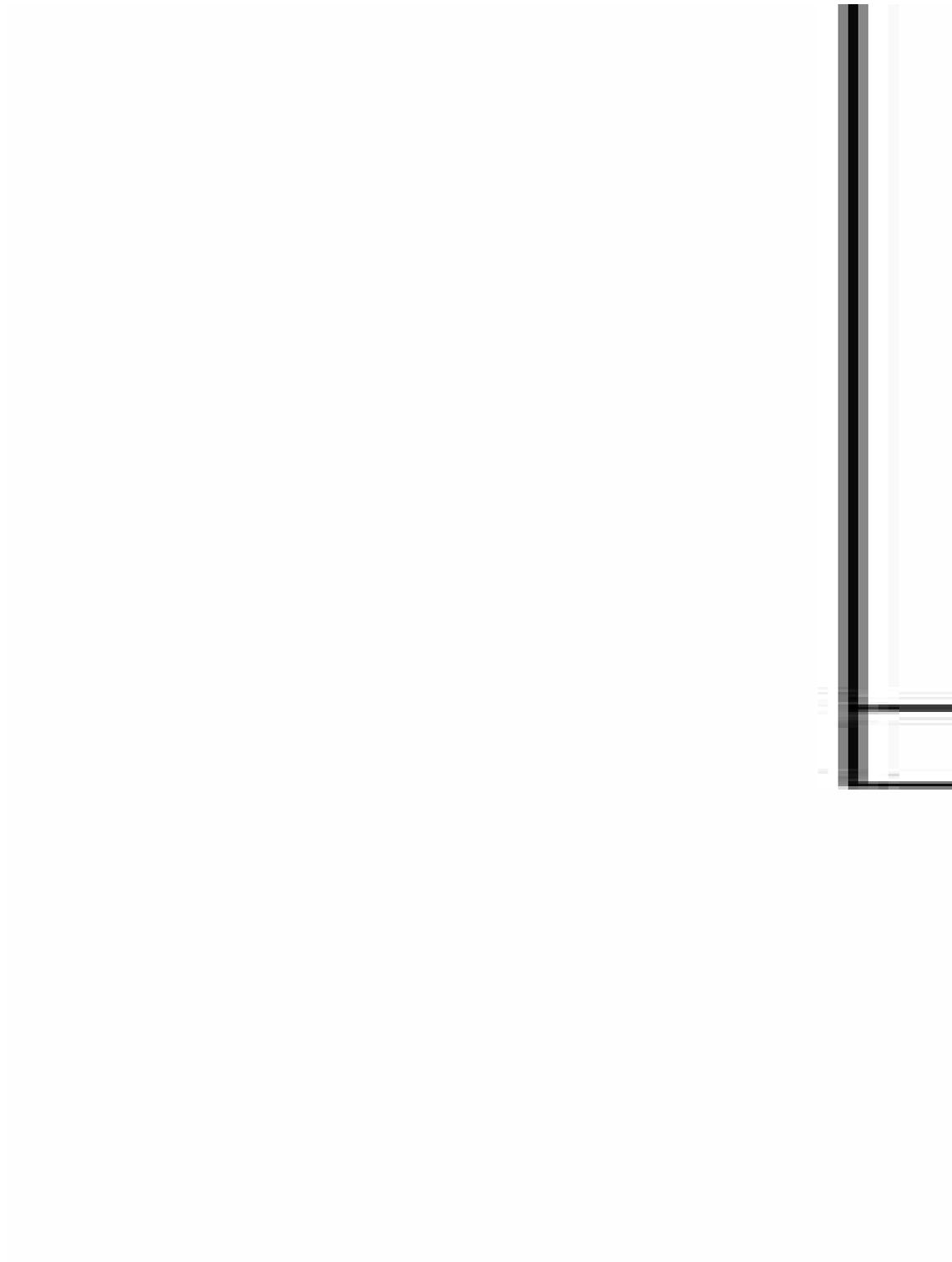


## 2차년도 모니터링 세부 결과 및 중, 단기 목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행지표개발연대

총칙 / 사회권 / 자유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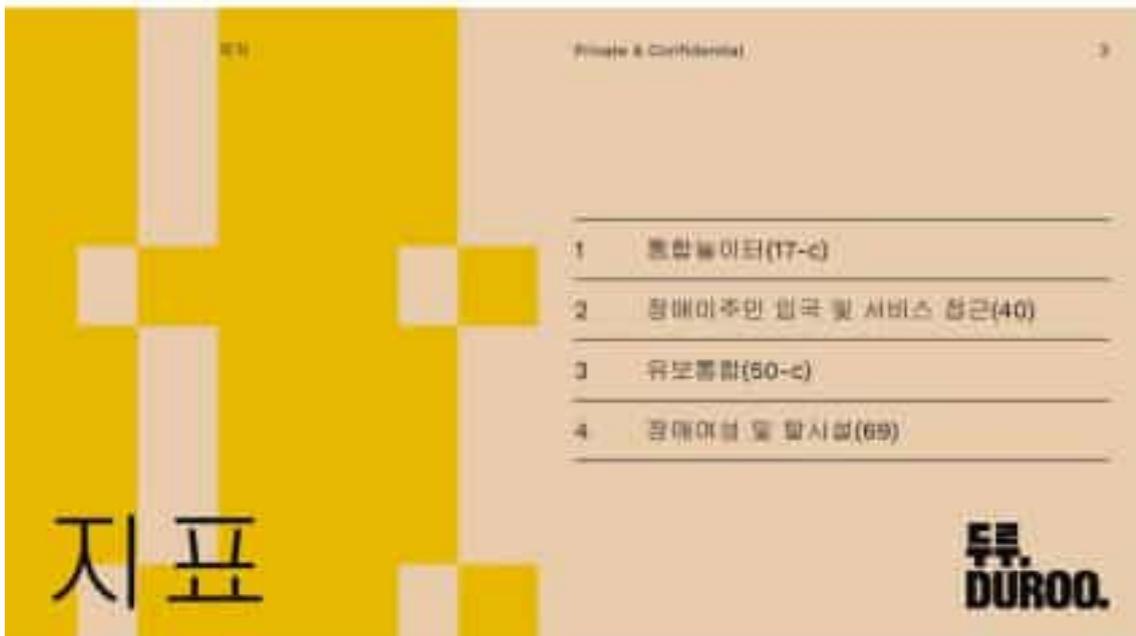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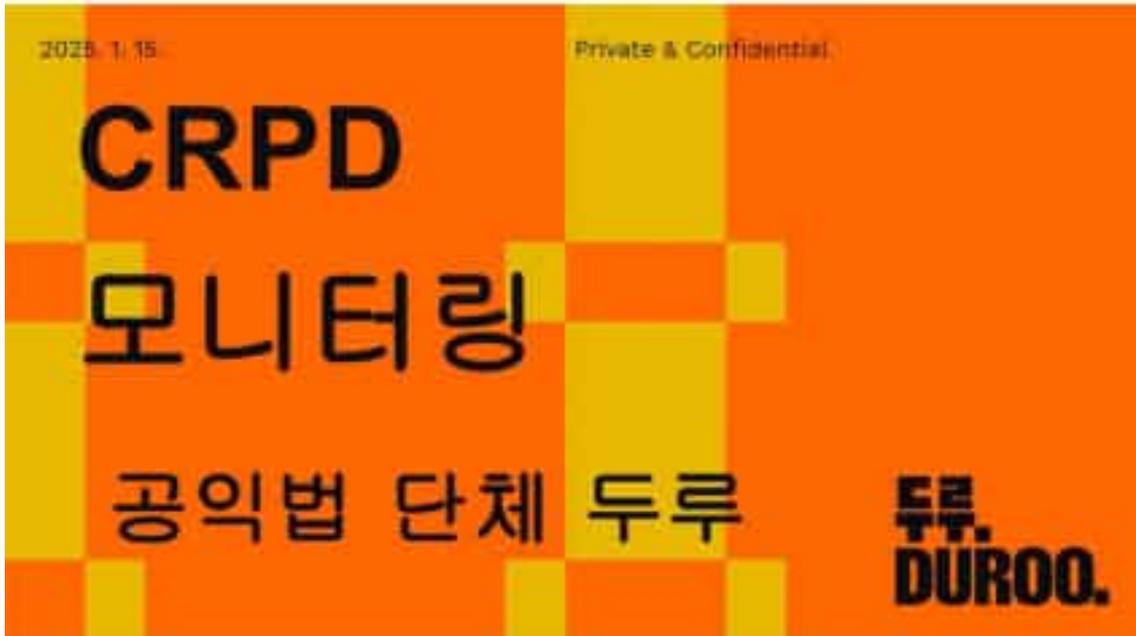














Private & Confidential 4

17. 장애아동	48. 장애아동의 인권 및 서비스 접근	30-c 유보통합	49. 장애인권 및 당사성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개편 (23. 10. 31.)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편 (24. 1.5.)	관련 법령 개정 없음	특수교사자격, 앞선체계 개편단 (23. 11. 16.) 유보통합실행계획안 (24.6.) 중부조직법 개정 (24. 6. 27.)	개선사항 없음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에서 달성률 용어 누락, 서둘러 달성률 지원조례 폐지
부분이행 장애인편의법에 어린이놀이시설 포함 검토 필요	미이행 법률 개정 필요	부분이행 수립된 계획과 개정 법령에 따른 유보통합 시행 및	미이행 관련 법령 개정 필요
	개정안 발의 (24.12.5.) 문영으로 보조가 필요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장애인성 주류화 및 달성률 관리 법제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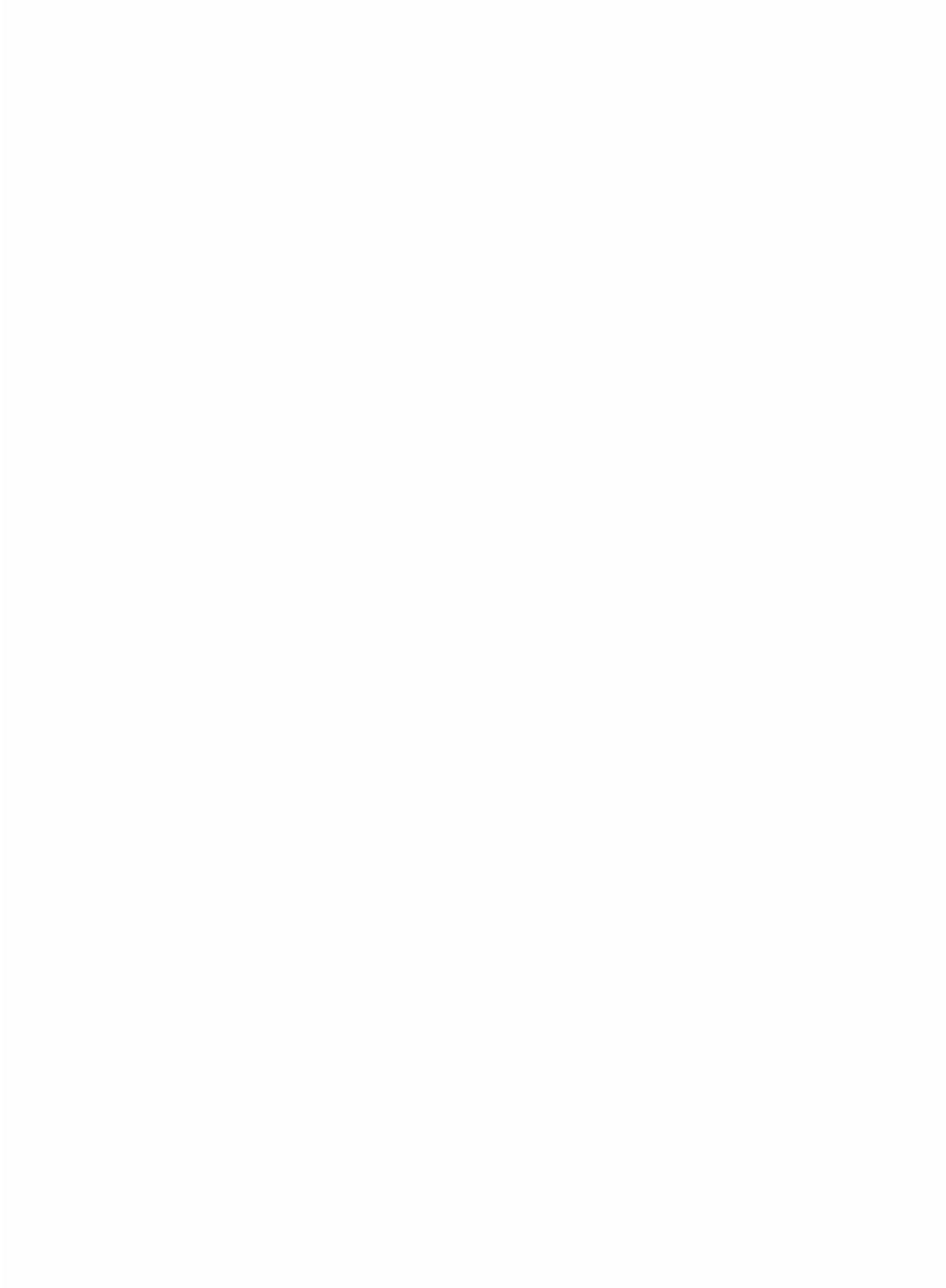
















































# UN CRPD 모니터링 및 이행 촉구 협력 계획

김진 |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조은영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조사관

[MEMO]

## UN CRPD 최종견해 권고 이행 계획

이춘희 | 보건복지부 권익지원과 과장  
안유진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사무관  
진창원 | 교육부 특수정책과 과장

[MEMO]